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토론회

부제 :

장애관련 언론보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쟁점 분석 및 제언

목 차

I 인사말	7
II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활동보고	11
1. 개요	
2. 모니터링 활동	
3. 대응활동	
4. 기사자료	
5. 교육/토론	
6. 활동소감	
III 발제	211
언론보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쟁점 분석 및 제언	
1. 기사흐름을 통해 본 한국사회	
2. 모니터링을 통한 쟁점 분석	
1) 언론보도	
2) 일상생활	
3. 결론 및 제언	

IV 토론

토론1. 상업화된 언론의 구조적 문제 분석 및 비판	251
토론2. 인권옹호를 지향하는 시민감시활동의 의미	258
토론3. 젠더관점으로 미디어 비평하기	264

V 도움 자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는 보도지침	26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결정 <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 에 대한 의견표명 >	269
장애표현 분석	285

VI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 소개	291
----------------------	-----

I 인사말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들어가며,

오늘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각 종 이슈들에 대한 수백 수천의 기사가 넘쳐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 곳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 기사도 하나의 상품이 되어 소비자(독자)의 클릭 수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고 이를 통해 생존할 수 있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업화된 기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변질되기 쉽고 그러한 기사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일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기사들에서 성폭력은 ‘폭력이 아닌 성의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피해자의 특수함이나 취약함을 강조하거나 가해자 개인의 일탈 또는 변태적인 성욕이 성폭력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 태도는 비단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년),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빈민 등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권력이 적고 그로 인해 낮은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통념,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확대 재생산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그해 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장애와 반성폭력에 대한 주제로 언론모니터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사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지 부터 고민하고 토론하며 함께 기사들을 분석하였고 그 해 가을엔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문제의식을 대중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시민감시단의 이름을 「새로고침」으로 정하고 언론모니터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장애인 성폭력 뿐 만아니라 장애인 관련 학대사건, 장애인을 앞세운 소위 미담 기사까지 모니터링의 범위를 확장하여 꾸준히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시민감시단원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광고, 각종 포스터, 유아 교재까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장애와 관련된 잘못된 표현들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도록 하는 대응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매달 ‘이달의 블랙리스트’를 선정하여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항의 및 정정 요청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주요 언론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를 이용한 인식개선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토론회>는 부제에서도 밝혔듯이 지난 3년간의 시민감시단 활동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장애관련 언론보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활동을 근거로 발견된 문제점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상업화된 언론의 구조적 문제와 우리의 일상에 너무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미디어를 젠더적 관점으로 다시 보면서 성차별적인 문화가 양산되고 강화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권옹호자로서 시민감시활동이 이러한 구조의 변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으신 나무님, 바쁜 일정에도 장애여성공감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의 정슬아님, 그리고 언론인으로 쉽지 않은 걸음을 해주신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배우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정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해오고 계신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의 단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과 지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엑기스(?)만 모았는데도 엄청난 분량의 자료집을 부족한 시간에 편집하시느라고 생해주신 지니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온 상담소 활동가들을 포함 장애여성공감의 활동가 모두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우리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있는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인식하고 각성한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보다 평등한 세상을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걸음은 비록 느릴지라도 인권의 이름으로 연대하고 각자의 속도가 존중받을 수 있는, 누구도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II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활동보고

발표 : 조세은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1. 개 요

1) 시민감시단 소개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2016년 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이하 시민감시단)> 활동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시민감시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언론, 재판 모니터링과 문제 사례 대응회의를 통해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점검, 토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 유발론과 같은 왜곡된 통념,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하에 작성되는 선정적 기사 내용, 장애에 대한 비하 표현 등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권보도준칙(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발표, 2011), 성폭력사건보도수첩(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폭력중앙지원단, 2014) 등 보도관련 가이드라인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시민감시단은 장애인권과 젠더적 감수성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문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시정과 변화를 요구하는 대응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은 장애/여성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올바른 인식 확산 및 대안적 사회문화 형성, 성평등적인 인권사회로의 진보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지치지 않는 분노와 연대감으로 사회 주요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며 법, 제도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혹은 실현되기 어려운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환류 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2) 시민감시단 참여자

- | 2016 : 김연아, 김예원, 김희정, 이도희, 이유정, 이주영, 조세은, 진성선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민들레, 나무
- | 2017 : 김다정, 김연아, 김예원, 박현정, 이연수, 이주영, 조세은, 하지현 /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나무
- | 2018 : 김소희, 심현지, 박세원, 박현정, 예은화, 이연수, 이주영, 조세은 /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나무, 김다정

3) 모니터링 분야

- 언론보도 모니터링 : 장애인 관련(성폭력/학대/미담/기타) 기사
- 재판 모니터링 : 성폭력 사건
- 일상생활 모니터링 : 광고, 출판물, 전단지 등 일상생활 전반

4) 모니터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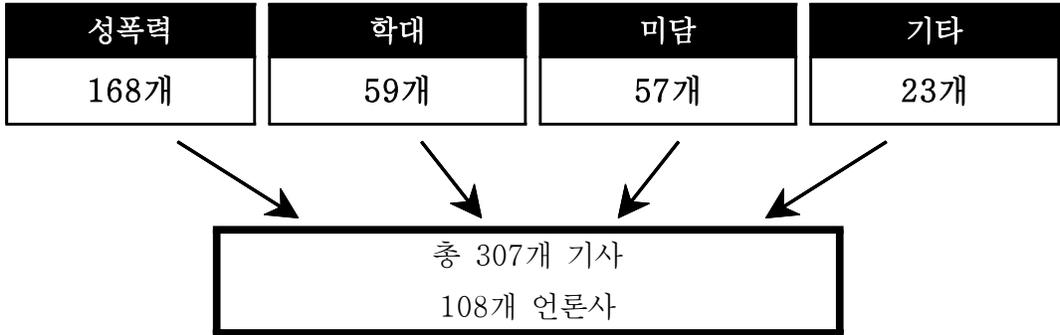
출처 |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2014)_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인권보도준칙(2011)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p>1.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 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일부 개인의 정신적 병리형상이나 절제 할 수 없는 성 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 인식과 양성불평등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낮은 사람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아는 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이 여성의 순결을 훼손한 일, 치유되거나 극복될 수 없는 피해라는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p>2. 장애인 인격권 존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장애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보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p>3. 피해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

<p>우선하기</p>	<p>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지역 등 주변정보들의 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 언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p>4. 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인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언론은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p>5. 신중하게 보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언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p>6. 장애에 대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

<p style="text-align: center;">편견 지양하기</p>	<p>을 사용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 등을 지양하여야 한다. ▪ 발달/정신장애 등 가해자의 장애를 사건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분석하지 않아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7.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가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피해자 보호제도나 관련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소개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나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폭력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p>언론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초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 제도의 개성 노력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p>

5) 모니터링 기사 목록



성 폭 력			
연도	번호	언론사	기사제목
2016	1	머니투데이	인화학교 사건 충격 진상, '성추행 교사는 선배'
	2	KBS	손발 묶고 성폭행...'도가니' 실제 인물 구속
	3	연합뉴스	도가니'황동혁"수위조절이가장어려웠죠"
	4	연합뉴스	李대통령" `도가니'재발방지위해의식개혁절실"
	5	연합뉴스	조현오 '도가니' 관람 ..."충격...철저 규명해야"
	6	연합뉴스	행안위, 장애인 성폭력 `도가니' 대책 추궁
	7	조선일보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잠적, 경찰 출국금지 요청
	8	세계일보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죽인 처제, 국민참여 아닌 '일반재판'으로
	9	KBS	20대 처제 성폭행한 50대 형부 구속..."조카가 아니라 아들"
	10	SBS	3살 아들 살해한 처제..."형부 성폭행 더 있었다"
	11	동아일보	지적장애인이성관계거부안했어도항거불능상태"인정
	12	에이블뉴스	지적장애 부부 농락에 딸까지 유린 '분노'
	13	헤럴드경제	정신지체 딸 성폭행하고 교도소 다녀온 뒤 8년만에 또 성폭행한 짐승같은 친아버지 구속
	14	연합뉴스	성폭력범 94%가 정신질환...30%는 '사이코패스'
	15	뉴스1	장애녀들 성노리개 삼은 '몹쓸 이웃들'
	16	아시아 경제	에이즈 감염 20대, 초등생 이어 지적장애인 성폭행 '임신까지'
	17	테일리안뉴스	성폭력이 장난? 청소년 30% 성폭력 경험하고도...
	18	노컷뉴스	'조카가 보는데...' 지적장애 제수 성폭행한 70대
	19	코메디닷컴	지능장애 아동, 성폭력 주변에 알리지 않아
	20	뉴스인	성범죄 40%는 음주상태...알코올이 '충동조절장애' 유발
	21	동아일보	인화학교'세탁기사건'교사들가담정황

22	일요신문	여전히 신음 중인 학교 내 성추행...'도가니' 실효정지 패소 울분
23	조선일보	장애아 성폭행한 교사들... 실화 영화에 전국 '분노의 도가니'
24	조선일보	영화 '도가니' 본 여론 들끓어...그날 무슨 일이?
25	중앙일보	'지적 장애여성의 관점에서 수사하라!'
26	중앙일보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수사 및 검사면담 요청 기자회견
27	중앙일보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수사 요청한다'
28	중앙일보	'우리딸이 괴로워하고있다'
29	중앙일보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수사 하라!'
30	중앙일보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재수사 촉구한다'
31	중앙일보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수사 촉구한다'
32	중앙일보	7세 아동 성추행한 70대 바둑교사 실형
33	중앙일보	광주해바라기센터개소10년...1만명피해상당6만건지원
34	중앙일보	엄태웅성스캔들...다른각도로접근해야하는이유
35	중앙일보	80대성폭행하려다살해한20대징역25년
36	중앙일보	'강제추행혐의'이경실 남편, 징역 10개월 확정...항소심기각
37	중앙일보	'지인 아내 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2심에서도 실형
38	중앙일보	'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항소심도 유죄.."죄질 안좋아"
39	중앙일보	'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항소기각...法 "죄질 안좋아"
40	중앙일보	광주전남언론학회청각장애우운영가폐후원
41	중앙일보	60대 지적장애 노인 추행..요양시설 원장 남편 입건
42	중앙일보	전북 NGO "성추행 사건 발생한 장애인협회 폐쇄하라"
43	중앙일보	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父 구속
44	중앙일보	경기도내 도가니법 위반 장애인시설 4곳 적발
45	중앙일보	'인면수심 아버지'...지적장애 앓는 딸 성폭행
46	중앙일보	지적장애 여학생들 강제추행 종교인 구속기소
47	중앙일보	前 남친 3년 넘게 쫓고 성추행도 한 50대 女 '집유'
48	JTBC	성매수로 전환된 성폭행...사회 변화 못 따라가는 '법'
49	여성신문	성매매는 성 착취로 유흥接客원은 폐지해야
50	인사이트	그알 13살 여중생 성폭행가해자들 "개가 꼬셨다" 주장
5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하은이 사건 "남성들의 성매수" VS "성폭행"
52	CBS노컷뉴스	지적장애 13세, 또 '성매매' 둔갑 판결.. 불통 법원 -정치권과시민사회성토쏟아져도결국엔안하무인
53	CBS노컷뉴스	13세 발달장애소녀 가출 성매수남 10여명 "돈을 주고 성을 사면 남자는 무죄인가"
54	EBS	떡볶이 먹어서 성매매? 청소년 보호법 사각지대

55	일요뉴스	"합의했어도성학대"vs"장애있어도성매매"만13세이상'성적자기결정권'제각각해석...성범죄피해청소년판결'그때그때달라요'	
56	인사이트	그알 13세 여중생 성폭행가해자들 “개가 꼬셨다”	
57	일요신문	“합의했어도 성학대” VS “장애 있어도 성매매”	
58	티브이데일리	'그것이알고싶다' 13세女, 성폭행 후유증 정신병원서 또 당해 '분노'	
59	경향신문	지적장애 4자매 상습 성추행... 섬마을 이웃 '나쁜 아저씨'	
60	한겨레	친구 할아버지까지...마을 어른들이 지적장애아 성폭행	
61	경향신문	장애여성 성추행한 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실형	
62	경향신문	지적장애 여성 7명을 3년 성폭행한 이웃들	
63	sbs	3살 아들 살해한 처제..."형부 성폭행 더 있었다"	
64	경향신문	처제 3차례 성폭행·3명 자녀 출산...'짐승같은 형부'	
65	매일경제 mk	검찰 “혐의 인정돼 구속영장 청구”...법원, 6일 오전 영장심사	
66	연합뉴스	20대 처제 성폭행한 50대 형부 구속...아이는 학대 사망	
67	연합뉴스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20대女 구속 기소(종합)	
68	연합뉴스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징역 4년 '선처'(종합)	
2017	1	세계일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늘어도 기소율은 줄어 '도가니법' 무색
	2	인천일보	지적장애 직장女 상습 성추행 40대 징역형
	3	새전북뉴스	동료 장애인 성폭행한 커피숍 매니저 입건
	4	TV 조선	개명에 불임수술까지...지적장애 여성 감금·성매매
	5	연합뉴스	지적장애 여성 때리고 착취한 유흥업소 업주 등 2명 구속
	6	문화일보	재가 지적장애여성 5717명 성범죄 노출
	7	세계일보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한 '나쁜 아버지', 징역 9년
	8	중앙일보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70대 노인...법원, 징역 4년 선고
	9	뉴시스	지적장애 아들 상습 성폭행한 친부 '징역 8년'
	10	SBS	장애인 직장동료 성추행 40대 장애인 집행유예 3년
	11	매일경제	`서울관 도가니' 장애인 폭행·성추행한 사회복지사 풀려났다
	12	노컷뉴스	[단독] 몸 못 가누는 장애인 5차례 성폭행...'인면수심' 남성
	13	뉴시스	장애인 부부 집에 놀러가 남편 폭행하고 아내 추행한 50대 '실형'
	14	국민일보	10대 딸 친구 성폭행,추행하고 친딸 상습 성추행,폭행산 50대 중형
	15	동아닷컴	영화인들 분노의 성명서 “A씨가 무죄라니... 연기 아닌 성폭력” [전문 포함]
	16	매일신문	지적장애 여성 2년간 성폭행..."죄질 나쁘다" 60대 5명 실형
	17	뉴스1	"발기 불능"...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오리발
	18	인사이트	3살에 보육원 보낸 '15살' 딸 데려와 수차례 '성폭행'한 아빠
	19	MBN	지적장애 앓는 10대 의붓딸 성폭행 '징역 7년'

20	신문고뉴스	“누가 떡을 잘 치냐”, “부부니까 떡쳐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면죄부 기관인가?
21	세계일보	지적장애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못된 계부, 징역 7년
22	투데이신문	지적장애 10대 여아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5년’...“먼저 유혹했다”
23	중앙일보	'말 잘 듣자 못된 마음을...' 10대 의붓딸에게 수차례 몹쓸 짓한 40대 계부 '징역 7년'
24	아주경제	'10년 이웃' 지체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중형
25	연합뉴스	지적장애 11살女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15년
26	중앙일보	노래방서 지인 잠든 사이 지적장애 10대 딸 성추행한 30대
27	뉴스1	16년 동안 딸 성추행한 의붓아버지 1심서 징역 3년
28	경북뉴스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 협약식 개최
29	파이낸셜뉴스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아픔을 덜 느끼진 않습니다.
30	에이블뉴스	지적장애아 성매매녀 오명, 오락가락 감금죄
31	뉴시스	경찰, 장애인 성폭력·인권침해 단속강화...종합치안대책
32	노컷뉴스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도가니 피해자의 눈물'
33	국민일보	이사간 집까지 찾아갔다...이웃집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한 50대 중형
34	NPS통신	진도경찰서, 고위험군 가정방문 점검
35	노컷뉴스	제주지법, 이웃집 장애 여성 강제추행 60대 징역형
36	경향신문	이런 남자가 친오빠라니...청각장애인 여동생 위치추적에 성관계까지
37	이투데이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여성 '징역 4년'...'집승 형부' 8년 6개월
38	그린포스트 코리아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 19세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
39	금강일보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징역 4년 확정
40	인사이트	지적장애 14살 제자 꼬서 수십 차례 간음한 태권도장 사범
41	노컷뉴스	장애 여중생 성매매시킨 10대들에 집행유예?...구속해야"
42	SBS뉴스	"장애 여중생 성매매 강요·몹쓸 짓 10대들 집행유예 부당" 탄원
43	중부일보	성폭력에 울고... 갈 곳 없어 또 우는 女 장애인 피해자
44	연합뉴스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지적장애 여성, 19세부터 관계 형부 아이 셋 낳고...
45	동아일보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女' 형부, 징역 8년6개월..누리꾼 "성폭행 범의 낙원"
46	더팩트	여중생 성매매 강요 10대들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논란
47	중도일보	반복되는 버스기사 장애인 성폭행, 잇단 중형
48	한국일보	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 50대 조선족 징역 6년
49	뉴스제주	지체장애 女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4년

	50	세계일보	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한 몃쓸 조선족, 징역 6년..신고를 흥기로 막기까지
	51	뉴스포털1	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조선족, 징역 6년
	52	한강타임즈	20대 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한 조선족 남성 징역 선고
	53	동아일보	"병 나으려면 나랑 자야" 45세 어린 여성 성폭행한 전직 승려
	54	세계일보	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한 몃쓸 조선족, 징역 6년...신고를 흥기로 막기까지
	55	뉴시스	지적장애 의붓딸에 몃쓸 짓한 50대 조선족에 징역 6년
	56	뉴스1	"TV 볼래" 이웃집 11세 여아 성폭행 50대 '징역15년'
	57	조선일보	"같이 자야 병 고쳐진다"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전직 승려 실형
	58	WOW 한국경제TV	이민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3) - 장애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궁금증
	59	전북도민일보	장애인 시설내 범죄 방지해서는 안돼
	60	로이슈	부산지법, 학생과 성관계가진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집유'
	61	쿠키뉴스	그날의 끔찍한 악몽...13년 만의 단죄
	62	인사이트	"TV 같이보자" 이웃집 11살 소녀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남성
	63	뉴시스	지적장애 의붓딸에 몃쓸짓한 50대 조선족에 징역 6년
	64	경향신문	지적장애 10대 상습 성폭행한 50대...항소심서도 징역 15년
2018	1	메트로	지적장애女 20년간 성폭행한 이장, 임금 갈취·흥기 협박까지 '과렴치'
	2	뉴스1	정신장애 의붓딸에 몃쓸짓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3	내일신문	[미투운동계기로성폭력없는사회를③]'미투'도외치지못하는인권약자들'수두룩'
	4	이코노 뉴스	술 마시다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대낮에 얼굴 때리고 짐승 범행’
	5	허프포스트	"10대지적장애인성폭행"피소된27세남성2명들다'무혐의'처리된이유
	6	뉴스1	"신병 치료하려면..." 정신장애인 성폭행한 전직 승려 실형
	7	뉴시스	택시 타면 "성경험 있나?"..."애인하자" 신체접촉도
	8	머니투데이	[친절한판례氏]강제추행저항유무판단에'정신장애'고려해야
	9	헤럴드경제	[장애, 차별없는 세상 中-그들만의 性 ①]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행 빈번 "미투도 못한다"
	10	MBC	여성 장애인활동가 "과거 비장애인 활동가에게 성폭력 당해" 폭로
	11	대전일보	성폭행 파문... 이웃 주민 지적장애인을
	12	기호일보	성폭력 사건 물어 둔 이천 장애인시설
	13	인사이트	미성년자 여동생 성폭행하고 어머니한테 흥기까지 휘두른 남성
	14	헤럴드경제	[뉴스탐색]발달장애인성폭력심각한데...부모가알아서하라는정부
	15	강원도민일보	원주장애여성60%‘성폭력피해경험’
	16	환경일보	학원 여교사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누리꾼들 경악 “정말 끔찍한

		소식”
17	일요신문	‘미투’ 박수현 전 靑 대변인 ‘깜짝’ 복귀... 안희정 전 지사는?
18	굿모닝충청	안희정과 김지은...‘합리적 추론’으로 유추해본 두 사람의 관계
19	KBS	불기소율 40%...인정받기 어려운 ‘장애인 성폭력’
20	한국일보	장애학생 성폭행 혐의 특수학교 교사 검찰 송치,
21	국민일보	장애 학생 성폭행 혐의...강원도 특수학교 교사 구속영장 신청
22	한국일보	장애학생 성폭행 혐의 태백 특수학교 교사 구속영장 신청
23	한국일보	태백 특수학교 성추행 피해 학생 “나도 성폭행 당했다” 진술 바뀌
24	조선일보	강원관 '도가니' 장애 여학생 성폭행한 교사 구속영장 신청
25	MBC	여학생 3명 성폭행 혐의 특수학교 교사 구속
26	서울경제	특수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도 성폭행?...지적장애 여학생 5년의 악몽
27	매일경제	특수학교 교사, 지적장애 여학생 수차례 성폭행
28	세계일보	[길지만 봐야 할 뉴스] "선생님·선배도 못 믿어요" 아이는 매일 '지옥'에 등교한다
29	중앙일보	그 선생이 부르면 괴로웠다...17세 장애소녀 ‘악몽의 5년’
30	아시아경제	[일반]37년간매맞은아내, 남편살인..‘매맞는아내증후군’을아시나요?
31	조선일보	[수사반장]강원관 '도가니' 되나...특수학교 교사, 제자 성폭력 의혹
32	머니투데이	지적장애 10대 조카·처남택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10년 확정
34	한국경제	장애인 며느리 상습 성폭행한 `나쁜 승려`...징역 7년
35	중앙일보	며느리 상습 성폭행한 60대 승려 징역 7년

학 대			
연도	번호	언론사	기사제목
2017	1	YTN	
	2	연합뉴스	'때리고, 머리 자르고, 횡령하고'... 복지시설 대표 영장
	3	웹툰어뉴스	염전 노예 피해자, '농촌일당의 60%만 배상' 판결
	4	서울경제	지적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5	국민일보	일반인보다 덜 떨어진 XX야" 지적장애인 학대 장면 생중계 한 유튜브
	6	경기일보	지적장애 아들 2명 쇠사슬 묶어 감금한 장애인 부모 경찰 입건
	7	비마이너	지적장애인한테 노역시키고 15년간 월 10만 원 줬는데... 법원은 '집행유예'
	8	헤럴드경제	[두번 우는 장애아동] 시설 맡겨진 장애아동들 되레 범죄에 노출
	9	YTN	"묶고 가두고"...잇따르는 장애인 학대 범죄
	10	TV 조선	장애인 노리는 범죄...전담수사관 제도는 '생색내기'
	11	한국일보	의붓딸 밀치고 뇌출혈 방지해 사망케 한 계모 징역 5년
	12	노컷뉴스	'토마토 노예' 50대 마을이장 향소심서 집유로 감형
	13	뉴스1	"군산 장애인 시설 폭행 재발 방지책 조속 마련해야"
	14	조선일보	청각장애인 돈 280억 등쳐먹은 조폭 청각장애인 조직
	15	중앙일보	빛나간 아들 사랑.. 아들 몸에 쇠사슬 채운 부모 입건
	16	사건인	장애인은 불쌍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17	전북일보	군산 복지시설 종사자들, 장애인 폭행·학대
	18	민중의 집	지적장애인 10년간 부려먹은 토마토 농장주 향소심서 감형
	19	전북일보	학대·폭행 파문 군산 장애인시설, '보호자권리 포기각서'도 받았다
	20	전북일보	고문장으로 변해버린 군산의 한 장애인시설
	21	뉴스1	"한달 봉급 8만~20만원 지급" 악덕 농장주 감형
	22	한겨레	지적장애 동창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갈취한 30대 징역6년
	23	에이블뉴스	CCTV, 증인 없는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4	제주도민일보	학대받은 장애아동 "홀대하다니"
	25	중앙일보	장애아동 의자에 묶고 수업한 유치원 '아동학대 논란'
	26	전북일보	군산 복지시설 종사자들, 장애인 폭행·학대
	27	인사이트	지적장애인 부부를 30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까지 한 못된 이웃
	28	서울신문	만취해 14개월 딸 집어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징역 6년
	29	헤럴드경제	지적장애 여성 양육비 빼돌리고 가출케 한 40대男 실형
	30	JTBC	매일 매질에 욕설... 30년 노예살이 한 장애인 부부
	31	중앙일보	12세 소녀와 아동복지교사의 동거 ... 현대판 민며느리 논란
	32	연합뉴스	오줌·토사물 먹이고 벨트 채찍질...보육원생 학대 8명 기소

2018	33	인사이트	우는 두 살배기 딸 벽에 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 아빠
	34	뉴스1	"집중 안한다" 자폐아동 물고문·폭행 前특수교사 징역
	1	뉴스1	25년 전 장애인 비리온상 '해인원' 악몽 다시 살아나
	2	충북인뉴스	"지적장애인 6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 시키고 월급은 절반만: 객실 90개 청소하고 월급은 100여만원... 호텔 측 "장애인이라 그런 처우 한 것 아냐"
	3	함께걸음	장애인 학대한 양평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징역 10개월 선고
	4	카톨릭 뉴스	정신장애인의 '위험성 신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5	중부일보	[장애인 거주시설, 이대로는 안된다] 시설장애인 60% "시설에서 퇴소하고 싶다"
	6	국민일보	장애인시설 떠나는 장애인들..."아침은 시리얼 먹고 싶었어요"
	7	국민일보	학대과문그때뿐...인화학교사태7년, 여전히우는장애인들
	8	국민일보	[현대판노예이대론안된다]장애인추적관리절실...'노예'가해처벌강화해야
	9	경향신문	학대받는 장애아 보호망 없는 국가
	10	연합뉴스	발달장애인대상노동력착취·학대뿌리뽑는다
	11	뉴스1	경기광주장애인재활시설서장애인학대정황포착...경찰수사
	12	SBS	노예노동겨우벗어나도...지적장애인자립'막막'
	13	연합뉴스	자고나면터지는장애인학대...'축사노예'이어'타이어노예'
	14	충청투데이	지적도심서도'현대판노예'근절되지않는이유뭔가
	15	KBS	지적 장애인 사회안전망 '허술'
	16	한국일보	재가장애인은무방비...4명중1명학대경험
	17	대전일보	지적장애인'식당노예'처럼일시킨악덕주인
	18	대전일보	지적장애인 '식당 노예'처럼 일시킨 악덕 주인
	19	중도일보	'일자리 태부족' 대전 장애인 학대.임금 착취 시달려
	20	충청투데이	지적장애인 5년간 학대한 식당업주...임금도 착취
	21	연합뉴스	장애인을전기과리채로충격한사회복지사실형
	22	동양일보	'식당6년임금착취'지적장애종업원소송으로6000만원받아내
	23	경향신문	"저는 조현병환자입니다. 그리고 팬클럽입니다"
24	경향신문	조현병,알지못하니까두렵다	
25	국민일보	"우리는일부부"단속피하러엄전노예와거짓혼인	

미담			
연도	번호	언론사	기사제목
2017	1	국민일보	1급 장애 극복하고 대학 강단에 선 박경순씨
	2	연합뉴스	시각장애 극복하고 '헌법연구관' 임용된 김병욱씨
	3	헤드라인 뉴스	"불굴의 의지 보여준 '올해의 장한장애인' 찾습니다"
	4	동아닷컴	LG, 장애인 구한 해병대원에게 장학금 및 채용기회 제공
	5	부산일보	불난 집 들어가 장애인 구한 '군인 정신'
	6	세계일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지체장에서 분리... 정확한 통계 바탕 지원해야"
	7	경남신문	[장애인의 날 기획] 정신·지적장애 딛고 근로자 삶 개척하는 두 청년
	8	KBS	올해의 장애인... "도전이 희망입니다"
	9	대전투데이	장애를 녹이는 사랑의 손길
	10	서울경제	장애인 딸 밝게 키운 심영자씨, 서울시 '장한 어버이상'
	11	영남일보	지휘자도 울었다...장애를 극복한 '영혼의 소리'
	12	중앙일보	아파트 12층 매달린 딸 15분 붙잡은 엄마는 "24시간 자식 위한 삶"
	13	함께걸음	"장애학생도 해외연수를" 건의에 미국으로 날아간 총장님
	14	한겨레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와 함께하는 행복 돈음 농구교실 개최
	15	중부매일	"도와주세요" 허위신고한 지적장애인 경찰관체험 무슨 일?
	16	자유아시아방송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17	위싱턴중앙일보	사지마비 장애인 장애인씨, 한국 의료기술에 새 삶 희망
2018	1	연합뉴스	[패럴림픽] '위대한 엄마' 이도연의 아름다운 완주 "포기란 없다"
	2	경향신문	[기고]패럴림픽 중계는 국민의 '감동권' 문제다
	3	인사이트	LG,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 구한 해병대 장병 '특별채용'
	4	채널A	[천상철의 시선]장애 없는 장애인 올림픽
	5	미디어 오늘	사랑의리퀘스트'식장애인'동정과시혜'프레임은그만
	6	한겨레	패럴림픽 노르딕스키 이도연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달린다"
	7	원불교신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 내가 나를 이기는 위대한 도전, 장애인 스포츠
	8	중도일보	김희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 '뜻깊은 참여' "개념 연예인이네"
	9	서울경제	패럴림픽이보여준인간승리드라마
	10	뉴스1	장애 딛고 인간승리 감동 안겨준 선수들
	11	민주신문	스타벅스 최초 청각장애인 점장 권순미...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자신의 꿈 이뤄"

12	OBS	“장애는 문제 안 돼요”...장애 딛고 일어난 사람들
13	조이뉴스24	‘해투3’ 김동현, 청각장애 극복 스토리...목직한 감동
14	헤럴드경제	나눔, 여행, 예술, 공연 ‘하모니’ 장애인 희망여행 벽찬 감동
15	이데일리	장애인 골퍼 이승민 “마스터스 18번홀을 걷는 게 꿈이죠”
16	동아일보	패럴림픽 영웅 “보행자 앞에선 무조건 차량 멈추세요”
17	중앙일보	그에겐팔대신날개가있다,18세스노보더박수혁
18	매일신문	뇌성마비 앓는 마리아 “한국서 새 삶 꿈꿔요”
19	연합뉴스	도종환 장관 “운명 바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20	경북일보	장애를딛고꿈을향해야름다운도전
21	경남도민일보	장애아동돌봐준고교생3명'선행상'
22	아시아 경제	전남 장애학생들, 드라마보다 멋진 장면 연출
23	아이굿뉴스	장애인·비장애인 음악으로 하나되는 ‘밀알콘서트’
24	무등일보	"사랑으로 장애 극복...제2인생 찾았어요"
25	동아일보	“패럴림픽 보도, ‘장애극복’만 부각”
26	인사이트	지적장애앓는아이보살피고챙긴‘천사’고등학생들
27	국민일보	장애인-일반인과함께하는사랑나눔축제열어요
28	스카이데일리	연애·결혼·임신...남들은축복,장애여성엔고난
29	매일신문	“장애극복‘봉사’장애인의날20명에표창수여
30	ZDNet Korea	“들려주고보여준다”...장애인위한‘착한IT혁신
31	국민일보	[도전DNA되살리자]“장애인정...포기않고열심히가다보면길이보여”
32	부산일보	장애인들 '바다가 되어' 열띤 축제
33	충북일보	제천시, 제14회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행사 열어
34	에이블뉴스	조종란 이사장 첫 공식행사 불편했던 ‘워딩’
35	아시아투데이	코레일 서울본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36	오마이뉴스	불굴의의지로장애극복,이런말들이강요하는것
37	스포츠서울	한쪽 눈을 실명한 피트니스 모델 유리, 장애는 극복만 하면 사라져요~^^
38	머니투데이	"지적장애인들의 특별한 능력...'유니크한 디자이너'로 발전시켰죠"
39	한국경제	장애 극복한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 이웃과 생명 주제로 콘서트 ‘동행’ 상황리 개최
40	연합뉴스	장애 극복한 전문연주단 ‘한빛예술단’, 이웃과 생명 주제로 콘서트 ‘동행’ 상황리 개최

기 타

연도	번호	언론사	기사제목
2017	1	MBC	[단독] 욕했다고...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조현병’ 아들
	2	동아닷컴	[팩트 체크]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 일반인 10배? ... 일반인 절반도 안 돼
	3	노컷뉴스	시민에 흉기 휘두른 조현병 男 입원 거부...보완책 시급
	4	조선일보	늘어나는 정신질환 범죄 해답은...
	5	국민일보	묻지마 폭행’ 조현병 앓은 50대 장수 고시생 재판에
	6	충북일보	도내 정신질환 범죄 5년간 177건...사회문제 대두
	7	연합뉴스	‘모정의 힘’ 자살시도 딸 붙잡은 채 15분 넘게 버텨
	8	연합뉴스	어머니는 배란다 매달린 딸 잡고 버텼고...아버지는 눈물의 편지
	9	서울일보	장애인과 함께 장애 예방한다
	10	노컷뉴스	공연 중 깜짝 등장한 자폐성장아인...백건우 반응은
	11	함께걸음	'아버지 살해' 장애인 징역 20년...심신상실 인정 안 돼
	12	헤럴드경제	“노래 흥얼거려 화가나”...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13	중부일보	장애가정 등친 장애가정 어머니, 징역 6년 선고
	14	동아일보	“돈 좀 빌려줘”...지적장애 여성 꼬드겨 3천여만 원 가로챈 40대 男
2018	1	한국일보	“당신에게장애인친구가없는이유?그들이간혀있으니까”
	2	스포츠경향	‘장애인의날’인권위“장애인차별여전...관련진정매년1000건”
	3	헤럴드경제	조현병의위협성,방배초등학교인질극까지...
	4	메디컬리포트	모성박탈을경험한아이,정신질환위험성높아
	5	에이블뉴스	장애인은부모가될수없는가?-①
	6	공공뉴스	구급차 탈취 정신질환자 ‘광란의 질주’..처벌 수위도 ‘주목’
	7	한국일보	“장애인 이웃 안돼” 車로 막고 연판장 돌리고
	8	서산인터넷뉴스	탈시설화의합정
	9	민주신문	아들 정신병원 입원시키려던 어머니 피살..고위험군조현병강력범죄급증

2. 모니터링 활동

1) 언론보도 (블랙리스트, 우수기사)

2017년 블랙리스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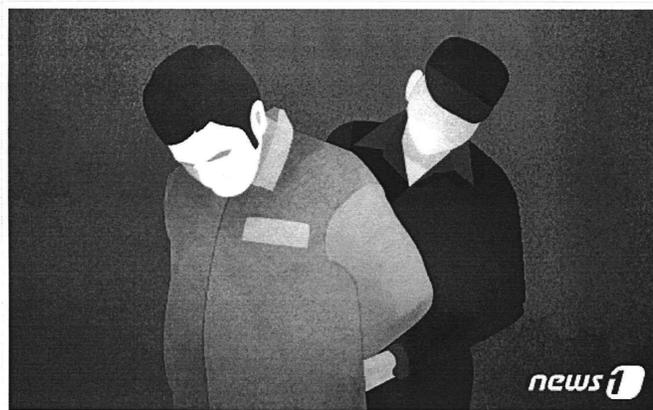


전국 > 전북

"발기 불능"...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오리발

피해 장애 여성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 징역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22 10:33 송고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데려다가 농사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기는 다소 줄었다.

“일이나 한 번 시켜볼까?”

윤모씨(69)는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A씨(52·여)를 상대로 몹쓸 생각을 했다. A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일을 시키기로 한 것.

A씨는 지능지수가 48, 사회성숙도지수가 23, 사회연령이 6세2개월에 불과한 지

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언어장애가 있다.

윤씨는 실제 A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고추농사 등 잡일을 시켰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빗자루로 때리기도 했다.

A씨를 상대로 한 윤씨의 만행은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윤씨는 2013년 8월의 어느 날 전북 순창군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손수 씻긴 뒤 한 차례 성폭행했다. A씨가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표현 능력이 약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한 짓이다.

예상대로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씨는 첩보활동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발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현실적으로 성폭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발기강직도가 80% 이상으로 확인됐다. 발기강직도가 70% 이상이면 정상발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및 폭력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윤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윤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윤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한 정보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및 폭력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음 및 폭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나무 / 작성번호 : 1701-0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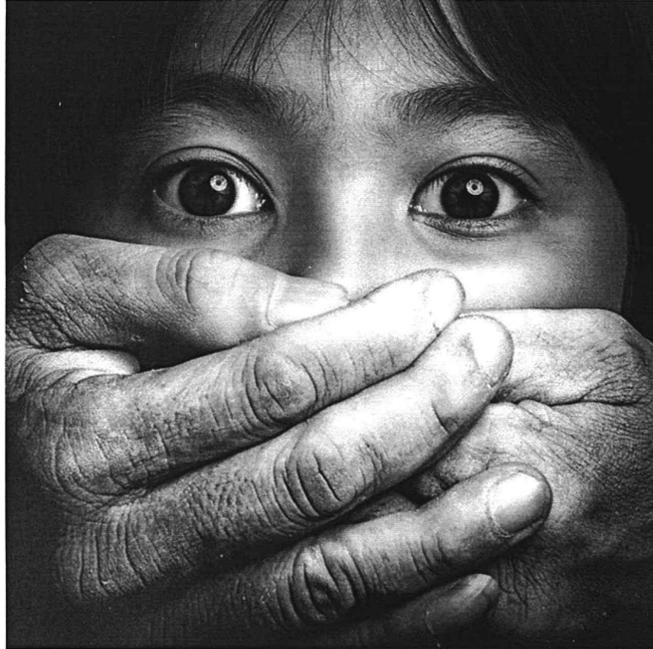
출처/기자	뉴스1코리아	기사날짜	2016.11.22
기사주소	http://news1.kr/articles/?2837238		
제목	“발기 불능”...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오리발		
내용분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범죄		
	잘못된 통념 벗어내기	주요초점 : 피해자 유발론, 정형화된 피해자 이미지 강화, 개인 일탈, 성욕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표현, 가해자 동정론(장애, 가정생활, 성장과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발’, ‘몹쓸’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축소하는 표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주요초점 :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털기식 보도,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설명, 사건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근거로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태도(피해여성의 도덕성을 문제삼는 태도)	
	선정성, 자극성 지양하기	주요초점 :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지,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성적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기불능’, ‘손수 씻긴 뒤’, ‘발기 강직도 80%’ 발기불능이어서 성폭력을 할 수 없었다는 가해자의 논리가 말이 안된다는 취지의 기사인 듯 함. 그러나 신체감정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기보다는 선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짐 	

<p>성폭력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도 관심가지기</p>	<p>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태도, 보호제도, 법률정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등 피해회복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보도하는지(사회구조적 문제의식)</p> <p>▪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관련 대책은 ‘관심’과 ‘보호’라는 단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지적장애여성이 성폭력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는 기사작성을 희망</p>
---	--

의붓딸 밀치고 뇌출혈 방치해 사망케 한 계모 징역 5년

최두선기자

등록: 2017.06.16 13:50 수정: 2017.06.16 13:50



게티이미지뱅크

9살 난 지적장애인 의붓딸을 넘어뜨려 뇌출혈을 야기한 뒤 계속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3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손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손씨는 올 3월 14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을 손으로 밀쳤고, A양은 넘어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

손씨는 이후 A양의 학교 담임교사에게 휴대폰 문자로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갈 것 같다.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지만 병원은커녕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손씨는 A양을 계속 방치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숨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퇴근한 남편(33)이 이 사실을 알게 돼 이날 오후 6시 35분쯤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손씨는 경찰에 폭행사실은 시인했지만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 방에서 쉬게 했다. 방치한 게 아니다.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씨가 A양의 사망 가능성을 부인하고, 법의학 전문의도 부작위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자 폭행치사 혐의로 손씨를 구속,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친부와 조부모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오랜 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2017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조세은 / 작성번호 : 1702-04-05

출처/기자	한국일보 / 최두선기자	기사날짜	2017.06.16
기사주소	http://www.hankookilbo.com/v/1862002a4b1240feb052043321560968		
제목	의붓딸 밀치고 뇌출혈 방치해 사망케 한 계모 징역 5년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답/극복		
	선정성, 자극성 지양하기	<p>주요초점 :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지,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불쾌할 정도로 지나친 상상을 유발하는 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 기사와 상관없고 피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이미지를 삽입 ▪ ‘손씨는 올 3월 14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을 손으로 밀쳤고, A양은 넘어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 지역 및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자극 	

중부매일

HOME 사람들 동정

"도와주세요" 허위신고한 지적장애인 경찰관체험 무슨 일?

송희권 기자 승인 2017.07.16 16:53 0면



[중부매일 송휘현 기자]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허위신고한 지적장애인을 따뜻하게 돌본 미담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봉명지구대 2팀 소속 김하윤 경장. 김 경장은 지난달 23일 순찰차를 보고 다급하게 손을 흔드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저기 여자가 집에 못가게 한다"면서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말했다.

확인해보니 남성 심씨는 지적장애인이었고 여성은 3년간 돌봐준 자원봉사 선생님이었다.

허위신고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 경장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심씨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관이 꿈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에 김 경장은 재치를 발휘해 심씨에게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경찰서로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후 심씨는 김경장의 제안대로 지난 8일 오전 11시 심씨와 어머니는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체험을 진행했다.

심씨의 어머니는 "단순히 장애인 허위신고로 볼 수 있는데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어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다"며 "아들을 안중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행복하다"고 말했다.

송휘현 기자 hhsong9@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김예원 / 작성번호 : 1703-06-15

출처/기자	중부매일/ 송희현 기자	기사날짜	2017-7-16
기사주소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083		
제목	"도와주세요" 허위신고한 지적장애인 경찰관체험 무슨 일?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장애에 대한 편견 지양하기	<p>주요초점 :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하게 대하는 태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비하, 편견, 혐오 강화표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담은 기사,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사용(질름발이, 꼽추, 앓은뱅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하윤 경장님 너무 존경스럽다. 그러나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경찰서로 초대하겠다”라는 발언은 장애인을 순종적인, 혹은 순종적이어야 할 존재로 보는 편견이 섞인 것 아닐까? 	

오줌·토사물 먹이고 벨트 채찍질...보육원생 학대 8명 기소

기사입력 2017/01/19 15:02 송고

철판에 손 지지고 주사기로 찌르기도... "못견뎌 자해하자 병원비 든다고 쫓아내"

(여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곳에서 일한 보육교사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TV 제공]

이들은 수년에 걸쳐 끔찍한 방법으로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을 짓밟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여주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근무한 장모(40·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변모(36·여)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1년부터 1년여간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공용 세탁기에서 자신의 빨래를 제때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6~12세 어린이 8명의 얼굴과 엉덩이를 손과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자 몽둥이와 파리채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겁을 줬으며 속옷만 입힌 채로 보육원 건물 계단에 1시간가량 세워놓았다.

청소용 바가지에 오줌을 싼 어린이에게 다른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오줌을 마시게 했고 빨래를 하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신던 양말을 입에 집어넣는 등 반인권적 가혹 행위도 저질렀다.

또 사소한 생활규칙을 어긴 어린이들에게 다른 어린이들과 대화와 접촉을 금지하는 일명 '투명인간' 벌칙을 주고 학교에 갈 때 속옷이나 양말착용을 금지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2명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간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들을 각목 받자루 등으로 머리 등 때까지 때리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가져다 대도록 해 화상을 입히는 등 하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들을 때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자신들의 손을 보호하고자 바셀린을 바르거나 장갑을 끼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기소된 전 보육교사 변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생활규칙 위반 등 잘못을 바로잡는다며 어린이들을 가죽벨트, 주삿비늘로 때리거나 찌르고 지적장애를 앓는 어린이가 밥을 먹다가 구토하자 토사물을 먹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이다.

보육원에서 발생한 이러한 아동학대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지게 됐다.

장씨 등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경찰 수사를 전후로 모두 사직하거나 해임하는 등 보육원을 떠났다.

경찰은 보육원 입소 어린이 90여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여 40여명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어린이들은 그동안 보육원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신고를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성장했지만, 학대로 인한 정서적 충격으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너무 많이 맞고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자해했는데 보육원에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며 퇴소시켰다", "엄마의 학대로 이곳에 오게 돼 엄마로부터 탈출했다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또 학대를 당해 분노조절장애, 우울증이 한 번에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예술치료 등을 진행해 정서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하며 외부 아동보육복지 전문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 상담과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2017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박현정 / 작성번호 :1702-08-04

출처/기자	연합뉴스	기사날짜	2017.1.19
기사주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9/0200000000AKR20170119122600061.HTML?input=1195m		
제목	오줌·토사물 먹이고 벨트 채찍질...보육원생 학대 8명 기소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장애인 인격권 존중하기	<p>주요초점 :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대상화, 도구화하는 보도, 장애인이 특별하고 다르다는 식의 보도, 장애인은 이질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보도. 장애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이 너무 선정적임 	
	선정성, 자극성 지양하기	<p>주요초점 :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지,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불쾌할 정도로 지나친 상상을 유발하는 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규칙 위반 등 잘못을 바로잡는다며 어린이들을 가죽벨트, 주삿바늘로 때리거나 찌르고 지적장애를 앓는 어린이가 밥을 먹다가 구토하자 토사물을 먹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이다 <p>자세하고 선정적인 묘사임. 뉴스에 삽입된 그림도 선정적임</p>	
장애에 대한 편견 지양하기	<p>주요초점 :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하게 대하는 태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비하, 편견, 혐오 강화표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장애를 질병으로 묘사)담은 기사,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사용(절름발이, 꼽추, 앓은뱅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를 앓는 어린이가 밥을 먹다가 구토하자 토사물을 먹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이다. 		

2018년 블랙리스트 기사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소된 27세 남성 2명 둘다 '무혐의' 처리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성폭행범'으로 지목된 남성 2명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By 곽상아



VANBEETS VIA GETTY IMAGES

경남 거제에서 27세 남성 두명이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은 이 두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출산까지 하게 된 지적장애인의 아버지가 27세 남성 A씨와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무혐의'라고 보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래의 이유들 때문이다.

1. A씨와B씨가 경찰 조사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2.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이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아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3. 경찰이 모 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의 IQ 지수를 확인했더니 96으로 나와, ‘의사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A씨와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했으나,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5.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피의자가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수사 종결은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3월 2일)

A씨와 B씨를 직접 신고한 지적장애인의 아버지는 ‘무혐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씨(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앓아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그는 ”딸의 지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딸이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놓고 그 잘못도 딸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범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민일보 3월 1일)

경남신문에 따르면, 이 지역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등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뒤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에서 모 병원에 의뢰해 IQ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 ‘지적장애인 3급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김소희 / 작성번호 :1801-10-01

출처/기자	허프포스트 / 광상아 기자	기사날짜	2018. 03. 02
기사주소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rape_kr_5a98a987e4b0479c0250e0ee?utm_id=naver		
제목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소된 27세 남성 2명 둘다 '무혐의' 처리된 이유		
내용분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신중하게 보도하기	<p>주요초점 : 피해자 목소리 배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지, 기사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했는지</p> <p>1. 해당 기사는 피소된 남성들이 무혐의 처리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해자들의 입장만을 주로 서술하고 피해자(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선 편의상 피해자라고 기술)의 입장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했다.</p> <p>2. 또한 피소된 남성들의 주장을 기사 앞부분에 배치하고 피해자의 주장은 가장 마지막 문단에 배치하였다. 기사의 전체를 읽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보통 중요한 내용을 기사의 앞에 배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할 것으로 추측되는 기사의 앞부분만 보고 기사를 판단하기 쉽다. 따라서 피소된 남성들의 주장을 기사 앞부분에 배치하고 피해자의 주장은 가장 마지막 문단에 배치한 것은 사건에 대한 오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p> <p>3. 기사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주장만 담겼을 뿐 피해자 본인의 목소리는 기사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 사건이 성폭행인지 아니면 합의된 성관계인지 파악하는 데에는 피해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단 한 마디도 기재되었지 않았다.</p> <p>4. 1. A씨와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p>	

	<p>>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 진술할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이것이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p>
<p>성폭력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가지기</p>	<p>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태도, 보호제도, 법률정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등 피해회복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보도하는지(사회구조적 문제의식)</p> <p>2.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이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아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p> <p>> 합의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합의와 강제를 판단하는 데에는 고도의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유사한 다른 사건의 판례 등을 가져와 비교하고 왜 합의라 판단하였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 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보도하여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했을 필요가 있다.</p> <p>(사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기 위해선 꽤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 기사는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이고 필자가 언급한 내용을 첨가한다면 그 기사는 더 이상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 기획 기사가 된다. 언론사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한다면 모든 보도를 기획 기사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자가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스트레이트 기사를 쓸 때에도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지 고려하여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p>

술 마시다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 '대낮에 얼굴 때리고 짐승 범행'

2018년 02월 24일 (토) | 김문철 기자 | ace8819@econonews.co.kr

[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성추행 성폭력 추방 캠페인/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A씨는 2016년 10월 3일 정오께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지적장애인인 B(23·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인천의 한 지하철역 인근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문철 기자 ace8819@econonews.co.kr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김다정 / 작성번호 : 1801-02-04

출처/기자	이코노뉴스 / 김문철 기자	기사날짜	2018-02-24
기사주소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59		
제목	술 마시다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대낮에 얼굴 때리고 짐승 범행’		
내용분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잘못된 통념 벗어내기	주요초점 : 피해자 유발론, 정형화된 피해자 이미지 강화, 개인 일탈, 성욕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표현, 가해자 동정론(장애, 가정생활, 성장과정 등) - 지적장애인인 B(23·여)씨 여성에게만 ‘여’를 추가로 붙인다는 것은 남성이 기본형이라는 잘못된 통념에서 나온 관행이다. 당연히 없어야 하며, 모두 표기하거나 모두 표기하지 않거나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관성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주요초점 :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털기식 보도,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설명, 사건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근거로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태도(피해여성의 도덕성을 문제삼는 태도) - A씨는 2016년 10월 3일 정오께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굳이 사건의 날짜를 연월일에 시간대까지 특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사건을 기사화 하는 이유는 특정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여 널리 알리기 위함이거나 또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그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함이어야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여기서는 시간만이지만, 때로는 장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소지가 높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이유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면 지양해야 한다.	
	선정성, 자극성 지양하기	주요초점 :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지,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성적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는지	

		<p>– ‘삽화’</p> <p>성폭력 사건에 벗겨놓은 인형을 삽화로 넣는 저의가 너무너무 불쾌하다. 성폭력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기에 삽화를 이런 식으로 넣는지, 매번 문제적인 삽화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성폭력 사건을 기사화 할 때, 이런 삽화가 기사에 들어가게 되면, 삽화의 이미지가 해당 기사의 내용에 성폭력 사건의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소재로 다뤄지도록 만든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기사화 할 때에는 되도록 삽화를 넣지 않거나, 부득이 넣게 된다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	--	--

[천상철의 시선]장애 없는 장애인 올림픽

뉴스A LIVE [채널A] 2018-03-19 11:49

동영상 FAQ

AD 로또 1등 당첨번호 "6자리패턴" 밝혀져...

AD 뱃속에 "이것" 넣었더니 "똥뱃살" 이 짹짹~ 빠져!

[리포트]

평창 패럴림픽이 열흘 일정을 끝내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첫 번째 대한민국 금메달의 주인공 신의현 선수. 대학 졸업을 하루 앞둔 2006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두 다리를 잃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울지 않았던 어머니, 남편의 장애를 알고도 결혼한 베트남 출신 아내가 큰 힘이 됐습니다.

[신의현 /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7.5km 좌식 금메달]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맨발의 마라토너로 유명한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 아프리카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이자 올림픽 최초의 마라톤 2연속 우승자였습니다.

1969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불운을 맞죠.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 양궁, 탁구 등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아베베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내 다리는 달릴 수 없지만 나에게서는 아직 두 팔이 남아 있다."

결국, 1970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경기가 패럴림픽의 시초가 됐죠.

인생을 개척하는데 신체적인 한계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스티비 워더)

이 노래를 부른 스티비 워더도 시각 장애인이었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 당신의 발만 쳐다보지 말고... 발 아래만 내려다보면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겐 원하면 걸을 수 있고 힘내면 달릴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인간관계, 집까지 포기한 오포세대, 그리고 모든 걸 포기했다는 N포세대까지. 우리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대변하는 신조어들입니다.

하지만, 한 발만 더 내디뎌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결승점은 우리 바로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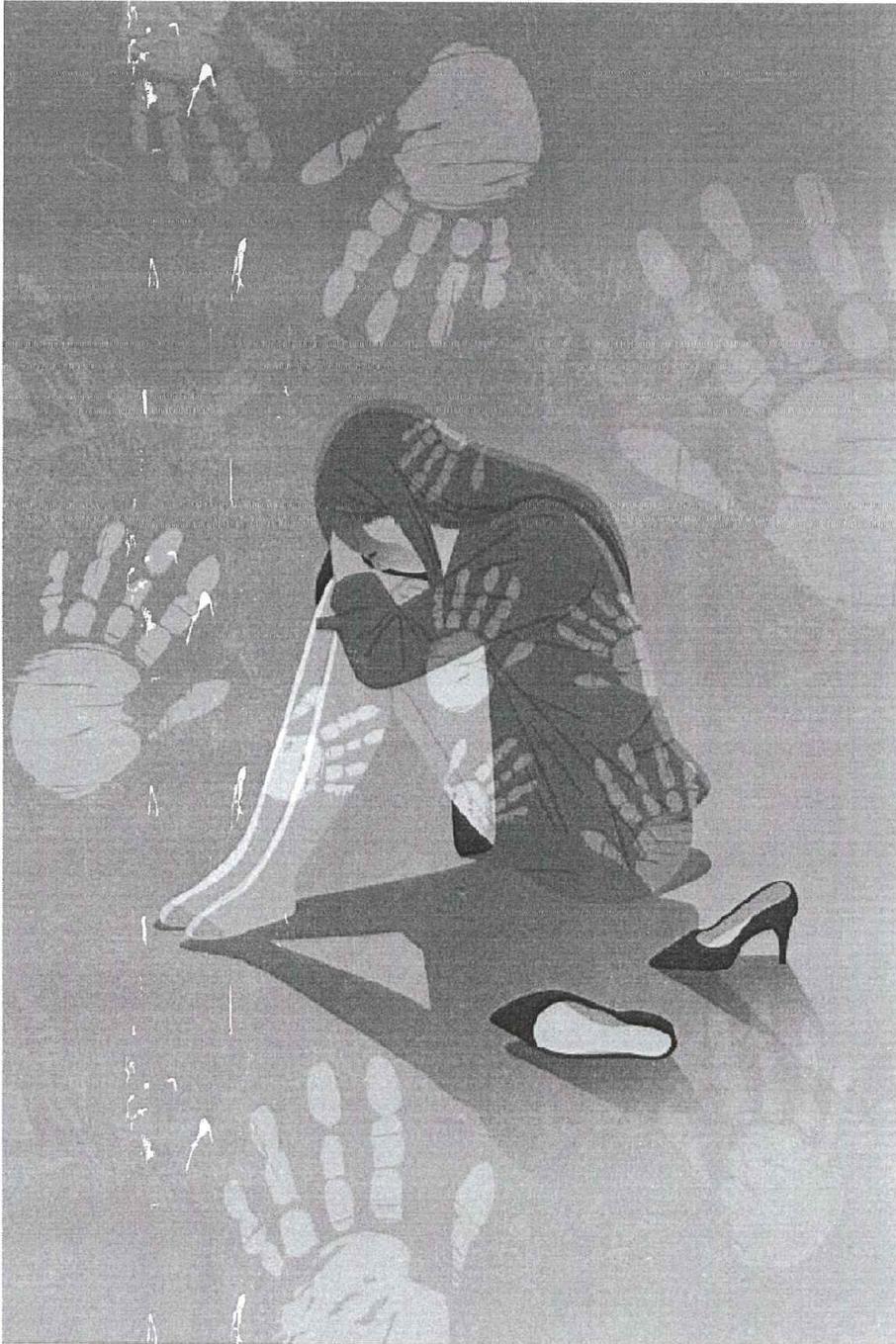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나무 / 작성번호 :1803-03-04

출처/기자	채널A/전상철	기사날짜	2018. 03. 19
기사주소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84605		
제목	[전상철의 시선]장애 없는 장애인 올림픽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미담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인격권 존중하기	<p>주요초점 :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대상화, 도구화하는 보도, 장애인이 특별하고 다르다는 식의 보도, 장애인은 이질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보도. 장애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보도.</p> <p>‘장애 없는 장애인 올림픽’ 장애가 없는의 기준이 아래 기사의 내용에 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끊임없이 극복해서 비장애인의 능력만큼 또는 그 이상을 보여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함을 독려하고 있음. 이는 특출한 능력을 갖기 어려운 대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장애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특출난 능력이 없어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기반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됨</p>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	<p>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시혜적 미담수준으로 격하시키기, 권익옹호제도, 법률정보 등 질높은 정보제공도 병행하는 노력(사회구조적 문제의식)</p> <p>‘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모릅니다’ 결혼, 출산, 주거 등 왜 포기하며 사는지에 대해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만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도 위와 같이 개인의 의지로 충분히 극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으니 한 발 더 나아가라고 독려하고 있음. 이는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프레임을 강요하는 논리와 동일함</p>	

이번엔 서산 성폭행 파문... 이웃 주민 지적장애인을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서산]서산의 한 지적장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 등 여러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산시 J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3급인 A씨(56)는 20일 서산경찰서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서산서 관계자는 "20일 피해자와 친언니 2명이 경찰에 찾아와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것은 맞다"며 "다만 장애인의 성폭행 사건의 경우 충남지방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충남지방청에 인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 언니들은 "동생이 지식 능력이 떨어신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못쓸 짓을 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고, 눈물만 나올 뿐"이라며 "이중에는 내 동생의 딸(지적장애인 2급)을 성폭행 한 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격하게 흥분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고를 언니들이 서산경찰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B씨의 성폭행과 관련해 재판에 계류 중인 만큼 21일 수사관들이 피해자인 A씨를 찾아가 이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 언니들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을 가도 더디고,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당을 적게도 받았지만 이를 악용해 고용한 이들은 A씨에게 일을 시키고 않고, 자신들의 차량이나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 언니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B씨 외에도 지난 8월 C씨가 동생을 성폭행 해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기도 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수년 간 D씨 등 6명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6년 5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4일 서산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김소희 / 작성번호 :1801-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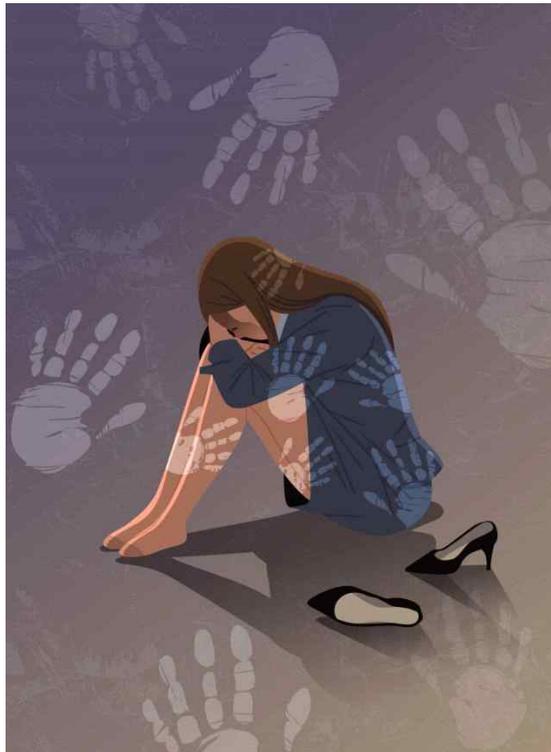
출처/기자	대전일보/ 박계교 기자	기사날짜	2018-02-21
기사주소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01130		
제목	성폭행 파문... 이웃 주민 지적장애인을		

장애인 성폭력
 장애인 학대
 장애 미담/극복
 기타 장애인 관련

주요초점 : 피해자 유발론, 정형화된 피해자 이미지 강화, 개인 일탈, 성욕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표현, 가해자 동정론(장애, 가정생활, 성장과정 등)

내용분석

잘못된 통념 벗어내기



피해자를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묘사하는 전형적인 삽화이다.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장애인이다. 이러한 삽화는 장애인은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위치시킬 수 있다.

<p>선정성, 자극성 지양하기</p>	<p>주요초점 :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지,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성적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는지</p>
	<p>성폭행 파문... 이웃 주민 지적장애인을 기사의 제목은 기사가 다루는 사건의 핵심이나 중심 내용을 간추려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는 가해자가 제외된 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행위만 드러나 있다. 또한 이 문장구조는 선정성을 강조해 독자의 궁금증을 자극해 클릭 수를 유도하고자 한 제목으로 보인다.</p>
<p>장애에 대한 편견 지양하기</p>	<p>주요초점 :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비하, 편견, 혐오 강화, 가해자의 장애만 사건 원인으로 초점 맞추기,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성욕만 발달된 존재로 왜곡)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지</p>
	<p>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고를 언니들이 서산경찰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애가 신고를 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인 것처럼 표현했다. 장애를 갖고 있어서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성폭력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등 다른 사회적 요인이 문제가 됐을 것이다. 장애인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묘사한 것은 잘못이다. 설령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 할지라도 언니들이 피해자 대신 신고한 것은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사 내용에 담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p>

모성 박탈을 경험한 아이, 정신질환 위험성 높아

심현영 기자 2018-05-11 13:56



▲유년기의 외로움은 여러 가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출처=123RF)

유년기는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행동과 사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은 성인이 된 이후 두뇌 기능을 바꿔놓기도 한다.

그중 아이가 엄마와 분리됐다고 느끼는 모성 박탈은 정신적 외상을 유발할 정도의 사건이다. 미 인디애나대학 및 퍼듀대학 연구팀은 모성 박탈감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 발병 위험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모성 박탈, 정신 질환 위험성 높여

모성 박탈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자 겸 정신과 의사, 정신 분석가인 존 모스틴 볼비 박사가 내세운 가설이다. 볼비 박사는 정신 건강과 행동 문제는 유년기 경험과 연관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린이는 탄생 후 선천적으로 타인에게 애착을 갖는다. 아이들은 이 애착심을 가지고 성장하며 생존한다는 것이다.

볼비 박사는 애착심이 아이들의 본능이며 공포나 분리, 불안 같은 감정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기들은 부모나 보모가 떨어지려는 순간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며 울음 등 애착을 유발하는 신호를 보낸다.

또한 애착감 형성이나 유지가 실패한 경우, 애정이 없는 정신질환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퍼듀대학 연구진은 모성 박탈이 두뇌에 작용하는 영향에 관해 연구했다.

연구진은 최근 두뇌 발달 중요 시기인 출생 후 9일째 되는 날 새끼 생쥐를 어미로부터 떼어놓았다. 그 후, 새끼 생쥐의 두뇌를 스캔해 행동학적 및 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 비정상적 증상을 발견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는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인간의 두뇌와 비교할 수 있었다.

인간과 생쥐는 여러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둘 다 온혈 유기체로써 동일한 기본적인 해부학적 도면과 생리학적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과 생쥐는 동일하게 작용하는 신경 체계를 지녔다. 즉, 신체는 감염과 부상에 동일하게 반응하며, 생리학적으로 비슷한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는 과학자들이 약물을 테스트하거나 과학적 증거를 입증할 때 생쥐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다.

과학자들이 어미 쥐와 격리시킨 생쥐에서 발견한 비정상적 증상은 기억력 손상 및 두뇌 영역간 비활성화 작용이다. 사람과 비교하면 조현병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연구 저자인 브라이언 F. 오도넬 교수는 “유년기 스트레스 또는 박탈감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 정신 질환과 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설치류에게 스트레스를 가해 두뇌와 행동에서 영구적 변화를 확인했다. 따라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나 개입을 통해 성인기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장애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신 질환과 증상 발현의 주요 원인은 전문가들에게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또, 이번 연구로 모성 박탈을 대체할 수 있는 부성 박탈의 효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부재와 조현병의 위험성 간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 좋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와 아들(출처=123RF)

모성 박탈의 영향

모성 박탈 현상의 영향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감정이 메마르게 한다. 이런 영향은 원숭이나 강아지 같은 동물에게서도 발견된다.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모성 박탈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의존 우울증: 의존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기능 발달에 손상을 입는다. 이는 아이가 어머니 등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발생하며, 무관심이나 언어 표현력 결핍 등 증상이 동반된다.
2. 편재 불안감: 부모가 아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 그룹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기보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한다.
3. 애정이 없는 정신질환: 아이가 타인에게 애정이나 관심을 보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 속에 살게 된다. 또,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나 특별한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모성 박탈의 또 다른 장기적 영향으로는 범죄 행동과 지적 능력 감소, 공격성 증가, 우울증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부모와 보호자는 긍정적인 강화 양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그룹과의 교류를 통해 정신질환의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다.

[메디컬리포트=심현영 기자]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나무 / 작성번호 :1804-03-04

출처/기자	메디컬리포트/심현영기자	기사날짜	2018. 05.11
기사주소	http://medicalreport.kr/news/view/47542		
제목	모성 박탈을 경험한 아이, 정신질환 위험성 높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내용분석	장애에 대한 편견 지양하기	주요초점 :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하게 대하는 태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비하, 편견, 혐오 강화표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장애를 질병으로 묘사)담은 기사,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사용(절름발이, 꼽추, 앓은뱅이 등) ‘모성 박탈을 경험한 아이 정신질환 위험성 높아’, ‘생쥐의 비정상적 증상=조현병 증상’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기사. 이런 기사를 쓰면서 본인의 기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서 썼을까 싶은 기사. 장애에 대한 편견에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는 프레임까지 매우 문제적으로 덧입힌 기사	
	신중하게 보도하기	주요초점 : 피해자 목소리 배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 처럼 보도하지 않는지, 기사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했는지 ‘美 인디애나대학 및 퍼듀대학 연구팀’, ‘심리학자 겸 정신과 의사, 정신 분석가인 존 모스틴 불비 박사’ 기자들이 연구자료를 사용할 때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 그러나 어떠한 관점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해석하느냐는 다른 문제이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됨. 연구자체가 정신질환 발병원인의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을 고려했을까? 즉, 정신질환을 사랑받지 못한 가정탓으로만 결론 짓는 것은 위험.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으며 난 사찰받고 있다” 이러한 고통의 호소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	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시혜적 미담수준으로 격하시키기, 권익옹호제도, 법률정보 등 질높은 정보제공도 병행	

	<p>하는 노력(사회구조적 문제의식)</p> <hr/> <p>‘모성박탈’, ‘의존 우울증, 편제불안감, 애정이 없는 정신질환, 공격성’</p> <p>- 엄마가 없으면 위의 각종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결론은 한국사회의 이성애 중심 정상가족 프레임, 양육=엄마(여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 다양한 문제적인 통념을 강화하는 기사</p> <p>- 사람이 성장하는 사회적 과정을 온전히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책임한 기사. 인간은 10대 비혼부모, 가정폭력 아버지, 한부모 빈곤 가정, 입양 등 스스로 예측(선택)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 조건, 관계안에서 태어남. 인간이 사회에 태어나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가족 외에 사회 구조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 정신질환의 위험성, 범죄 가능성의 감소 등 어떤 특정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나 보호자의 긍정적인 강화양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은 개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인간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 또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견고한 논리의 일종</p>
--	--

구급차 탈취 정신질환자 ‘광란의 질주’..처벌 수위도 ‘주목’

조울증 치료 전력男 난동에 2명 경상..관리대책 중요성 부각

김수연 기자 승인 2018.05.09 14:51 댓글 0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조울증 치료 전력이 있는 남성이 119 구급차를 탈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여고생 2명이 다쳤지만, 구급차를 탈취한 남성은 정신질환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20)는 지난 8일 오후 5시30분께 천안시 순천향대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119 구급차를 훔쳐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차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방해(제16조 제2항) 금지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50조)에는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A씨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 구급차 무단 탈취 난동에 대해 처벌이 구체화되고 구급차 경비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공개된 현장 영상에서 A씨는 119 구급차를 세워놓고 발길질을 하거나 행인들에게 욕을 하고 구급차 앞문을 세게 수차례 열고 닫기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다 갑자기 차를 몰고 빠른 속도로 인파가 많은 길을 내달렸다.

A씨는 탈취한 119 구급차를 타고 10여분 간 운전하며 도심을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여고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탈취된 119 구급차는 구급대원이 70대 여성을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던 상황이라 차량 열쇠가 꽂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을 방문했으나 입원을 시켜주지 않아 밖에 세워진 차량에 화풀이를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울증은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양극성 장애'라는 병명을 사용한다.

한편,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국내 정신질환자의 수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명으로 13.0%로 증가했다.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도 160명에서 358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 방배초 인질극과 고려대 폭파 협박 허위 신고를 한 각 범행 당사자들 모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월 경남 창원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50대 남성이 자택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최근 위협을 느낄 만한 정신질환자들의 일탈 행위가 이어지면서 허술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김다정 / 작성번호 :1804-02-01

출처/기자	공공뉴스/ 김수연기자	기사날짜	2018.05.09
기사주소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50		
제목	-구급차 탈취 정신질환자 ‘광란의 질주’..처벌 수위도 ‘주목’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장애에 대한 편견 지양하기	<p>주요초점 :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비하, 편견, 혐오 강화, 가해자의 장애만 사건 원인으로 초점 맞추기,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 (성육만 발달된 존재로 왜곡)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지</p> <p>A씨는 과거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국내 정신질환자의 수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명으로 13.0%로 증가했다.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도 160명에서 358명으로 늘었다.</p> <p>장애를 피해자의 속성으로 다룰 때에는 주로 취약한, 무능력한 존재로 그리지만, 장애를 가해자의 속성으로 다룰 때에는 주로 공격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그린다. 이 기사를 쪽 읽다보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편견을 제도에 반영하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이는 굉장히 문제적이다.</p>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	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태도, 보호제도, 법률정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등 피해회복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보도하는지(사회구조적 문제의식)		
	<p>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최근 위협을 느낄 만한 정신질환자들의 일탈 행위가 이어지면서 허술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p> <p>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는 개인의 악의도 물론 원인의 일부겠지만, 오로지 개인의 악의만으로 일어나는 일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그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 혹은 사회문화적인 문제가 있으며, 언론과 제도권(공공기관 등)은 원인을 모두 개인의 ‘일탈’로 돌리기보다는 그 구조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버리면 그 개인이 악의를 가지지 않게 ‘관리’하고 처벌하는데서 끝나버린다. 이는 해결책이 아니며, 그 개인이 그러한 악의를 가지게 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악의에서 작</p>		

	<p>용한 구조적인 문제나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그를 바탕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말 그대로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으며, 구조나 사회문화적인 문제점을 짚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p>
--	---

지적 장애 앓는 아이 보살피고 챙긴 '천사' 고등학생들

최해리 기자 - haeri@insight.co.kr 2018-05-24 15:08:02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길을 잃고 안전부절못하는 장애 어린이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학생들의 사연이 많은 이들에게 훈훈함을 안겼다.

지난 16일 양산경찰서는 양산고등학교 3학년 김수광, 김승환, 홍성환 학생에게 양산경찰서장상을 수상했다.

위 학생 3명은 지난 5일 양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8 어린이잔치 한마당' 행사장에서 진행 보조 봉사활동 중 보호자를 잃어버린 장애 어린이 6명을 발견했다.

일부 어린이가 갑자기 옷을 벗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아 학생들은 이들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이라고 빠르게 판단했다.

그 즉시 학생들은 주변의 천 등을 가져와 옷을 벗은 어린이들의 몸을 가려줬다.

또한 보호자를 잃고 홀로 남겨져 불안해할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보호자를 찾아주고 싶었지만 아이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이들은 아이를 행사장 내 미아 보호소로 데려갔다.

아이들은 경찰에 도움을 받아 다행히 보호자에게 인계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장애 아동이 보호자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학생들은 "순간적으로 판단해 행동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줄 몰랐다"면서 "당연한 일인데 상을 받아 쑥스럽다"고 전했다.

예양수 교장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선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또래 청소년과 어른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이연수 / 작성번호 :1803-09-11

출처/기자	인사이트/최혜리 기자	기사날짜	2018.5.24
기사주소	http://www.insight.co.kr/news/156981		
제목	지적장애 앓는 아이 보살피고 챙긴 ‘천사’ 고등학생들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장애에 대한 편견 지양하기	주요초점 :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하게 대하는 태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비하, 편견, 혐오 강화표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장애를 질병으로 묘사)담은 기사,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사용(걸름발이, 꼽추, 앓은뱅이 등) ‘지적장애 앓는’ 장애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앓는’ 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함	

한쪽 눈을 실명한 피트니스 모델 유리, 장애는 극복만 하면 사라져요~^^

연예가화제 수정 2018-08-06 06:43:59 입력 2018-08-06 06:43:59



[스포츠서울 이주상기자] 한쪽 눈 실명이라는 좌절을 극복하고 머슬마니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가 된 도전의 아이콘 유리의 오프로드 미공개 화보가 공개됐다.

유리는 흥채염과 백내장 증세가 악화돼 한쪽 눈의 망막이 떨어져 실명되는 역경을 극복하고 무려 23kg 감량에 성공, 2018 상반기 머슬마니아 대회에 출전해 인간승리의 드라마를 장식해 화제가 됐다.

헬스 남성잡지 '맥스큐' 8월호 커버걸로 낙점된 유리는 미공개 화보를 통해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동차 엔진의 강력한 마력처럼, 폭음을 날리는 섹시미와 여성미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맥스큐 관계자는 “화성 우음도에서 촬영한 8월호는 오프로드라는 콘셉트로 역경을 극복한 유리의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을 어필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rainbow@sportsseoul.com 사진제공 | 맥스큐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이연수 / 작성번호 :1803-09-17

출처/기자	스포츠서울 / 이주상 기자	기사날짜	2018.8.6
기사주소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666266		
제목	한쪽 눈을 실명한 피트니스 모델 유리, 장애는 극복만 하면 사라져요~^^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장애인 인격권 존중하기	주요초점 :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대상화, 도구화하는 보도, 장애인이 특별하고 다르다는 식의 보도, 장애인은 이질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보도. 장애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보도. ‘장애는 극복만 하면 사라져요’ 장애를 개인의 의지 문제로 다루는 문구. 장애는 ‘극복’ 해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7.14 20:10



민주원 씨 "김 씨, 부부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이날 "안 전 지사는 여자들을 마치 삼천궁녀쯤으로 생각한 것 같다. 성폭행은 아니라도 여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한 대가는 받아야 한다"며 "꽤넘치 말거라?" 이 무슨 염치없고 똥딴지 같은 소리냐"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견해를 추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안희정-김지은, 두 사람의 문제는 이렇다.

처음 한 번은 성폭행일 수도 있다. 그 다음부터는 소극적이라도 김지은 씨 스스로 성관계에 응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안희정 전 지사를 좋아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런 게 아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마르고 닳도록 사랑했으면,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안 전 지사 부부관계에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싫증이 났든, 부인이 눈치를 챘든,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든, 어떤 이유로든 김 씨를 멀리 했고,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자신의 곁에서 밀어냈다.

그리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자, 김 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이다.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소원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문영 기자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김다정 / 작성번호 :1801-02-07

출처/기자	굿모닝충청 / 정문영기자	기사날짜	
기사주소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48		
제목	안희정과 김지은...‘합리적 추론’으로 유추해본 두 사람의 관계		
내용분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p>주요초점 :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털기식 보도,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설명, 사건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근거로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태도(피해여성의 도덕성을 문제삼는 태도)</p> <p>처음 한 번은 성폭행일 수도 있다. 그 다음부터는 소극적이라도 김지은 씨 스스로 성관계에 응했을 것이고, 피해자가 현재 네 번 모두 각각의 성폭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거없이 부정하고, 마치 동의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말을 ‘합리적 추론’이라고 하고 있다.</p>	
	선정성, 자극성 지양하기	<p>주요초점 :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지,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성적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는지</p> <p>안 전 지사가 김 씨를 마르고 닳도록 사랑했으면,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안 전 지사 부부관계에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싫증이 났든, 부인이 눈치를 챘든,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든, 어떤 이유로든 김 씨를 멀리 했고,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자신의 곁에서 밀어냈다. 그리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자, 김 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이다.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소원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p> <p>성폭력사건을 개인간의 치정문제로 치환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을 마치 연애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이런 한 일개 개인의 억측을 ‘합리적 추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했다는 점이다. 아무리 작은 지역언론사라고 해도, 이는 명백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다.</p>	

그 선생이 부르면 괴로웠다...17세 장애소녀 '악몽의 5년'

[중앙일보] 입력 2018.07.12 11:21 수정 2018.07.12 21:33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는 한 교사가 직위해제 된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 전경 오른쪽 그림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 해당 학교 유튜브 캡처 중앙포토

“우리 딸이 5년씩이나 몹쓸 짓을 겪었다니. 그것도 학부모들한테 제일 인기 좋은 선생한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학생의 아버지 최모(50)씨는 12일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A양(17)은 2014년부터 교사 B씨(44)에게서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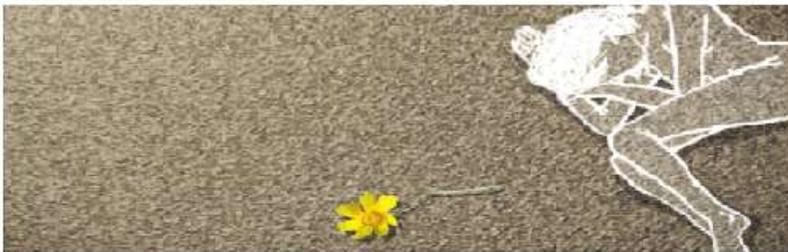
교사 B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A양을 체육관 등으로 불러내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학생이 두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청소일을 하는 아버지 최씨는 B교사가 학부모 평이 좋다는 말만 믿어왔다.

“10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도 키우고 일도 하느라 힘든 상황에서 마침 특수학교 기숙사가 있다고 하니 우리 가족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럴 줄은....”

최씨는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면 1등으로 꼽는 사람이 B교사 였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슬퍼했다. 최씨는 또 “학교 직원들도 ‘우리는 몰랐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5년 썩이나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마치 딸에게 얘기하듯 기자에게 “아빠가 직접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A양은 지역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고 현재 집으로 돌아온 상태다.



이 학교는 최근 A양을 비롯한 학생들과 상담을 하던 중 이런 내용을 들었다. 그리고 9일 경찰과 성폭력 상담센터 등에 B교사를 신고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진술 이후 지난 10일 학교 측은 B교사를 직위해제했다”며 “다만 B교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경찰로 넘어간 상태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강원지방경찰청과 아버지 최씨 등에 따르면 B교사는 A양에게 “차를 태워 주겠다”면서 불러내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이 ‘이런 건 비밀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괴롭혔다”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사에 따르면 B교사는 A양이 기숙사에 있는 밤에도 불러내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맛있는 거 사주겠다”거나 “선생님 좀 도와줄 게 있다”면서 불러내는 식이다. A양은 “싫다고 했는데도, 수업 중에 나만 불러내 교실에서 그런(성폭행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B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해당 교사만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학교 차원에서 이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눈감아준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이유로 5년 동안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강원판 '도가니 사건'으로도 불리며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도가니'는 광주광역시의 한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2000년부터 5년간 벌어진 장애 학생 성폭행이 은폐됐던 사건을 일컫는다.

도가니 사건으로 사회적 경종이 울렸지만,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1~2017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폭행·학대 사례는 해마다 20~40건에 이른다.

박숙경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기숙사라는 격리된 공간 안에서 권력 구도가 형성되고 그것이 폭력적인 욕망을 불러일으켜 약자를 억압한 또 하나의 사례가 발생했다"며 "장애인을 격리시설에서 보호한다는 의식을 깨고, 비장애인들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지켜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이 같은 범죄 예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최선욱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isotope@joongang.co.kr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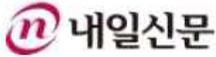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나무 / 작성번호 :1804-03-01

출처/기자	중앙일보/최선욱기자	기사날짜	2018. 07. 12
기사주소	https://news.joins.com/article/22795022		
제목	그 선생이 부르면 괴로웠다...17세 장애소녀 '악몽의 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내용분석	선정성, 자극성 지양하기	주요초점 :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지,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불쾌할 정도로 지나친 상상을 유발하는 기사 ‘삽화’ 실제 학교 전경이 나오는 사진. 아무리 이슈화된 사건이고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전경까지 기사에 게재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 그리고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면서 학생과 교사느낌, 사건 당시를 연상하게 하는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삽화 사용. 그리고 중간에 나체의 여성이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옆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노란색 꽃이 꺾여 있는 그림. 그 선생님 부르면 괴로웠다...17세 장애소녀 ‘악몽의 5년’ 매우 많은 기사들 중 가장 문제적으로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 17세, 5년 등 구체적인 나이, 악몽이라는 극단적 내용으로 표현한 기간, 피해자를 소녀화 하는 통념, 피해자의 언어 등 매우 자극적으로 구성	
	장애에 대한 편견 지양하기	주요초점 :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하게 대하는 태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비하, 편견, 혐오 강화표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장애를 질병으로 묘사)담은 기사,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사용(절름발이, 꼽추, 앓은뱅이 등) ‘장애인을 격리시설에서~범죄 예방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와 같은 논리는 처음 접하는 문제적 관점. 탈시설의 의미가 완전 변질될 수 있음.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지켜준다’라는 표현은 사생활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통제와 금기의 방식으로 보호하겠다는 통념에 기반한 말로 재해석됨. 이러한 보호주의 관점에 기반한 지역사회는 공간만 다를 뿐이지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음. 주체적인 삶은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	

<p>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p>	<p>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시혜적 미담수준으로 격하시키기, 권익옹호제도, 법률정보 등 질높은 정보제공도 병행하는 노력(사회구조적 문제의식)</p>
	<p>피해자 진술 내용과 보호자의 인터뷰를 자극적으로 구성. 당사자의 진술이 사건 이해에 필요할 수 있지만 너무 취약한 피해자로서의 위치만 부각된 느낌. 피해자 진술을 다룰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친 피해자화보다는 변화를 위해 당사자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부각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5년이라는 기간동안 학교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구조적인 이유 및 이후 대책에 대해 주요하게 언급하는 것 필요</p>

2018년 우수기사



['미투' 운동 계기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③] '미투'도 외치지 못하는 인권약자들 '수두룩'

이주여성노동자 12% 성폭력 피해 호소 ... "한때 관심으로 끝나면 안돼, 시민의식 함께 변화해야"

2018-03-05 10:18:48 게재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사과, 각종 협·단체들의 후속 조치와 미투 지지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적 관심이 사라진 이후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내일신문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변화의 필요성을 짚는다.

< 편집자주 >

미투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고용주와 노동자 등 권력형 관계에 놓여있고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미투 운동은 먼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다. 어디 이들 뿐이라, 계약직 특수고용직 등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수많은 약자들은 오늘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홀로 울음을 삭히고 있다.



'미투, 끝까지 함께 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지원본부'를 발족해 피해자 지원과 각종 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권이원 기자

◆추방당할까봐, 한국말 못해 등 적극적 대응 불가능 = 최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의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2.4%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 상당수가 한국인 고용주였다. 피해자 중 64.0%가 한국인 고용주 또는 관리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2016년 6~10월 서울 대구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식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으로 이뤄졌다. 출신국가는 캄보디아 75.2%(152명), 베트남 24.8%(50명)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89.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 능력(읽기·말하기)이 보통이거나 못하는 편이었다.

더 큰 문제는 성폭력 피해자들 상당수가 제대로 된 대응법을 모르는 현실이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68.4%, 복수응답)였다. 또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52.6%,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42.1%,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15.8%, '가해자가 두려워서' 10.5%, '한국에서 추방당할까봐' 5.3% 등의 이유를 꼽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류 문제 등으로 성범죄 노출 위험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당장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인권 약자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일수록 취약, 성별 대결 양상으로 가면 안돼 = 이 같은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직장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성폭력 문제 본질이 성차별이나 남녀관계보다 '권력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력관계에서 취약할수록 성폭력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았고 반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여가부의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직원'(6.9%)과 '비정규직'(8.4%)이 '관리직'(4.6%)과 '정규직'(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 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직원 및 성희롱 업무담당자 92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8~11월 설문조사한 결과다. 정부 차원의 성희롱 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이들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 78.4%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대처했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개인적 처리'(6.8%)와 '상급자/동료와의 면담'(4.7%) 등의 개인적 대응이 대부분이었고 성희롱 피해에 '사내기구'와 '외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0.9%에 불과했다.

참고 넘어간 이유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8.2%,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많았다.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되어서'(16.2%)와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15.4%) 등의 이유도 있었다.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성희롱에 취약한 이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 '일반직원'(3.93점)에 비해 '관리직'(4.06점)이, 그리고 민간사업체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성희롱 방지효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희롱 사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여성' '20~30대' '일반 직원'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이 성희롱 교육의 효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유명인들은 가해 사실만 알려져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등 당장 법적인 처벌 없이도 일정 부분 제약을 둘 수 있지만 이주여

성노동자 등 인권 약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성폭력 문제가 단순히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약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잘못된 권력 관계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특정 '성'이 아닌 누구나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법과 제도만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민의식 변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 계기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연재 보기**]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김다정 / 작성번호 :1801-02-03

출처/기자	내일신문 / 김아영 기자	기사날짜	2018-03-15
기사주소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68203		
제목	['미투' 운동 계기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③] '미투'도 외치지 못하는 인권약자들 '수두룩'		
내용분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확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잘못된 통념 벗어내기	주요초점 : 피해자 유발론, 정형화된 피해자 이미지 강화, 개인 일탈, 성욕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표현, 가해자 동정론(장애, 가정생활, 성장과정 등) -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미투를 ‘나도 당했다’로 적고 있다. 이를 올바르게 ‘나도 고발한다’로 적었다는 점에서 미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신중하게 보도하기	주요초점 : 피해자 목소리 배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지, 기사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했는지 - 미투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되는 이 기사 전반적으로 모두 괜찮은 내용이였다. 특히 미투 열풍 속에서도 미투를 외치지 못하는 인권약자들에 대해서도 의미있게 다루었다는 점이 좋았다. 다만, 이주여성과 비정규직 외에도 장애여성의 약자성도 다루어주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	
	성폭력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도 관심가지기	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태도, 보호제도, 법률정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등 피해회복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보도하는지(사회구조적 문제의식) - 인권약자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을 사회적 배경과 함께 설명하고, 인권약자들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말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잘 전달하려는 점이 인상 깊다.	

‘사랑의 리퀘스트’식 장애인 ‘동정과 시혜’ 프레임은 그만

[구글 뉴스랩 혁신포럼] 강혜민 비마이너 기자 “이영학과 같은 인물을 만든 것은 대중과 언론이 주는 시혜와 동정”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언론에서 ‘딸 수술비를 도와 달라’는 호소와 함께였다. 10억 원이 넘는 돈이 그의 계좌로 들어갔다. ‘사랑의 리퀘스트’와 같은 방송들이 장애인들을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리면서, 후원계좌를 공개한다. 사람들은 ‘아, 저런 사람도 사는데’ 같은 생각을 하면서 몇천 원의 돈을 후원한다. 그리고 그들의 불행을 보며 나의 불행을 위로한다.”

강혜민 비마이너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구글이 15일 서울 강남구 ‘구글캠퍼스 서울’에서 공동주최한 ‘구글 뉴스랩 혁신포럼’에서 한국 언론이 장애 관련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비판했다.

강 기자에 따르면 한국 언론이 장애인을 다루는 시선은 ‘동정과 시혜’다. 강 기자는 “이영학과 같은 인물을 만든 것은 대중과 언론이 주는 시혜와 동정”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 시선에서 빠지지 않는 프레임은 ‘진짜 장애인과 가짜 장애인’ 구분이다.

“‘사랑의 리퀘스트’같은 방송은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골몰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시각장애인에게 돈을 줬는데, 눈을 뜨고 가더라’는 ‘가짜 장애인’ 이야기와는 구별되게 하려는 전략이다. 사람들 역시 ‘저 사람은 진짜네’ 하면서 후원한다. 방송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드는 이유는 ‘남의 불행을 소비해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니즈(Needs)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장애인은 그 소재로 사용된다.”

하지만 ‘사랑의 리퀘스트’로 대표되는 후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아예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회에서, 당장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부’가 아예 효용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강 기자는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의 시선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며 “그런 프로그램에서 장애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장애와 가난을 증명해야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 기자는 “기자들은 장애인 이슈를 다루면서 그들을 동정하고 시혜하는 시선에 머무르면 안된다”며 “기자들이 정작 취재해야 할 것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장애인의 권리는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한 일들”이라고 말했다.

강 기자는 언론이 장애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장애인을 ‘소재’로 삼는 미담 보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장애인과 관련된 담론을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 기자들은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를 쓸 때, 경찰서에서 나오는 장애인들의 범죄 관련 보도 자료를 그대로 담거나 빈곤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데 그친다. 장애인과 관련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취재영역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공부를 해야한다. 장애학 관련 서적을 읽고, ‘비마이너’ 같은 전문매체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구글 뉴스랩 혁신포럼 ‘저널리즘 다양성의 모색’에서 조이어울 일다 편집장은 한국 언론의 성소수자 보도에서 ‘대결 구도’ 식의 보도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이어울 편집장은 “인권에 대한 문제를 ‘A는 찬성한다, B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다루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다”라며 “특히 성소수자 문제를 다룰 때, 인권에는 찬성과 반대가 없음에도 ‘집회 측 vs 반대 집회 측’식의 보도가 쏟아진다. 이런 보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싸움 관전을 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나무 / 작성번호 :1803-03-05

출처/기자	미디어 오늘	기사날짜	2017. 11. 16
기사주소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825		
제목	'사랑의 리퀘스트'식 장애인 '동정과 시혜' 프레임은 그만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미담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에 대한 편견 지양하기	주요초점 :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하게 대하는 태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비하, 편견, 혐오 강화표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담은 기사,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사용(절름발이, 꼬추, 앓은뱅이 등)	
		'동정과 시혜 프레임은 그만', '남의 불행을 소비해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니즈(NEEDS)' 이렇게 마음에 드는 기사제목은 처음. 이영학과 같은 인물을 만든 것은 대중의 욕구와 언론의 동정과 시혜 프레임이라고 날카롭게 비판. 뭐가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중의 인식을 소비하는 언론과 언론의 프레임을 통해 대중의 인식은 규정되는 방식은 악순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	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시혜적 미담수준으로 격하시키기, 권익옹호제도, 법률정보 등 질높은 정보제공도 병행하는 노력(사회구조적 문제의식)	
	'장애인 관련 담론 꾸준히 공부' 정말이지 기자로서 꼭 필요한 자세와 역할에 대해 언급. 장애인에 대해 한국사회는 통념, 편견으로 규정된 모습만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강요. 따라서 장애에 대한 이해공부도 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기획기사 중심으로 기사화가 많이 되면 좋겠음		

홈 > 칼럼 > 시사비평 > 광기와 삶

정신장애인의 '위험성 신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기사승인 2018.04.24. 15:04:12

- [광기와 삶 - 송승연]

최근에 개봉한 '곤지암'이라는 영화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다. 이런 영화가 현재에도 상영되는 이유는 아마도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셸 푸코는 저서 "광기의 역사"에서 18세기 후반 광인들을 수용시설로 격리시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용을 통해 배제시키려고 했던 것이 환상적 양상을 띠고 다시 대중에게 돌아왔다고 언급한다. 21세기 현재 한국에서 '곤지암'은 18세기 정신병원 '비세트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이미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이미지는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2017년 3월 경찰청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는 체크리스트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6월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써 죽은 사건이 나기도 하였다. 또한 2017년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자가 1000명에 달하였는데 1/4에 해당하는 236명이 정신질환자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풀뿌리 정신건강옹호단체 NAMI의 수석정책자문 론 혼버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는 의료응급상황의 경우 911에 전화를 걸어 특별히 훈련된 의료전문가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는 경찰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을 향한 '폭력적이다', '잠재적으로 위험하다'와 같은 고정관념, 막연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해도 정신병 있다고 판별되면 엄청난 감형이 뒤따르죠." 최근 중증 정신장애인 수용시설 문제점에 대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사건사고 기사는 우후죽순 쏟아지며, '정신병이 있다고 감형해 주지 말라'는 댓글들이 달리는 것은 일상다반사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제도인 '정신착란성 방위'(insanity defense, 정신질환 때문에 범죄라고 판결할 수 없다는 법적 개념)다. 국내에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존재한다.



PORTRAIT OF DANIEL M'NAUGHTEN.

THE MARKETS.

대니얼 맥노튼 (이미지 출처 = en.wikipedia.org)

1843년 스코틀랜드 급진주의자 대니얼 맥노튼은 영국 총리인 로버트 필을 살해하려다가 착각하여 그의 비서를 총격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맥노튼은 '정신이상의 이유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로 판명되었으며, 정신병원에 구금되었다. 이후 이는 맥노튼 규칙(M'Naghten Rules)으로 성문화되었다. 정신착란성 방위의 근원이 되는 맥노튼 규칙은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은 완전한 행위주체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서 모순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의 억압과 차별, 학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시되어 왔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회복'(recovery)이다. 회복운동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촉진하고 강제적인 정신과 치료 반대를 추구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자기결정권'과 정신착란성 방위 개념으로 인한 '침해당한 행위주체'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모순이다. 이와 관련하여 Pouncey와 Luke ns(2010)는 정신착란성 방위는 회복을 위한 중요한 도전과제를 야기한다고 언급한다. 사법정신의학은 일부 범죄자가 처벌보

다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학대를 최소화하려는 회복 운동의 요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잘못(social wrongs)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로 '침해당한 행위주체'(compromised agency)를 사용할 때, 정신장애인은 "자기 자신을 이끌고,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회복 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행위주체자라는 회복 운동의 주장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 근본적으로 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신장애인이 완전한 행위주체자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다.

르스 베링 브레이비크(Anders Behring Breivik)는 노르웨이 오슬로 근처의 정부 건물과 좌파정당 청소년 캠프에서 77명을 총격으로 살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온라인에 올린 1500페이지에 달하는 선언문이 발견되었고, 좌파 문학 비평가, 노벨상 수상자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기사공작블라드(Vlad the Impaler), 유나바머(Unabomber) 등의 인용문을 찾아냈다. “브레이비크의 행위는 정치적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정신이상 행위인가?” 이 질문은 그의 법적 소송의 중심이 되었다.

초기의 정신과의사 위원회는 그를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했다. 이 평가결과가 발표된 후 브레이비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은 부당하다고 외쳤다. 노르웨이 언론사에 보낸 긴 편지에서 브레이비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정신병원에 정치활동가를 보내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가학적이고 더 사악하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이다.” 한편 희생자들 중 56명과 그들의 가족들은 브레이비크가 정신이상이라고 선언되면, 자신의 범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 순간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대다수 대중은 정신이상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오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수렴했다.

결국 두 번째 평가에서 브레이비크는 정상(sane)으로 선언되었다. 정신이상으로 치부하여 그의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려 했던 유혹은 사라졌다. 이처럼 ‘정신착란성 방위’ 개념이 존재하는 순간, 범죄자와 정신장애인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만약 어떠한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가진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뇨병이 있었을 때 그는 행동할 수 있으며,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는 질병 유무를 떠나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책임은 사라지며, 치료와 공공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도 명분을 주고 당연하다고 여기게 만든다. 정신장애가 없는 많은 사람 중에도 타인이나 자신에게 위험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그러한 치료와 강제입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정신장애인의 ‘위험성 신화’는 무엇이 목적인가? 모든 범죄를 예상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가?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면 모든 자유와 책임은 보장되는가?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는 잠재적 범죄자를 찾아내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만약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행위를 저지를 것을 정확히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예비 범죄자로 확정되는 순간,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은 동일함을 보여 준다. 위험한 집단이라 판단되는 순간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애초 누군가를 위험하다고 예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신화일 수 있다. 수많은 학자들은 누가 폭력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지만, 우연히 예측된 것보다 더 큰 정확도로 누가 폭력적일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함부로 쉽게 범죄자로 낙인 찍을 수 없다. 그것이 사회적 약자라면 더욱 그렇다.



승승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 운동 세력으로 확장되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승승연 editor@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조세은 / 작성번호 :1802-04-01

출처/기자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송승연	기사날짜	2018.04.24
기사주소	http://m.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99		
제목	정신장애인의 ‘위험성 신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내용분석	장애에 대한 편견 지양하기	<p>주요초점 :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하게 대하는 태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비하, 편견, 혐오 강화표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장애를 질병으로 묘사)담은 기사,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사용(절름발이, 꼬추, 앓은뱅이 등)</p> <p>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부분을 영화나 유명한 발언 사례들을 인용하여 안내함.</p>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	<p>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시혜적 미담수준으로 격하시키기, 권익옹호제도, 법률정보 등 질높은 정보제공도 병행하는 노력(사회구조적 문제의식)</p> <p>정신장애인이 완전한 주체자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p> <p>정신장애인의 위험성 신화는 무엇이 목적인가, 모든 범죄를 예상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가,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면 모든 자유와 책임은 보장되는가,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함</p>	

국민일보☺

장애인시설 떠나는 장애인들... "아침은 시리얼 먹고 싶었어요"

기사입력

시설 장애인들의 고통 <하> 밖으로 나온 장애인들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유호경씨(왼쪽 사진)와 이창선씨. 지난 5일 유씨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고, 이씨는 자신의 방 침상에 누워 아침드라마를 보고 있다. 심우삼 기자

34년 시설생활 끝낸 유호경씨

그동안 못했던 것 맘껏 하고있어... 야학서 공부하고 시 낭송하기도

26년 시설생활 끝낸 이창선씨

같은 시설서 나온 누나와 연애... 취향대로 먹고 늦잠도 실컷 즐겨

"아침에 시리얼을 먹고 싶었어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자립생활주택에서 지난 5일 만난 유호경(51)씨는 "왜 시설을 나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가 광주 인화학교 사태를 다룬 영화 '도가니' 속 장애인들처럼 심각한 학대를 겪은 것은 아니었다. 장애인시설의 분위기도 이전과 비교하면 좋아졌다고 했다. 그래도 아쉬운 것이 있었다. 집에서 지내는 비장애인들처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단체생활이 답답했다. 유씨와 함께 사는 이창선(34)씨는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밥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게 싫었다"고 했다.

장애인시설에서 지내다 나온 두 사람은 자립생활에 적응 중이다. 지체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유씨는 아파트단지 앞에 도착한 기사를 환한 미소로 맞았다. 분홍색 열쇠고리가 달린 열쇠 꾸러미를 흔들며 11층에 위치한 집으로 안내했다. 현관문을 열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이씨가 안방에서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며 인사했다.

유씨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34년을 지냈다. 이씨는 경기도 광주의 장애인시설에서 26년을 보냈다. 여러 장애인이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 생활이 이들에게는 단조롭고 답답했다. 유씨와 이씨는 “밥 먹고, 자고 텔레비전(TV) 보는 게 시설 생활의 전부였다”라고 말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을 때 만나는 것도,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 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먹기 싫은 아침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게 곤욕이었다. 이씨는 “아침에는 가볍게 시리얼을 먹고 싶는데 무조건 일어나 시설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했다”고 말했다. 늦잠도 잘 수 없었다. 시설에서는 항상 오전 6시 기상을 주문했다.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생활을 해야 했다. 이씨가 있던 시설은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말에는 외출도 하고 근방에서 산책도 할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나은 점이였다.

유씨와 이씨는 시설에서 나온 지 각각 1년과 5개월이 되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수십년간 시설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

이씨는 이제 취향대로 아침식사를 한다. 예제는 삶은 계란을 먹었고 오늘은 좋아하는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했다. 늦잠도 실컷 잔다. 오전 7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한두 시간 낮잠을 자곤 한다. 같은 시설에서 나온 누나와 연애도 한다. 지금의 여자친구가 이씨에게 “자립했으니깐 놀러와”라고 말한 게 계기였다.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는 대답을 듣자 과감하게 프러포즈를 했다. 이씨에게는 첫 연애다. 대부분 장애인시설에서는 남녀의 생활공간이 구분되는 데다 성인이라도 연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유씨는 일주일에 네 번 성북구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에서 공부를 한다. 야학에서 국어와 수학을 배우고 시를 낭송한다. 컴퓨터에서 검색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보는 게 취미가 됐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유씨는 이씨를 부러워하며 “새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이씨는 외출준비를 서둘렀다. 목요일은 야학에 가는 날이다. 야학 동기인 유씨는 걸석이다. 대신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집회에 나갈 계획이다. 유씨가 있던 시설에선 외출이나 산책은커녕 같은 시설 거주자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다. 폭력 행위도 있었다. 유씨는 “아무 이유도 없이 맞는 장애인들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온몸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길질하는 장면을 설명했다. 유씨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유씨와 이씨 모두 시설에서 먼저 나가 자립한 이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제는 자신들이 시설에 남아 있는 동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씨는 “삼총사처럼 지냈던 친구 둘이 아직 시설에 있다”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돕는 활동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허경구 심우삼 기자 nine@kmib.co.kr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조세은 / 작성번호 :1802-04-03

출처/기자	국민일보, 허경구 심우삼 기자	기사날짜	2018.04.21
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090692&sid1=001&lfrom=kakao		
제목	장애인시설 떠나는 장애인들...“아침은 시리얼 먹고 싶었어요”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장애에 대한 편견 지양하기	주요초점 :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하게 대하는 태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비하, 편견, 혐오 강화표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장애를 질병으로 묘사)담은 기사,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사용(절름발이, 꼽추, 앓은뱅이 등)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	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시혜적 미담수준으로 격하시키기, 권익옹호제도, 법률정보 등 질높은 정보제공도 병행하는 노력(사회구조적 문제의식)	
	유씨, 이씨의 인터뷰를 통해 시설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맞는 학대에 대한 경험을 알 수 있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집회 참여 등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좋았음.		

“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 그들이 갇혀 있으니까”

일력 2018.04.20 04:40

믿고 보는 동영상



유튜버 '굴러라 구르님'로 활동하는 김지우씨가 장애인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난 모습을 담아 게시한 동영상. 유튜브 화면 캡처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 혹은 생활하면서 장애인과 마주친 적 있어? 한국 드라마나 영화, 예능에서 장애인이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어? 아마 손에 꼽힐 정도 일 거야. (집안이나 시설에 갇혀 있어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많은 장애인이 여러분 곁에 있어.”

지난해 2월 유튜브에 올린 첫 동영상에서 '굴러라 구르님'은 "장애인들이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과 함께 숨 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채널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채널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걷거나 뛰기 힘든 김지우(18)씨가 운영하며, 휠체어가 구르기 때문에 '굴러라 구르님'로 이름을 지었다. 김씨의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은 2만8,000명. 영상이 올라오면 조회 수는 10만명을 넘기는 인기 채널이 됐다.

그는 친구를 등장시켜 장애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가르쳐 준다. 장애에 대해 "어쩌다 다친 거야? 수술하면 나올 수 있어?"라고 무지를 드러내며 너무 쉽게 접근하거나, 사물함에 물건을 넣을 때 괜찮다고 해도 "왜 네가 하고 있어, 날 부르지! 내가 넣어 줄게"라고 원치 않은 도움을 준다던가, 장애인인 자신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끼리 "완전 착하다"고 칭찬하고, "너 왜 특수학교 안가고 일반학교 왔어?"하고 분리를 당연시하거나, 작은 게임에서 자신을 너무 봐준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즉 전혀 다른 존재로 보며 동정의 대상으로 대하는 게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김씨는 또 "지금까지 시외로 나갈 수 있는 버스 중 단 한 대도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없다는 것이 놀랍다"고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장혜영(32)씨는 유튜브에 '생각많은들 째언니'라는 이름으로 발달장애인 동생 혜정(31)씨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인 혜정씨는 13세부터 시설에서 지냈다. 엄격한 격리와 통제 속에 있던 동생을 잊지 못해 혜영씨는 18년만인 지난해 동생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살고 있다. 동영상을 통해 혜정씨는 갈수록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의견을 말하고 독립심을 발휘하며 시설 밖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혜영씨는 '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한 강의에서 "스웨덴은 시설폐쇄법을 제정해 1999년 12월 31일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했다"며 "1970년대에는 스웨덴도 정부는 시설을 장려했고 가족들도 시설폐쇄를 반대하는 등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사이자 공무원 출신인 칼 그루네발트 박사가 시설의 인권침해와 학대를 알리고, 수십 년에 걸쳐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들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장애인이 많으면 땅값이 낮아진다는 등 편견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 지에 대해 연구하고 알려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

우리 실정을 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시설 거주 장애인은 3만980명(1,505개소)에 이른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지만, 수치상 크게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나무 / 작성번호 :1804-03-01

출처/기자	한국일보/이진희	기사날짜	2018. 4. 20
기사주소	http://www.hankookilbo.com/v/3d1fe8a05e7448f384c12380b6fe8d44		
제목	“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 그들이 간혀 있으니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내용분석	장애인 인격권 존중하기	<p>주요초점 :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대상화, 도구화하는 보도, 장애인이 특별하고 다르다는 식의 보도, 장애인은 이질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보도. 장애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보도.</p> <p>‘유튜브 인기채널’ 장애인 관련 기사들은 폭력피해나 미담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사자들의 다양한 다른 삶을 보여주는 기사내용이 매우 인상깊었음. 주체적으로 채널을 만들어 장애인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기사로 알려낸 것은 기존 장애인의 날 기사와는 차별화됨. 이러한 기사나 내용이 많이 공론화되어 비장애인의 편견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됨</p>	
	장애에 대한 편견 지양하기	<p>주요초점 :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하게 대하는 태도,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한 비하, 편견, 혐오 강화표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장애를 질병으로 묘사)담은 기사,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사용(절름발이, 꼬추, 앓은뱅이 등)</p> <p>‘장애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행위나 말들이 실제 장애인을 어떻게 다른 존재로 대하는지 당사자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사내용. 그러나 좀 아쉬웠던 것은 아래 시외버스 부분은 차별의 부당함이라고 표현한 반면, 관계에서는 ‘상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감정적 호소만으로 협소화된 느낌이 들었음. 제도나 관계 모두 차별의 맥락안에 놓여있음을 표현하는 것 중요</p>	
	구조적인 문제해결 에 관심가지	<p>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시혜적 미담수준으로 격하시키기, 권익옹호제도, 법률정보 등 질높은 정보제공도 병행하는 노력(사회구조적 문제의식)</p>	

	기	<p>‘시설폐쇄법’, ‘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 그들이 간혀 있으니까’ 기사에 ‘시설폐쇄’라는 내용이 언급된 것 자체가 너무 반가웠음. 그리고 제목도 제대로 뽑은 것 같음. 비장애인 중심의 일상에서 장애인이 없는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어렵지 않게 바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함. 실제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나온 해정씨 이야기. 스웨덴 정부의 시설폐쇄 과정 등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사작성을 하고자 한 의지가 보였음. 아쉬웠던 것은 한국사회 거주시설 실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정도, 현재 시작단계이지만 장애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시설폐쇄법에 대해 언급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기자에게 기획기사를 제안하고 싶음</p>
--	---	---

연애·결혼·임신...남들은 축복, 장애 여성엔 고난

가족·친구 조차 인격침해 부지기수...편견 이겨 낸 그녀들 '조명'

배수람기자(bae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5-23 00:26:48



▲ 시각장애 1급인 김연서 씨는 장애여성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토로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자녀와의 교감조차 어려웠다고 호소한 김 씨는 정부의 교육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배수람·나수완·배태용 기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됐던 이들의 인권 신장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일부 개선의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도 여럿 존재한다. 장애인 여성들이 대표적이다. 여전히 장애인 여성들의 인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지닌 장애인 여성들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편이다. 심지어 여성으로서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결혼·임신에서조차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가시 돌린 시선을 감내하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혼 아픔 딛고 홀로 자녀양육...존재가치 깨닫고 장애인 여성 인식 개선 앞장

경기도 인천시 계양구에서 국가공인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연서(54·여) 씨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김 씨는 어릴 때 시신경이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면서 시력을 잃게 됐다. 나머지 한쪽마저 시력이 점점 나빠져 현재는 대략적인 형태만 가능할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시력이 조금 나쁘다고 생각했지 시각장애를 지녔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어요. 거리 감각이 없어서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많이 당했죠. 가족들조차 저를 가엾게 여기고 부끄러워했었어요. 마흔이 다 돼서야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전까지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원망도 많이 하고 자살충동도 느꼈죠”

김연서 씨는 25살에 비장애인 남편을 만났다. 달콤한 부부생활도 잠시, 3살배기 아들과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김 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 그가 시각장애인걸 몰랐던 남편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주변에서 던지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어 했다고 김 씨는 회상했다.

“아무래도 시야가 흐리니까 행동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레스토랑을 가서 외식을 해도 걸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눈앞에 놓인 음식도 잘 못 먹고 밤에는 야맹증이 심해서 외부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죠.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유전이 되진 않을까 걱정했죠. 저는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모든 걸 버려도 아이들만은 꼭 내 손으로 잘 키우자는 마음을 가졌어요”

“장애여성으로 혼자 두 아이를 키워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동화책 하나 술술 읽어줄 수 없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죠. 늘 자식들에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서요. 아들·딸 모두 장성했지만 아직도 함께 다닐 때는 맹인용 지팡이를 잡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요.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혹시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죠”

김 씨는 어렵사리 직장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시야가 흐린 탓에 번번이 실패의 쓴 맛 보면서 점차 자존감도 낮아졌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설 자리가 없다고 느낀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두 자녀를 친정에 맡긴 채 도피하듯 일본으로 떠났다. 김 씨는 우리나라와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어려움에 공감해주는 일본인들 속에서 조금씩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깐 항상 경직돼 있었어요. 합병증 때문에 온몸이 굳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죠. 사람들이 두려워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늘 두통으로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죠. 그때 처음 통증치료 안마를 접했어요. 그러면서 안마를 배워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여러가지 자격증에도 도전하고 성취해나가는 기쁨을 맛보면서 주어진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발마사지를 비롯해 스포츠마사지 등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한 김 씨는 이후 10여년째 국가공인 안마원을 운영 중이다. 시각장애인이 운영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각종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찾는다. 온몸을 이용해 통증치료 안마를 하는 탓에 김 씨의 고통이 배가되기도 하지만 몸이 거뜬해졌다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하다고 한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갑갑한 건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적다고 해도 찾아보면 있어요.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도 기쁘고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달라진 모습을 보며 너무 좋아하죠. 다른 장애인 여성들도 저처럼 아픔을 털어내고 조금 더 빨리 어둠을 뚫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과 눈을 맞추고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들에게서조차 이런 인격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선천적인 장애는 물론이고 중도장애의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아울러 어릴 때부터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애인식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애·결혼 순탄치 않은 장애여성…‘각자의 삶’ 배려해주는 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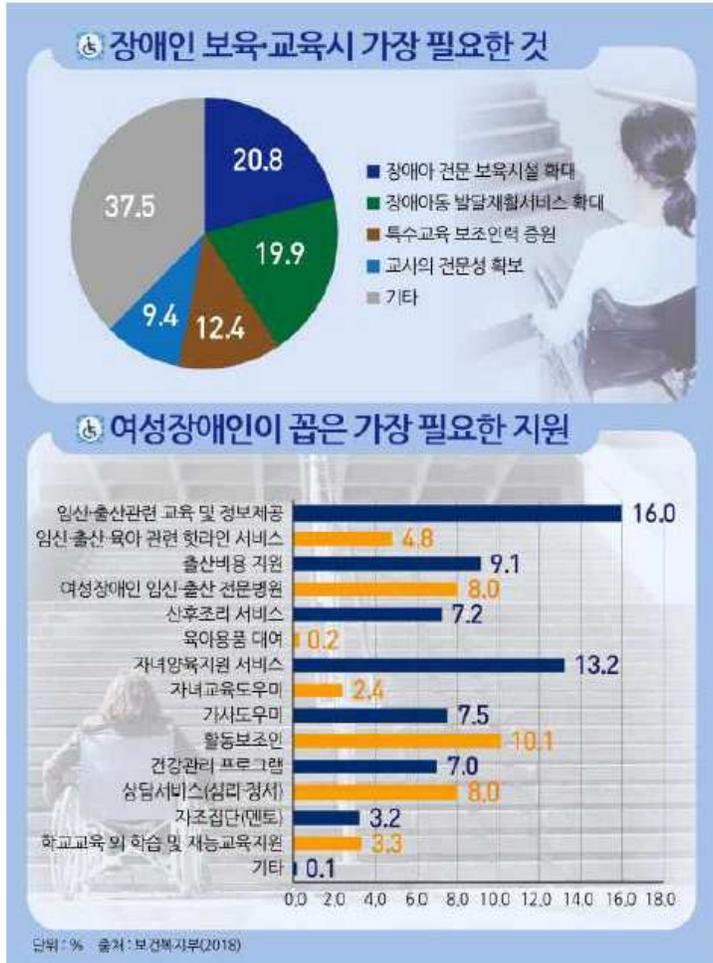
지난 2004년 아파트 7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경추손상 사지마비, 이른바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최지현(40·여) 씨는 동양화 채색화 화가로 활동 중이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보낸 이후 최 씨는 가까스로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최 씨는 재활병원에서 치료사 남편을 만났다. 하지만 연애부터 결혼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장애인들이 재활훈련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재활병원에서조차 두 사람의 만남을 반기지 않았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감정까지 침해당해선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다니던 재활병원에서는 치료사와 환자의 만남을 축복은커녕 금기시했어요. 각자가 취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건데 그걸 존중해 주지 못하는 게 불편했죠. 재활병원에서 이런 경험을 겪었다는 게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이겨내고 곳곳하게 사랑을 지켜왔다. 그 과정에서 최 씨가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는 불합리한 말들이 많이 오갔다. 결혼에 골인한 이후에도 주변의 동정어린 시선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남편과 함께 다니면 주변에서 ‘남편이 천사야’, ‘아내 돌보느라 힘들지’, ‘신랑이 착하네’ 등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하고 장소적인 제약이 따를 뿐이지 다른 부부와 같은데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평범하게 바라보지 않았죠. 그들의 말 속엔 늘 가시가 있었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툭툭 던질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깊은 상처를 받았죠”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성] ©스카이데일리

“결혼 전에 남편이 사회복지사를 통해 장애여성과의 결혼에 대해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회복지사가 현실적으로 힘든 결혼을 왜 하냐고 반문했다고 해요. 어차피 언젠가 헤어지지 않겠냐는 뉘앙스로 말이죠.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하는 사회복지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비장애인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죠”

최 씨와 남편은 결혼하면서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약속했다.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서로에게 충실하자는 결심에서였다. 두 사람의 결정에 친정은 물론 시댁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장애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본인이 양육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어떤 가정은 친정에서 아이를 다 돌봐주고 엄마는 주말에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 최지현 씨는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이후 재활병원에서 남편을 만났다. 비장애인 남편과의 결혼을 두고 주변에서 건지는 시선에 상처를 받았다는 최 씨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최지현 씨 제공]

“그런데 주변에서 되레 걱정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생각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냐’, ‘남편 생각하면 아이를 가져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애가 있어야 엄마를 도와주지 않겠냐’ 등의 이야기들을 쉽게 하더라고요. 아이를 강요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장애여성에게 결혼이나 임신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에요. 여전히 그런 인식이 짙다는 게 답답하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인이지만 부모에게 의지해야 하는 게 항상 미안한데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허탈하기도 해요. 각자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식수준이 개선돼야 해요”

최지현 씨는 장애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장애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체험 등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간극이 좁혀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얘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장애인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부 비장애인들 중에는 여전히 우월감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투명인간처럼 그들을 무시하게 되죠.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넓히는 위험한 태도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이연수 / 작성번호 : 1810-09-13

출처/기자	스카이데일리/배수람 기자	기사날짜	2018.5.23
기사주소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3906		
제목	연애·결혼·임신...남들은 축복, 장애여성엔 고난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확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	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시혜적 미담수준으로 격하시키기, 권익옹호제도, 법률정보 등 질높은 정보제공도 병행하는 노력(사회구조적 문제의식)	
		‘연애·결혼 순탄치 않은 장애여성...‘각자의 삶’ 배려해주는 시선 필요‘ 장애여성이 연애,결혼,임신 등에서 어떤 어려움과 편견을 겪는지 동정적인 관점 없이 잘 기술되었으며,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도 잘 들어가있음.	

“패럴림픽 보도, ‘장애극복’만 부각”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지적

올해 초 1988년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패럴림픽이 열려 어느 때보다 장애인 선수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그런데 이들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에서의 표현은 어땠을까. 패럴림픽 기간 동안 10대 일간지에 보도된 장애인 관련 기사 전체를 모니터링했던 김민정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5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다.

첫째는 장애인을 ‘인간승리의 드라마’ 혹은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하며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다. 오른팔이 없는 선천성 장애인 선수에게 ‘팔 대신 날개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등 장애인 선수의 활동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그럴지 못한 대다수의 장애인에게 성공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장애인 선수들의 활동을 전하면서 ‘이들 앞에서 고난과 좌절을 말하기 부끄럽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는 장애인의 노력을 부각하기보다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희망이나 위안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소아마비를 딛고’처럼 ‘장애 극복’을 강조하는 경우다. 장애를 극복되어야 하는 불행한 상태나 비정상적인 상태 정도로 취급하기보다는, 장애를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요하며 ‘극복(overcoming)’해야 할 것이 아닌 그냥 ‘있는(with)’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신체 손상을 상세하게 부각하거나 장애와 질병을 동일시하는 경우다. ‘뇌전증(간질) 장애를 앓고 있는’ ‘뇌성마비를 앓는’처럼 장애인과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장애를 ‘앓는다’고 표현하는 것도 피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신체 손상의 이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정작 중요한 선수 개인의 업적이나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았다.

넷째는 장애를 무기력함, 불행, 절망을 기반으로 묘사하는 점이다. ‘죽는 게 낫다며 실의에 빠져’ 등의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섯째는 장애인 가족을 죄인 또는 영웅으로 묘사하는 경우다. 이는 장애인을 가족의 도움이나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시킬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이들의 업적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장애인들의 눈물이나 고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패럴림픽 선수들을 인간승리의 드라마나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을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상으로 보게 한다. 장애인들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역시 “모든 스포츠는 자기 도전을 위해 하는 것이다. 유독 장애인만큼 타인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하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과장된 기사가 많다. 이는 선의의 편견”이라고 덧붙였다. ‘장애’ 그 자체가 아닌 ‘장애가 있는 인간’으로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박세원 / 작성번호 :1803-13-10

출처/기자	동아일보/ 임보미 기자	기사날짜	2018.04.20
기사주소	http://news.donga.com/3/all/20180420/89699886/1		
제목	“페럴림픽 보도, ‘장애극복’만 부각”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장애인 인격권 존중하기	주요초점 :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대상화, 도구화하는 보도, 장애인이 특별하고 다르다는 식의 보도, 장애인은 이질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보도, 장애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보도 좋은 기사였다. 페럴림픽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사용한 표현들에 대한 지적을 담은 기사인데, 장애인에 대한 타자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 등 지금까지 모니터링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점들을 잘 담아낸 좋은 기사였다.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장애인은 부모가 될 수 없는가?—①

미국 장애인위원회 발간 보고서 속 내용 살펴보기
“요람 흔들기: 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의 권리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05 15:59:09

장애인이 맞닥뜨리는 사회적 장벽 가운데 하나는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의 문제라는 관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할지라도, 장애인이 부모가 되어 출산 및 양육의 과정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은 여전히 있다.

미국 장애위원회가 지난 2012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국 내 장애인 부모 양육권 유지 어려워



▲장애인이 부모가 되어 출산 및 양육의 과정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장애를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남아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 adoptUSkids

미국 장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대통령 및 의회를 대상으로 미국 내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건의하는 독립연방기관으로, 지난 2012년 9월 "요람 흔들기 : 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의 권리보장(Rocking the Cradle: Ensuring the Rights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Childre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 장애인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지난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미국 내 장애인 부모는 그들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PRD)에서는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가운데 ‘b. 장애인이 자신의 자녀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 연령에 적합한 정보와 출산 및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에 접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항 등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마땅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 부모에 관한 통계 자료 부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장애인 부모와 그들의 가정이 있지만, 이들에 관한 자료는 매우 드물다. 장애인 부모의 수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 인구총조사 데이터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수, 부모의 수 각각에 대한 추정치가 있지만, 장애인 부모의 수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2010년 발표된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2010 American Community Survey)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최소한 410만 명가량의 장애인 부모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 그들 개개인이 어떠한 욕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애인 부모에 관한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은 정확한 욕구 규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들 장애인 부모 가정의 욕구, 목표, 환경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더욱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장애인 부모의 양육 문제 ‘장애’ 단일 원인으로 봐선 안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부모에 대한 편견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은 장애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연구사례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장애는 양육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심지어는 자녀의 부적응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내용과 ‘그런 연구결과야말로 일반 대중들 사이의 부정적인 믿음을 고착화한다’는 내용과 같이 상반된 연구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보고서는 부모의 장애와 자녀의 부적응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나 인과율이 연구마다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전후사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전후사정’이란 가난, 부모의 학대·약물 경험, 충분한 지지의 부족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인이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장애’만을 단일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증명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지만, 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 자녀 대다수가 일반적인 발달의 모습을 보이는 데다 비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보다 삶의 관점과 기술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우도 있었다.

보고서는 또한 장애인 부모 및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스템이 부족한 현실, 많은 장애인 부모가 아동복지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부모 될 권리를 잃는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법률에서 ‘장애’를 친권상실(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TPR)의 근거로 두고 있다. 즉, 장애가 부모 될 권리를 잃는 이유가 되고 있다. 장애인 부모에게 ‘무능한 부모(unfit parent)’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양육권이나 방문권 소송 시에도 장애인 부모는 가정법 체계상 차별적인 관행을 자주 겪는다.



▲미국 내 많은 장애인 부모는 아동복지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자녀와 분리되고 부모 될 권리를 잃게 된다.
© The Telegraph

이렇듯 미국을 비롯한 우리 사회 내 장애인 부모에 대한 편견이 팽배해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다음 기고에서는 지적장애로 7살의 지능을 가진 아빠 샘(Sam)이 딸 루시(Lucy)에 대한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하며 양육권을 박탈당하면서도, 딸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야기의 영화 <아이 엠 샘(I am Sam)>을 통해 미디어에서 장애인의 부모 될 권리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출처: 미국 장애위원회 보고서 원문

(https://nc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NCD_Parenting_508_0.pdf)

※ 이 글은 인천전략이행 기금 운영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윤주영 대리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인천전략'은 아 태지역에 거주하는 6억 5천만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목표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천전략사무국으로서 국제기구협력 사업, 개도국 장애인 지원 사업, 연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기고/윤주영 (deerb@koddi.or.kr)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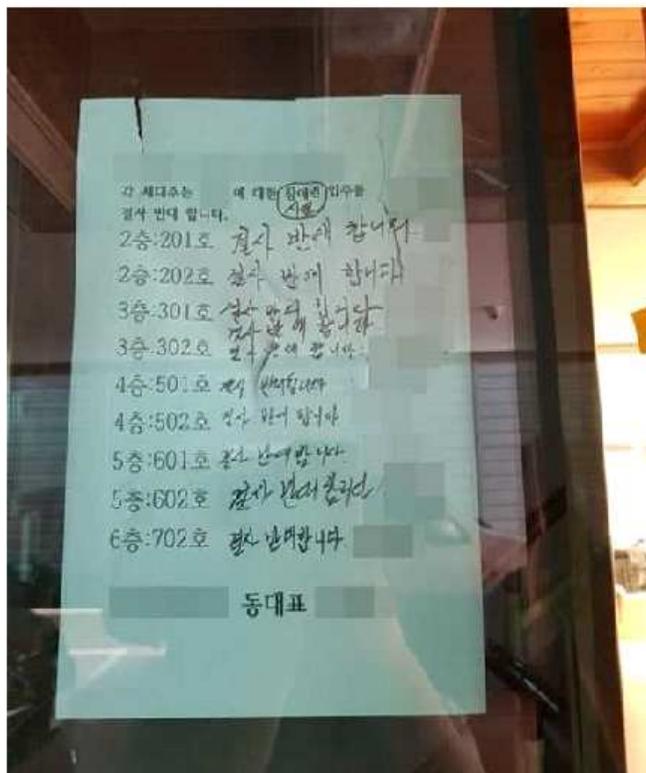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나무 / 작성번호 :1804-03-05

출처/기자	에이블뉴스/윤주영(기고)	기사날짜	2018. 06.05
기사주소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80605132003907585		
제목	장애인은 부모가 될 수 없는가?-①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신중하게 보도하기	주요초점 : 피해자 목소리 배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 처럼 보도하지 않는지, 기사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했는지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 그들 개개인이 어떠한 욕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장애인 부모 가정의 욕구, 목표, 환경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더욱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수집되어야’ 보고자료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론화/의미화 할지를 잘 보여준 기사. 그리고 단순 전달만이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함. 기사에서 통계나 보고서 자료를 객관적이라는 명분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선정성, 심각성만을 부각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사화되면 정말 좋겠음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	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시혜적 미담수준으로 격하시키기, 권익옹호제도, 법률정보 등 질높은 정보제공도 병행하는 노력(사회구조적 문제의식)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의 문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부모의 양육 문제 ‘장애’ 단일 원인으로 봐선 안돼’ 미국 사례이기는 하지만 한국사회에 대비해 봤을 때 충분히 유의미한 기사. 장애를 둔 부모 밑에 자녀들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 편견이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가난, 부모의 학대 경험 등 장애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주요하게 봐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 부모밑에서도 충분히 잘 성장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한 내용을 중요하게 부각시킨 점이 인상깊었음. 그리고 아동복지 시스템 등 사회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않음이 부모될 권리를 어떻게 잃게 하는지 등의 내용이 잘 기대되어 있음.			

“장애인 이웃 안돼” 車로 막고 연판장 돌리고

집값 하락·안전 위협 이유 들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막아 퇴출 논의하는 입주자대표회의도
시설 장애인 57%가 “퇴소 희망” 내년부터 탈시설화 시범사업 불구 주민 님비 여전하면 공존 어려워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확대 필요”



지난 24일 대구 서구의 한 빌라 입구에 장애인 가정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자필서명이 담긴 연판장이 붙어 있다. 대구장애인인권연대 제공

“장애인 입주를 결사 반대합니다.”

지난 24일 오전, 대구 서구의 A빌라 건물 곳곳에 입주민 전체(10가구 중 9가구)의 자필 서명이 담긴 연판장이 붙었다. 이 빌라 6층의 한 가구를 대구시가 ‘장애인자립생활주택’으로 매입해 중증장애인 3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입주민들이 “이사를 오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입주민 일부는 빌라 출입구를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차량으로 가로막고 엘리베이터 작동도 멈춰 놓았다. 장애인 가구가 현관에 경사로를 놓고 집안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서준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십수년간 시설에 갇혀 살던 중증장애인 3명이 각자 자신의 방을 갖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는데 이웃들 반대로 이사가 못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깨졌다”고 한탄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장애인 시설’ 간주

시설에 갇혀 있던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 열망이 거세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여전히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 2, 3명이 함께 가정을 꾸려 생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44곳(2016년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해 주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다. 시설이나 부모의 품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종의 쉼어하우스다. 각 지자체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임대해 공간을 일정기간 빌려주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독립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소규모라도 시설이 관리하는 그룹홈 등과는 차이가 크다.

현재 중증장애인 가구 입주를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A빌라는 최근 대구시가 2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주민들은 장애인자립생활주택도 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이 몰려 사는 장애인 시설과 똑같이 생각해 “장애인 시설이 왜 일반 거주지역에 들어오느냐”며 입주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엔 집값 하락은 물론 거주환경 악화, 자녀 안전 위협 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건물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진행하고 장애인들이 입주해도 위법사항은 없다”며 “자립생활주택은 시설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빌라 입주민 대표는 “31일 예정된 부구청장 면담에서 입주민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 한 빌라 주민들이 지난 24일 장애인 가구의 입주 공사를 못하도록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놓은 모습. 대구장애인인권연대 제공

‘탈시설’ 추진해도 시민의식이 걸림돌

이처럼 장애인과의 공존에 거부감이 큰 인식은 장애인들을 결국 시설로 내몰게 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2006년(288개)에 비해 2016년(1,505개) 5배 이상 급증했고, 시설에 수용된 인원도 같은 기간 2만여명에서 3만여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조사를 보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52%가 사생활 부재 등 시설 방침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봤고, 57.5%가 퇴소를 희망했다. 장애당사자들의 탈시설 운동이 계속되자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0년부터 장애인 탈시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도 지역민의 혐오시설을 꺼리는 ‘님비(NIMBY) 현상이 여전하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송미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비장애인들이 토로하는 불편함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생기는 오해가 대부분”이라며 “장애를 이해하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김다정 / 작성번호 :1804-02-02

출처/기자	한국일보/ 김지현기자	기사날짜	2018.05.18
기사주소	http://www.hankookilbo.com/v/1f41e0911a24477aba5c49d6a7c1c3cf		
제목	“장애인 이웃 안돼” 차로 막고 연판장 돌리고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	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태도, 보호제도, 법률정보,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등 피해회복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보도하는지(사회구조적 문제의식)	
		<p>‘탈시설’ 추진해도 시민의식이 결핍됨</p> 실제 탈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짚은 점이 좋았다. 제도적인 뒷받침과 실제 탈시설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지역 내의 시민의식 개선이다. 다만, 그 시민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인용을 통한 지적 이후 기자의 구체적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	

불굴의 의지로 장애 극복, 이런 말들이 강요하는 것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읽고

18.08.06 16:52 | 최종 업데이트 18.08.06 16:52 | 이준수(loverjunsu)

나는 오늘도 그를 만난다.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한때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며 생업에 종사했지만, 현재 그의 모습은 감각도 운동기능도 일부분만 남아있는 편마비 지체 장애인. 나는 그를 치료하는 작업치료사이다. 그는 내게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한다.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요? 사람 노릇은 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찾아온 장애를 받아들이는 일, 쉽지 않다. 특히 활발하게 활동할 젊은 나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젊은 사람이 안 됐다"부터 "젊었으니까 금방 털고 일어나겠지"까지.

듣는 사람의 속은 문드러져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툭툭 던진다. 계속 지체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많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후유장애가 남을지 알 수 없는 현실. 애타는 건 본인뿐이 아니다. 그를 낳아준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자녀들까지 그의 몸 상태에 촉각을 세운다.

나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주위에서 어느 병원, 어느 한의원이 좋다고 속닥거리면 귀가 얇아지는 게 당연하다. 중국에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는 얘기에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는 경우도 봤다.

대체 '장애'가 우리네 삶에 어떤 것이기에 빨리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일까.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

장애는 극복하는 것?

얼마 전 어느 방송사에서 내가 일하는 병원에 취재요청서를 보내왔다. 외래로 내원하고 있는 어떤 장애인 분을 취재하기 위함인데, 취재요청서의 한 문구가 계속 눈에 거슬렸다.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사회활동에 임하고 있는"이라는 한 줄.

장애는 여전히 대중들에게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 가족이 촉각을 세우고,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중국까지 찾아가는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의 삶에서 유리된 채로 살아간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의 사회로 진입하기엔 여전히 장벽이 높다. 고속버스는커녕 시내를 다니는 저상버스를 타는 것도 어렵다.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 출퇴근 이동권도 문제지만, 장애인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은 '노동'하기 힘들다는 회사 경영진들의 그릇된 인식이다.

장애인권, 장애인식 교육을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렇기에 누구든 장애인이 되는 걸 두려워하고, 가족 중에 누가 장애인이 생길까 무섭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숨기기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사회에서 분리된 실격당한 존재일까?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장애인권을 다룬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 출간되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초기 중도 장애인을 치료하는 작업치료사로서 나도 할 말이 많다. 그들과 함께 숨을 쉬고 애기 나누며 느낀 건 그들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단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건 '인권'에 반하는 일이다. 그런 고민 중에 접하게 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이제부터 소개할까 한다.

이 책은 '장애인'을 '실격당한 자'로 명명한 듯 보인다. 이 책의 저자는 골형성부전증으로 지체장애 1급을 받은 '장애인'이며,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영씨다.

저자는 이 책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내용들을 장애인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구현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며 접한 장애인들의 현재를 조명했다.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장애 인권에 대한 세심한 부분들을 철학적이면서도 실증적으로 풀어내 독자로 하여금 고민할 수 있게 한다.

대표적으로 책 머리말에 나오는 '잘못된 삶' 소송 사례가 그렇다. 장애아이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으로 부모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의료비 부담, 자녀를 향한 끝없는 돌봄 노동 등은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까지 지치게 한다. 특히 저자가 태어난 80년 대 초반은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편 없었기에 '잘못된 삶'으로 생각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저자는 언급한다. 하지만 부모와 저자 본인이 같이 성숙해가며 마주하는 2016년 현재의 관계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걷는 것, 휠체어를 타는 것

'잘못된 삶' 소송과 달리 갑작스레 장애를 맞이하는 중도 장애인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들은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갑작스레 중도 장애인이 된 분들은 초기 재활치료에 집중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능 회복의 한계에 다다른다. 이 시기를 임상적으로 보통 6개월로 본다. 중도 장애인은 어느 순간 회복이 멈춘 자신을 보며 이내 낙담한다.

영원히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세상을 향한 원망, 가족에 대한 미안함. 특히 장애인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 극심한 알려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기준은 바로 휠체어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느냐, 비록 바른 자세는 아니지만 직립보행을 하느냐의 차이. 하지만 휠체어를 꼭 타고 다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장애를 수용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개인에 따라 수용하는 시기는 다를지라도.

이 책에서도 장애 수용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장애가 있는 몸, 미적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여겨지는 신체를 수용했다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혐오나 피해의식에 기초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이 구축해놓은 외모의 위계질서에 종속되지 않으며, 앞으로의 삶을 외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억압, 혹은 피억압자로서의 의식과 트라우마에 짓눌리지 않은 채 살아가겠다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p.144

장애수용보다 더 중요한 것



▲ 나는 중도장애인이 된 환자에게 장애를 수용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눈다

나는 중도장애인이 된 환자에게 장애를 수용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눈다. 장애를 수용하는 일이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쉽지 않지만, 그들의 고민에 따르면 현재의 사회 분위기도 장애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특히 타인에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각자도생'의 사회 분위기는 장애인을 더 외롭게 한다.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향해 막말을 하고, 장애인이 식당이나 상점에 들어가면 눈치를 주거나 어떤 경우엔 출입을 거부하는 일도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환승에 어려움을 겪는다. 비장애인은 낯선 걸음으로 화살표를 따라 환승구역으로 용이하게 이동하지만, 장애인은 엘리베이터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한참을 헤맨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표지판들은 비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 방향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엔 뜻있는 몇몇 장애인 분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1인 미디어를 이용해 환승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 만들거나 환승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작업들이 장애인 당사자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고려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책에서는 장애수용 이전에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장애 극복', '불굴의 의지' 같은 말은 작은 사회적 성취를 이룬 장애인을 언론이 보도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식어이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희망적으로 살아라'며 현실을 넘어설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장애인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줄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세계를 돌아다니며 '동기 부여' 전문가로 활동하는 호주의 장애인 닉 부이치치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아무리 낙관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가진 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고,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면 삶에 '동기 부여'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하루 종일 오줌을 참으면서 희망을 가질 수는 없다. 오줌을 참을 때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화장실이다." p.211

있어줘서 고마워요

직업상 중도장애인을 많이 마주했다. 그들을 만나고 얘기 나누며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다. 그 중에 엄마의 중도장애 2주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자녀들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깊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녀들은 비록 엄마가 장애인이 되었지만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좀처럼 생각할 수 없던 이야기. 그 스토리를 전해들은 주위 사람들마저 한동안 마음이 훈훈했다고 한다.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기 전과 똑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개인적으로 깨닫게 됐다고 할까. 존재만으로 너무도 고마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다.

"당신의 자녀나 형제에게 장애가 있고 당신이 그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더라도, 그들은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인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이 장애를 수용하고 역경을 돌파하는 당당한 사람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부모, 형제, 이웃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좋은 이유를 가질 것이다." p310

"우리는 존엄하고, 아름다우며, 사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실격시키지 못한다." p.313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이연수 / 작성번호 :1803-09-16

출처/기자	오마이뉴스 / 이준수 기자	기사날짜	2018.8.6
기사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054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제목	불굴의 의지로 장애 극복, 이런 말들이 강요하는 것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	<p>주요초점 :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처벌위주의 대응방안에 대한 과장된 보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을 시혜적 미담수준으로 격하시키기, 권익옹호제도, 법률정보 등 질높은 정보제공도 병행하는 노력(사회구조적 문제의식)</p> <p>장애는 여전히 대중들에게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의 삶에서 유리된 채로 살아간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 ‘극복 담론’에 대한 비판과, 장애인의 삶을 타자화 시키지 않고 이동권, 노동권 등의 여러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담하게 풀어내었다.</p>	

조종란 이사장 첫 공식행사 불편했던 '워딩'

패럴림픽 성화봉송 감동, '장애 극복' 아쉬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12 16:04: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에이블뉴스

“패럴림픽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경기장을 누비던 국가대표”, “장애인고용의 벽을 힘겹게 내달는 모습과 교차하며 감동”, “부정적 시각 극복하신 장애인고용의 국가대표”

지난해 말 취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이 첫 공식행사 신고식에서 발언한 내용들이다.

12일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단에서도 가장 큰 행사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자리한 기자는 조 이사장의 신고식 발언들이 조금은 불편했다.

이날 조 이사장은 그간 장애인고용인식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설명,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2.74%로 향상된 점을 들며 “변화를 이끌어내신 분들이 여러분”이라며 장애인 고용현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향해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는 “3월 평창에서의 감동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를 맡은 장애인아이스하키 주장 한민수 선수를 언급했다.

“한민수 선수가 등에 성화를 짊어지고 가파른 성화대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마치 우리사회의 장애인 고용 벽을 힘겹게 내딛는 우리의 모습과 교차되면서 가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자의 눈에 비친 한 선수는 양벽을 등반하듯 로프 하나에 의지해 힘겹게 슬로프를 오르는 모습이 “장애극복 쇼”에 불과했다. 경사가 높은 슬로프를 보며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기까지 했다.

‘왜 장애인은 극한에 도전해 용쓰며 ‘극복’ 해야만 할까?’라는 비판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론은 반대로 “최고의 명장면”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현실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비장애인들도 해내기 힘든 일들을 해냈다!” 딱 이런 시각일 것이다.

물론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감동의 장면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장애인계 리더라면 분명 ‘장애 극복’ 키워드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극복(克服)은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내는 것이자 적을 이기어 굴복시킨다는 뜻으로 ‘장애 극복’은 결국 장애가 악조건이나 고생이고, 적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회에서 이상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분야에서 꼭 일해 오신 전공자다. 장애인들의 욕구와 희망을 잘 아셔서 공단을 잘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조 이사장은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거쳐 1990년 공단에 입사해 고용촉진이사까지 꼭 장애인고용에 힘써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 이사장의 위당이 더 아쉬운 이유다.

“패럴림픽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경기장을 누비던 국가대표가 있었다면 우리 고용의 현장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신 국가대표들이 계신다”란 문장도 덩어리다.

장애인고용 수장의 첫 신고식, 부디 다음 행사에는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일지

작성자 : 박세원 / 작성번호 :1803-13-13

출처/기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기사날짜	2018.04.12
기사주소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7&NewsCde=000720180412135605768303		
제목	조종란 이사장 첫 공식행사 불편했던 ‘위당’		
내용분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 미담/극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 관련		
	장애인 인격권 존중하기	<p>주요초점 :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대상화, 도구화하는 보도, 장애인이 특별하고 다르다는 식의 보도, 장애인은 이질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보도, 장애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보도</p> <p>“폐털립픽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경기장을 누비던 국가대표”, “장애인 고용의 벽을 힘겹게 내딛는 모습과 교차하며 감동”, “부정적 시각 극복하신 장애인고용의 국가대표”</p> <p>이러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의 발언이 불편했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다. ‘장애 극복은 결국 장애가 악조건이나 고생이고, 적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본문의 내용은 왜 ‘장애 극복’의 서사가 잘못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좋았다.</p>	

2) 재판

재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날짜	2017년 3월 17일	작성자	조세은
----	--------------	-----	-----

1	재판과정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부적절한 말이 있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천히 말했지만 설명이 길고 복잡함. - 질문) 화가 잘 나는, 화를 잘 내는, 화가 날 때 자제가 안 되는, 화가 날 때 유지하는 / 화가 안 풀려서 그랬나요?
-----------	---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절하게 나긋나긋하게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질문) 검찰 땀 이렇게 대답했지만 지금은 ~게 대답했다. 진술이 다르다. 왜 그렇게 했는가?
-----------	--

2	재판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 약 10여 년 동안 형부에 의한 성폭력피해와 임신, 출산, 가사노동, 간호 등을 한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반복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음.
- 날짜, 시간, 숫자가 취약한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고려하여,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음.

3	활동소감
----------	-------------

- 약 10여 년 전부터 형부에 의한 성폭력피해로 임신, 출산을 하고 가사노동, 육아, 병간호등을 한 피해자는 아동학대 및 살인을 하게 된 가해자가 되었다. 이는 우리사회가 돌봄을 여성에게, 가족에게 한정지으며 의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서 지지기반(사회적 자원)이 취약한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지쳤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아이의 죽음으로 친족 성폭력피해, 장애여성에게 일어난 성폭력 피해가 드러났다. 이때까지 누가 이 여성의 삶을 방관했을까?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반성해야한다.
- 수사기간은 피고인의 성폭력 피해사실, 장애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하였어야 했다.
- 진술조력인등을 통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도록 기회 및 자리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장애의 특징, 이해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장기적인 조사 시간, 남성vs여성, 검사(수사기관)vs피고인의 상황에서는 무언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재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날짜	2017년 4월 4일	작성자	조세은
----	-------------	-----	-----

1	재판과정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부적절한 말이 있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가해자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은 현재 스트레스, 물질적 피해, 변기**이라는 악명, 연예인이미지 타격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지목하여 가해자, 범죄자라고 판단 - 피해자(박**)의 신상공개 등 앞으로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함
------------	--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와 지인이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말하며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줌. - 제대로 된 수사, 구속영장 신청요구. 국민재판신청
---------------------	---

2	재판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신상 지속적인노출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재판이 된 점

3	활동소감
---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매우 많이 이루어졌으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단 1번 이루어졌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한 결과와, 중간 보도 등 피고인의 마음은 매우 부담 되었을 것 같을 것 같다.
-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이 되었으며 꽃뱀/신상 털기 등 명예훼손은 피고인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과연 이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재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날짜	2017년 4월 7일	작성자	나무
----	-------------	-----	----

1	재판과정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부적절한 말이 있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진술서 제출 및 추가 증인신청 없음 확인 - 공동피고인 증인신청 확인
----	---

2	재판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았음.
- 재판이 속행으로 진행되어 기록할 만한 내용은 없음

3	활동소감
---	------

-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
- 박** 팬들이 많이 왔음. 피고인 변호사들이 일정이 되지 않아 판사가 제안한 다음 기일이 5월로 미뤄지자 크게 한숨을 쉬면서 불쾌함을 드러냈음.

재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날짜	2017년 5월 12일	작성자	김연아
----	--------------	-----	-----

1	재판과정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부적절한 말이 있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 채택 결정 시 피해자, 가해자 측 형평성 기준에 준하는 이유로 사건과 직접적 영향이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준 일 - 피해자가 직접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법정에서 얘기했음에도 채택함.
----	--

검사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책상에 기대어 발언하는 모습, 가해자 변호인 발언 시 중간에 말을 끊고 말하는 행위.
----	---

2	재판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 피해자가 본 사건을 자신의 피해에 집중하기보다 영화계가 안고 있는 문제로 확대하여 정의 구현을 하고자 하는 모습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연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 판사 정면 맞은 편 자리에 피해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죄인처럼 위축되어 보였음.

3	활동소감
---	------

- 법정에 20대로 보이는 학생들이 15명 정도 서서 참관했는데 카톡 소리 등 소음이 들려 재판에 집중도가 떨어졌음. 재판 전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재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날짜	2017년 5월 15일	작성자	김예원
----	--------------	-----	-----

1	재판과정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부적절한 말이 있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판사	직권 비공개 결정
----	-----------

2	재판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작성불가

3	활동소감
---	------

- 지난 기일에 박**(가해자)의 소속사에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장년 중년층의 여성들이 몰래 재판내용을 녹음하다가 재판장에 의하여 발각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이번 재판에서 재판장이 그 이유로 직권으로 비공개재판으로 바꾸면서 방청석에서 일괄 퇴장하여 어떠한 재판 내용도 들을 수 없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재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날짜	2017년 6월 23일	작성자	하지현
----	--------------	-----	-----

1	재판과정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부적절한 말이 있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가해자 변호사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엉뚱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함. 물 흐리려는 듯 한 느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신빙성 없는 증인의 의견서 제출
2	재판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번 재판은 10분 내외로 짧았으며, 크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3	활동소감
---	------

재판을 실제로 가서 보니, 피고인의 대리인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관련 없는 증거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흐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재판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날짜	2017년 06월 28일	작성자	이주영
----	---------------	-----	-----

1	재판과정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부적절한 말이 있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가해자 변호사	증인으로 나온 여자 배우 분을 심문할 때 계속 열연으로 몰고 가며 심지어 피해자가 여주인공이면서 왜 능동적으로 리허설을 이끌어가지 않았는지 배우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질문을 계속했다.
2	재판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증인으로 나온 여배우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가 방어를 해주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쉽지 않는 선택으로 증인석에 섰을 텐데 가해자 측 변호사의 황당하고 민감한 질문과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게 맘에 걸렸다.

3	활동소감
---	------

- 오늘 재판은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되었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사건 영화의 메이킹 촬영작가, 사건 영상과 유사한 장면의 촬영 경험이 있는 여자 배우, 사고 영상을 분석한 현직 영화감독, 피해자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사건 영화감독은 증인 신청했으나 출석하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뤄졌고 기자와 피해자의 증언은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 모니터를 온 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 그런지 판사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 증인으로 나온 여배우에게 심한 질문이 가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이 나오면 적당히 끊어주었다. 방청객에게 재판 안내를 하는 등 방청객을 의식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볼 때 재판장모니터링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날짜	2017.07.04. 화	작성자	조세은
-----------	---------------	------------	-----

1	재판과정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부적절한 말이 있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검사	자꾸 강간이라고 말해서 죄송해요 허를 차며 ~ 넘기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별생각을 하지 않는데 코치를 들었는지... 손가락이 닿았다와 넣었다 (진술이 다르다) 정** 문자를 통한 악의적인 해석 112에 신고했는데 얼떨결에 성교했다는 말의 해석 (자발적인 성관계)
-----------	---

2	재판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나요? 해당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신상 지속적인노출로 권리침해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재판이 된 점
-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념 (저항하지 않았느냐 / 피해자가 보낸 카톡 등)
- 검찰이 업소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 피고인이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는 편견

3	활동소감
----------	-------------

- 검찰의 발언은 매우 폭력적이고 야비했다.
피고인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 등 개인정보 및 신상을 노출시켰다. 또 1차 고소여성과 상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시키며 소위 “꽃뱀”화 시키려 하였다.
피고인에게 허리를 돌려 저항하면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 /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겠느냐 / 화장실에선 별생각을 하지 않는데 코치를 들었는지.../화장실문을 열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왜 문을 열지 않았느냐 / 생리혈을 왜 물로 닦았느냐 / 생리중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면 생리대 팬티 등을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었어야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 라고 질문하며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피고인)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였다.
- 공정하게 수사해줘야 할 검사 검찰이 문자 내용의 일부만 발췌하여 (동의되지 않은 증거자료를 흘리듯 노출시키며) 악의적으로 증거로 사용하였다.
아직도 성폭력의 피해를 약자에게 (여성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냐, 왜 소리 지르지 않았냐며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검사에게 매우 분노한다.
- 피고인이 112에 신고 했을 때와 진술기록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다. 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몇 번이나 이야기 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지 ㅍㅍ 대한민국 검사의 눈과 시선이 성폭력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생리중임을 증명해야 했으며, 성폭력 피해자임을 반복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진술하여야 하는지...성폭력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수준이 이정도임에 분개한다.

3) 일상생활

#지역 맘카페 게시물

① 지역 맘카페에 지역 파출소에서 공개적으로 민원 답변을 올렸습니다. 민원 답변에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과 장애에 대해 적혀있었습니다.

**** 파출소장이 직접 수사하여 보니, 피의자는 ******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부모와 통화 확인한 바 '정
 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 중이며 향후
 요양병원에 입원 조치 할 예정입니다.

▲ 지역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세교 파출소 민원 답변 중 일부

② 해당 민원 답변을 작성한 세교 파출소에 '공개게시판에 정신장애인들은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불안감과 편견, 장애혐오 등의 분위기가 조장되도록 민원답변을 작성하였고, 인터넷에 올리는 글의 특성상 캡처, 스크랩 등으로 퍼가기를 통해 다른 곳에 유포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내용(성별, 나이, 살고 있는 지역, 장애유무, 가족력)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은 인권 침해적'이라는 의견을 전달, 해당 민원 답변의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챌린지 동화책 속 성차별

- ① 아이챌린지 <다나 병원 너구리 의사선생님과 토끼 간호사> 속에 ‘의사’는 남성으로 ‘간호사’는 여성으로 표현되어있었고, 의사에게만 선생님 호칭을 붙여져있었습니다.
- ② 아이챌린지 측에 성차별적인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③ 이후 교재에서는 모니터링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하신 2단계 10월호 아트북 <다나 병원 너구리 의사 선생님과 토끼 간호사> 답변입니다
2017-03-17 (금) 12:13:29

그러나 특정 직업에 대한 차별로 느껴진다는
고객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하는 성공체험 학습 아이챌린지 고객만족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은 10월호 교재에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환절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객만족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2단계 10월호 아트북 <다나 병원 너구리 의사 선생님과 토끼 간호사>에서

감사합니다.

너구리 의사 선생님은 남자, 토끼 간호사는 여자가 맞습니다.

-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이챌린지 올림 -

너구리 의사가 토끼 간호사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어른에 대한 존칭으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이후 교재에서 수정하겠다는 아이챌린지의 답변

인천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안내문

① 인천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앞 안내문에 ‘장애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 인천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앞 안내문

②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 해당 표현을 수정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의사항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
 2018-05-25 (금) 11:11:21 접 가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엘리베이터 옆에
 '휠체어 장애우분은 복도쪽 엘리베이터를 이용 바랍니다' 라고
 써있는걸 보았습니다.

장애우라는 단어는 장애인을 친구라고 여기는 동정적이고 시혜
 적인 시선이 반영되어있는 잘못된 표현인데
 이런 단어를 사회복지회관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 당혹스
 럽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어 용어를 '장
 애인' 으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 보낸 건의메일

③ 인천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수정 건의사항을 해당 엘리베이터 안내문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게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18-05-25 (금) 11:34:56



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건의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복지인들이 오가는 곳인데 그런 표현에 대해 감수성을 가지지 못했네요..

인천사회복지회관은 인천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공단에 이야기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구두로 내용을 전했구요~~ 아마 부정적 의도보다는 잘 알아채지 못해서 생긴 일 같아요..
장애인협회쪽에 자문 구하시고 조치한다고 하시네요~~
공식적인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421-0065로 직접 전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더 빠른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인천사회복지사협회의 답변메일

화성동부경찰서 성범죄 예방 전단지

①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제작, 배포한 성범죄예방 전단지

② 시민감시단은 화성동부경찰서에 피해자가 조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전단지의 문제적 표현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전단지 수거와 내용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시민감시단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에 모니터링 내용을 전달 하였습니다. 전성협에서는 경찰청 성평등 정책담당관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④ 화성동부경찰서에서는 해당 전단지를 수거하였습니다.

⑤ 경찰청 성평등 정책담당관은 모니터링 내용을 화성동부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가 소속해있는 경기남부청, 그리고 본청 성폭력담당 및 여성청소년계에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해당 전단지는 모두 폐기하고, 새로 만들 때에는 모니터링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금지 캠페인 문구

① 지하철역 내에 불법촬영범죄를 ‘몰카’로 지칭하고, 불법촬영이 ‘호기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문구가 담긴 캠페인이 붙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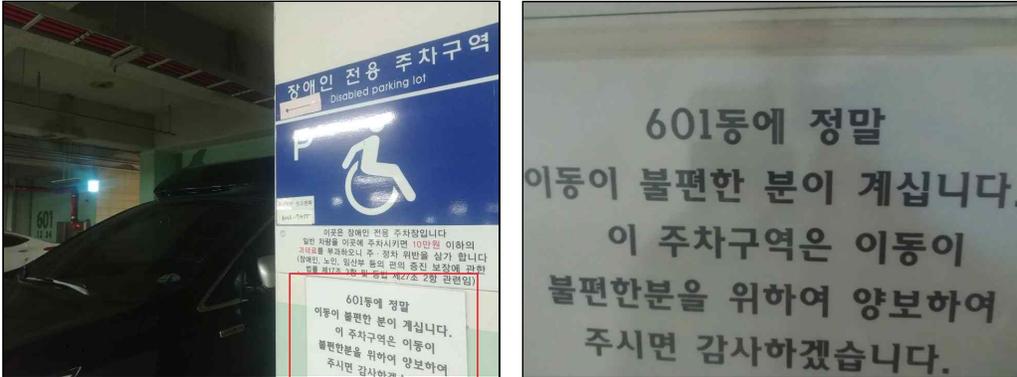
▲ 어느 지하철역의 불법촬영금지 캠페인

② 해당 지하철이 있는 지역교통공사에 모니터링 내용을 전달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해당지역 교통공사는 ‘몰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도 등록돼있고 뉴스나 신문에서도 공공히 쓰고있는 단어라서 문제될게 없어 수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불법촬영에 대해 '호기심'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동의하였고, 당장은 힘들지만 다음번에는 꼭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문

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편한 분에게 양보’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에 붙은 안내문

②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불편한 분’이라는 단어 사용과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권리를 비장애인의 양보라고 안내하는 관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③ 관리사무소에서는 즉시 안내문을 제거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간호사 구인문구

① 장애인 생활시설 간호사 구인글에 장애아동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 장애인 생활시설 간호사 구인글

② 해당 구인글을 작성한 곳에 간호사라는 노동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어머니’라는 규범화된 성역할 요구를 문제제기하며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현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대응활동

1) 보도자료

보도 자료	 장애여성인권운동단체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화_02-3013-1399/팩스_02-6008-2384 /메일_was1399@hanmail.net/홈페이지_wde.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7년 4월 18일(화)
담당	나무(02-3013-1399)	페이지	총 6매

각 언론사에 장애편견을 강화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이하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은 2016년 8월부터 최근 5년간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보도를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은 **장애인권과 젠더감수성**을 기반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인권보도준칙(2011_한국기자협회_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과 성폭력사건보도수첩(2014_한국기자협회_여성가족부_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 유발론과 같은 왜곡된 통념,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하에 작성되는 선정적 내용, 장애에 대한 비하 및 편견 강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엄벌주의적인 처벌 강화만을 대응방안으로 내놓는 보도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언론사가 위에 언급한 성폭력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실제 기사에 사용되었던 표현을 중심으로 장애편견을 강화했던 보도의 문제점을 각 언론사에 알리고자 한다.

첫째 “~장애를 앓고 있는”이라는 표현은 장애를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성폭력 피해를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이유를 “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고 표현력이 부족하여”라고 하였는데, 장애를 ‘비정상’으로 바

라보는 편견과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성폭력 사건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없는 표현이다. 셋째, “과자 줄게”, “2만원줄게” 등 가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서 가해자가 장애를 이용하는 의도성보다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넷째, “지적장애여성 가구에 CCTV 설치”, “성폭력 예방은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성폭력 예방이 장애를 통제, 보호, 동정함으로서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피해의 원인을 장애에 돌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정신지체, 지능장애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장애유형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언론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지 않은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의 장애로만 규정하지는 않는지, 장애에 대한 잘못된 비하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하여 신중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최근엔 SNS, 인터넷 등 온라인 소통이 활발하여 매우 쉽게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언론사는 조회율(클릭수)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과 내용의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잘못된 통념과 편견이 일반대중에게 자정장치 없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의 분노와 호기심만 자극하는 기사가 아닌 비판적 감시, 왜곡 없는 정확한 정보제공,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 원인과 국, 내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은 대안적 인식확산 및 사회문화 형성, 인권사회로의 진보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언론보도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문제적인 기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할 것이다. 첫 번째 실천으로서,

**각 언론사에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 4. 18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2) 카드뉴스

2017 카드뉴스 :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사건 언론보도는
왜 '장애' 만
남는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피해자의
78% 지적장애여성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경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2015년 상담통계분석

장애 특성이라 규정하며
사소한 보상이나 친절에도 쉽게 유인되는 상황
극단적으로 묘사

사회 · 법원 · 검찰 2014. 8. 5일자 기사제목
"뽕빵 사줄게"...지적장애 여성추행한 공무원 실형 확정

사회 | 사건/사고 2012-10-16 12:06 2012.10.16일자 기사제목
"영화 보러갈래?" 지적장애 청소년 유인 성폭행 덜미

비장애인 / 남성중심의
지배적인 성적 규범 속에서
장애여성의
성적 주체성은 삭제

'영원한 아이' 지적장애 성폭력 계속되는 이유

피해자 10명 중 7명... "사회적 관계 매우 제한적"
보호시설 마련, 특성 맞는 성교육 필요 등 제언

2014. 3. 28일자 기사제목

장애여성을 일방적 도움을 받는 무력한 존재로 묘사

엠펙살던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검거

2012.10.12일자 기사제목

매달 60~120만 원의 장애인 생활지원금을 대신 수령해 관리하면서 용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온갖 허드렛일을 맡기고 부렸다.

2015.12.3일자 기사내용

‘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의없이 공개 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장애여성의 일상

지적장애여성 가구에 CCTV 설치

경찰 “올해 43곳 계획”

2015.1.26일자 기사제목

보호, 관리, 통제의 대상 한국사회 장애여성의 위치.

2017.5.24일자 기사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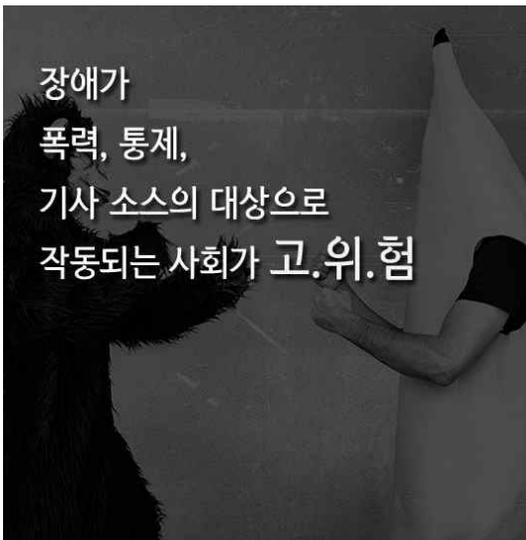
뉴스홈 > 사회 > 사회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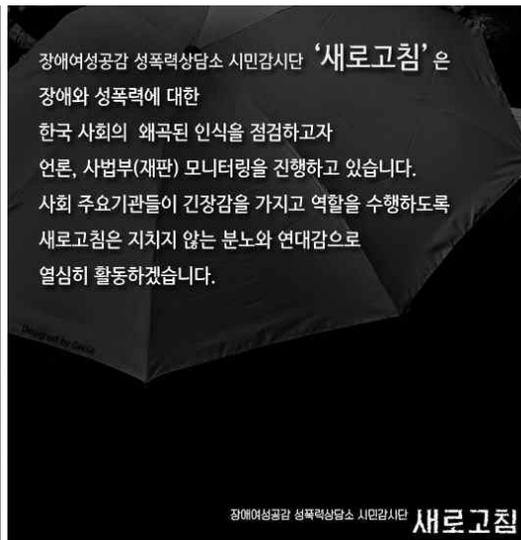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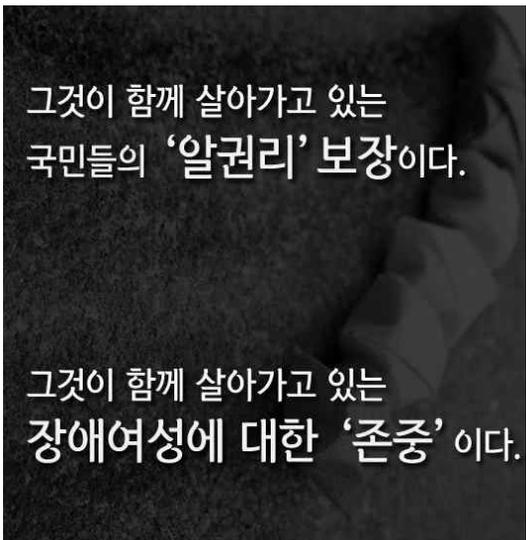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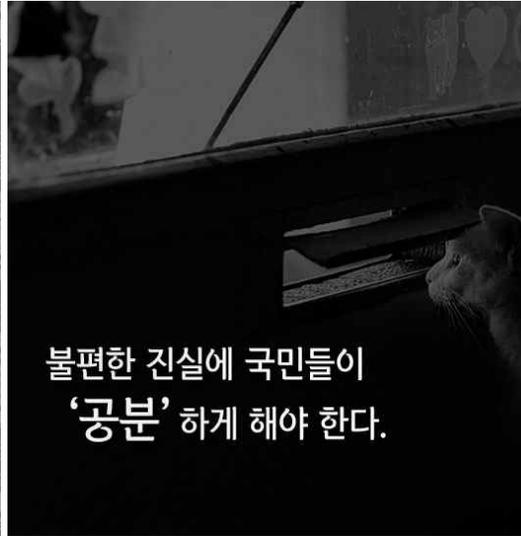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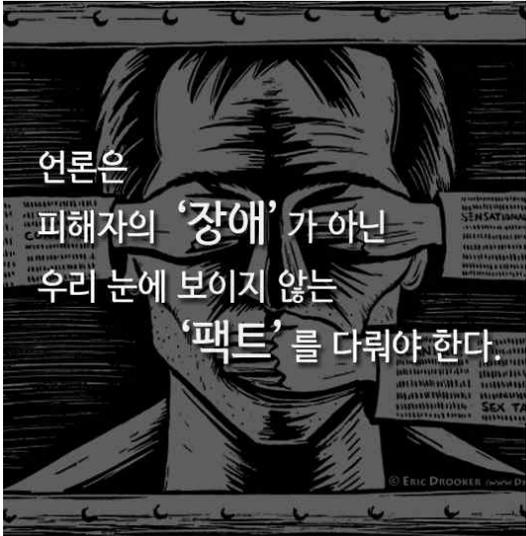
고위험군 가정방문 점검 활동 나서

‘친절한 사람’ 장애여성의 이 판단이 왜 ‘문제’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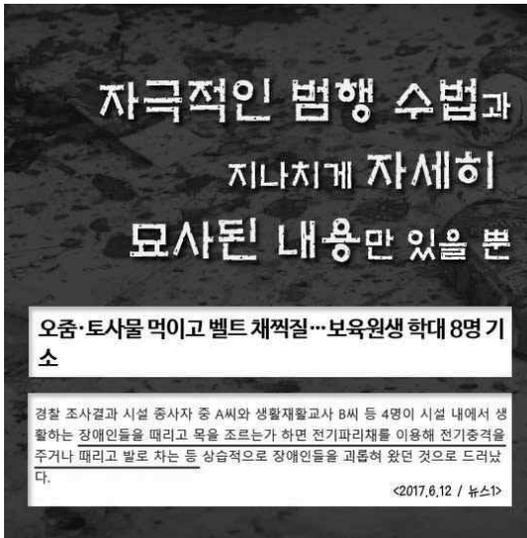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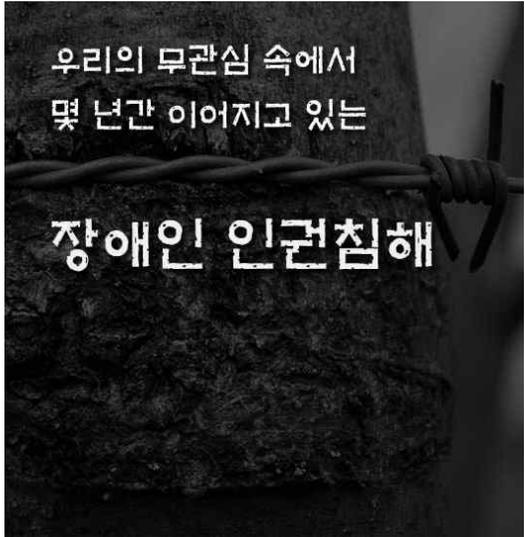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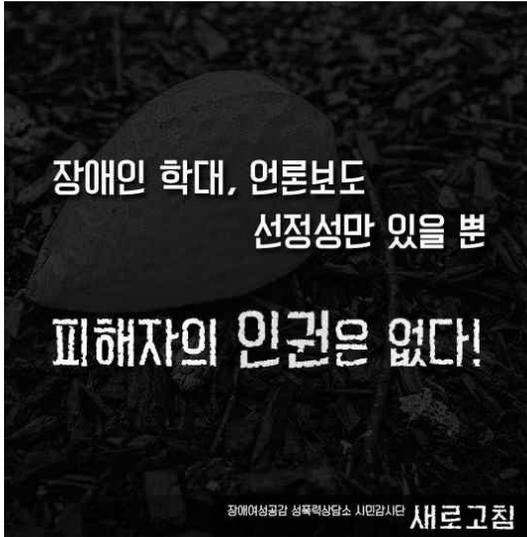
가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소 알고 있는 가해자는 전체의 57.3%를 차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편역 2015년 상담통계분석





2017 카드뉴스 : 학대



**학대를 학대라 말하지 못하는 언론
노동착취는 “학대”**

지역 | 광주 <2017.6.5 / 노컷뉴스>
 '도마토 노예' 50대 마을이장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2017-06-05 09:55 | 정우CB@광주대기자단

재판부는 “적정한 임금은 주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가족처럼 생활한데다 학대나 가혹행위도 없었다”며 “법정구속돼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경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보인다”고 판시했다.

**학대 피해자를 피해자라
말하지 못하는 언론
노예가 아닌 “피해자”**

**기사 안에는 대안도 없다!
처벌만 있을 뿐**

**정보제공도 없다!
학대수법만 있을 뿐**

**개선되지 않은 제도들
제도나 인권에는
관심없는 기사들**

시선 종합뉴스9
 장애인 노리는 범죄...전담수사관 제도는 '생색내기'
 <2017.4.20 / 조선일보>

**지적장애이한테 노역시키고 15년간 월 10만 원 줬는데...
법원은 '집행 유예'**

법원 “엄한 처벌 필요하지만 동종 전과 없고 피해보상 했으므로...”
 등록일 [2017년05월22일 11시25분] <2017.5.22 / 비마이너>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시선부터 학대이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한다!**

국가는 학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질 높은 서비스와
법률 정보, 권익 옹호제도도
함께 안내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론의 처벌 위주 기사는 바뀌어야 한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는
제목부터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언론보도를 요구한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은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점검하고자
언론, 사법부(재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주요기관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새로고침은 지치지 않는 분노와 연대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2017 카드뉴스 : 미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장애인 미담(美談)은
정말 장애인을
아름답게 **美** 하는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장애인 관련 **미담들**

불쌍하고 불행하고 의존적인
복지의 시혜적 대상으로
묘사되는 미담 속 장애인들

사회
LG, 장애인 구한 해병대원에게 장학금
및 채용기회 제공
<2017.1.17 / 연합뉴스>

미담 속 장애는
농담거리가 되거나
웃기는 소재가 되기도 해

"도와주세요" 허위신고한 지적장애인 경찰관체험 무슨 일?
<2017.7.16 / 중부매일>

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해야
미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현실

시사 > 장애기사
1급 장애 극복하고 대학 강단에 선 박경순씨
<2017.3.7 / 국민일보>

미담 속 장애인은
언제까지나
그저 장애인일 뿐

시각장애 극복하고 '헌법연구관' 임용된 김병욱씨
<2017.7.24 / 연합뉴스>

장애인을 도와준 사람만 있을 뿐
도움을 필요하게 만든
사회에는 무관심

시사 > 장애기사
"햇빛 햇빛이 보고 싶어요" 경찰 올린 장애인의 전화
<2017.5.26 / 국민일보>

미담 속 장애인이 정형화 되면서
장애인은
오히려 숨이 막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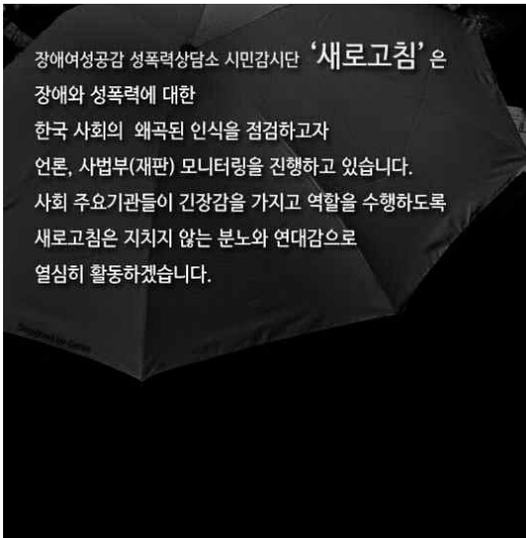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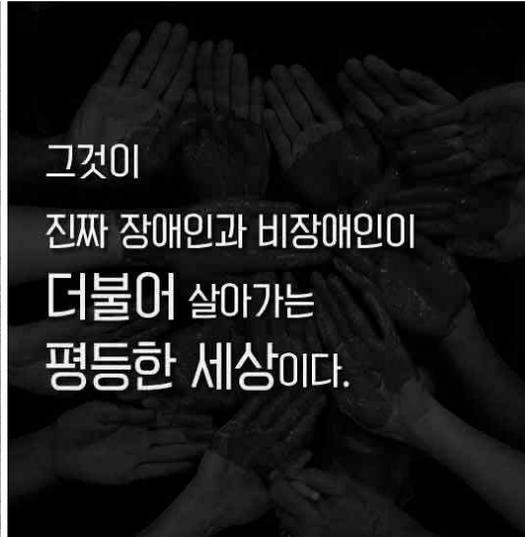
장애인을 미담 안에
가두지 말자

"불굴의 의지 보여준 '올해의 강한장애인' 찾습니다"
제주도, 강한장애인 대상자 공모
<2017.2.22 / 헤드라인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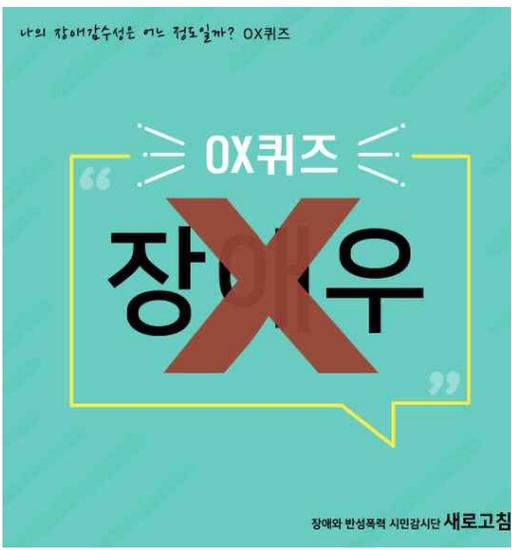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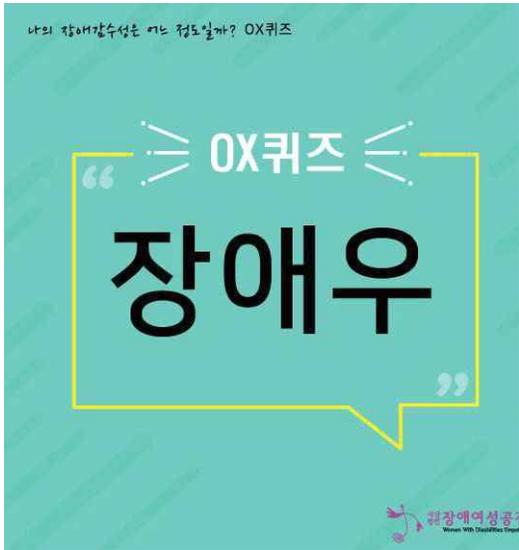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장애인을 선긋지 말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지체장애서 분리... 정확한 통계 바탕 지원해야"
적수장애인 실태조사 '등쪽남쪽'
<2017.4.20 / 세계일보 시리즈>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2017.5.4 / 자유아시아방송>



2018 카드뉴스 : 장애감수성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장애우의 ‘우’는 실제 친구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모든 장애인을 관계와 상관없이 ‘친구’로 지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사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OX퀴즈

“
 일반인
 정상인”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사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OX퀴즈

“
~~일반인
 정상인~~”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사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장애인을 비정상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 바탕이 된 잘못된 표현입니다.”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사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OX퀴즈

“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사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OX퀴즈

“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사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
‘장애가 있는’이라는 표현이 맞습
 니다.
 장애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장애는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OX퀴즈
 “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OX퀴즈
 “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선거 공보물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거 공보물을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됩니다.
 ”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OX퀴즈
 “
**장애를 극복한
 장애를 딛고**
 ”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OX퀴즈
 “
**장애를 극복한
 장애를 딛고**
 ”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사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OX퀴즈
 “
**장애인을
 배려하는**
 ”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사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OX퀴즈
 “
~~장애인을
 배려하는~~
 ”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사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OX퀴즈

“
 배려는 ‘인권’의 언어가 아닙니다.
 장애인은 특별히 제공하는 혜택,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입니다.
 ”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사단 새로고침

나의
**장애감수성이
 올라가셨나요?**

비장애인
 장애인
 정체성
 주체

내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하나
 바꾸는 작은 힘!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사단 새로고침



3) 항의메일

성 폭 력

출처 | 세계일보/ 이창수 기자(2017. 3. 7일자)

제목 | 장애인 대상 성범죄 늘어도 기소율은 줄어...‘도가니법 무색’

1. (사)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개소하여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에 주력하며, 장애여성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은 2016년부터 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시민들 중심으로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점검하고자 언론, 사법부, 공공기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식 확산 및 대안적 사회문화 형성, 성평등적인 인권사회로의 진보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세계일보 이창수 기자님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늘어도 기소율은 줄어...도가니법 무색(2017. 3. 7일자)’이라는 기사를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권고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이후 기사작성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4. 첨부한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권고기준은 주변 기자님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5. 앞으로 장애인 성범죄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 피해자의 일상 회복 등 고민과 대안이 담긴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에 근거하여 기사작성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인으로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2018. 7. 12일자)

제목 | 그 선생이 부르면 괴로웠다...17세 장애소녀 '악몽의 5년'

1. (사)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개소하여 장애여성 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에 주력하며, 장애여성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은 2016년부터 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시민들 중심으로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점검하고자 언론, 재판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식 확산 및 대안적 사회문화 형성, 장애/젠더 관점이 기반된 인권사회로의 진보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님의 ‘그 선생이 부르면 괴로웠다...17세 장애소녀 '악몽의 5년(2018. 7. 12일자)’ (이)라는 기사를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권고 기준에 근거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이후 기사작성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요청 사항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4. 기사에 쓰인 삽화와 기사의 내용이 다소 선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도 많은 언론사에서 비슷한 인상의 삽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점점 법원 이미지나 경찰 이미지 등 중립적인 삽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순간을 연상하게 하는 폭력적 이미지나 피해자를 나약한 존재로 위치 지우는 이미지 대신 중립적 이미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선생이 부르면 괴로웠다...17세 장애소녀 '악몽의 5년'이라는 기사의 제목을 쓰시게 된 경위를 여쭙고 싶습니다. 제목은 독자가 기사에 대해

갖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독자들이 마치 소설 제목 같은 이 기사 제목을 보고, 해당 성폭력 사건을 단순한 선정적 흥밋거리 정도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장애소녀”라는 명칭이 독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기자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청소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기사에서 언급한 의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가정사가 독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 그 구성을 의도하신 건 아닐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이라는 범죄 피해자일 뿐 순결을 잃은 자도 나약한 자도 아닙니다. 자극적 보도 대신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구조적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모아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5. 참고가 되시라고 저희 새로고침에서 그동안 장애인 성폭력 관련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주요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이 메일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답변을 회신형태의 문서로 2018. 8. 25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권고기준은 주변 기자님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6. 앞으로 장애인 성범죄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 피해자의 일상 회복 등 고민과 대안이 담긴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권고기준에 근거하여 기사작성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인으로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기사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주요 내용

1. 장애여성의 특성을 극단적으로 묘사한 점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얼마나 취약했는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장애여성을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어린 아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는 교육과 일상생활을 위한 기술의 습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사회생활 능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정형화된 몇몇 특성이 과장되게 일반화되는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장애여성이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특성을 이용한 가해자들의 의도와 이를 행동으로 옮겨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작동되는 사회구조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기사작성 부탁드립니다.

2. 피해자의 상황이나 피해에 대해 문제의식 없이 자세하게 표현한 점

성폭력 사건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 보호(구체적 신상공개) 여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대해 선정적, 자극적으로 다룸으로써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정황 설명이 사건의 본질을 다루는데 중요한 내용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도하시길 바랍니다.

3. 삽화사용의 문제

성폭력 기사에서 삽화 사용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선정적인 장면은 글보다 더 시선을 끌어 독자들에게 강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위험이 높습니다.

- ① 성폭력 가해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성범죄는 ‘짐승’이나 ‘괴물’같은 특별한 존재가 저지르는 것이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 ② 해당 기사와 무관한 선정적인 이미지나 영화 속의 자극적인 장면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범죄가 아닌 흥밋거리로 소비하고 일상의 권력관계가 아닌 개인간의 성적인 문제로만 보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③ 가해자는 과장되게 크게 표현하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구석에 웅크리고앉아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사용은 피해자는 이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다른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 자체를 의심하는 통념(순수한 피해자)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사용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주체화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삽화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4. 가해자 언어의 인용

가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선정성만 강조되고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들이 그대로 사용됨으로써 가해자의 논리만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은 위험하며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5. 장애인성폭력 범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회적 대안 필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기사화할 때 선정적(가해행위 중심)으로 다루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동정, 관리, 보호, 처벌 중심의 논조로만 일관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성폭력 원인에 대한 근본적 분석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조적 원인인 권력의 문제와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교육(성평등, 인권),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제도에 대한 분석(안내포함)과 사회적 대안이 제대로 언급되는 기사 작성 부탁드립니다.

6.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및 편견을 강화한 점

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장애유형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제시된 장애유형에 따른 법적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지체 → 지적장애

②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장애를 병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를 앓고 있는 → 장애를 가진, 장애가 있는

③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는 표현보다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제한성이나 취약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 사리판단을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 장애로 인해 제한성을 갖게 되는

④ 장애인을 규정하는 표현으로 보호해야 하는 존재,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결핍된 사람,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예) 지적장애인 보호제도 → 지원체계

7.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명(가명)으로 지칭하는 점

○○사건, ○○사건 등 본명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피해자의 이름(가명)으로 성폭력 사건이 불리는 것은 피해자에게 벗어날 수 없는 주홍글씨처럼 낙인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해자명으로 명명된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고 끊임없이 다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명을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8. 범죄행위를 축소시켜 표현하는 점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가볍게 표현함으로써 범죄행동의 심각성이 축소되거나 희석되어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9. 가해자들에 대해 비인격화하여 표현하는 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이웃이고 평범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짐승같은’이라는 표현은 성폭력이 일상의 권력관계 안에서 누구나 피,가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같은’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즉, 기사를 읽는 대중으로 하여금 성폭력의 일상성을 부정하고 자신과 분리하여 타자화하기 쉽도록 합니다.

학 대

출처 | 뉴시스/ 장태영 기자(2018. 2. 12일자)

제목 | 경기 광주 장애인 재활시설서 장애인 학대 정황 포착...경찰 수사

1. (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개소하여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의료, 법률 지원에 주력하며, 장애여성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은 2016년부터 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시민들 중심으로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점검하고자 언론, 사법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식 확산 및 대안적 사회문화 형성, 장애/젠더 관점이 기반된 인권사회로의 진보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뉴시스 장태영기자님의 ‘경기 광주 장애인 재활시설서 장애인 학대 정황 포착...경찰 수사(2018.02.12.일자)’라는 기사를 인권보도준칙에 근거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이후 기사작성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4. 기사의 리드문은 <해당 시설 "시설 종사자 모두 가해자로 몰려 오히려 피해">입니다. 기사 전체적으로 당사자의인터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적장애인들이 다른 시설로 옮긴 것에 대한 의견, 또 가해 기관의 ‘직원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해 장애인은 수동적이고, 의사소통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갖게 한다고 판단 됩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은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교사들의 인권침해도 있었다"고도 했다.>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도 함

께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5. 참고가 되시라고 저희 새로고침에서 그동안 장애인 관련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주요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이 메일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답변을 회신 형태의 문서로 2018.6.21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권보도준칙은 주변 기자님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6. 앞으로 장애인 관련 기사의 사회 구조적 원인과 대책 등 고민과 대안이 담긴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권보도준칙에 근거하여 기사작성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인으로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담

출처 | 중부일보/ 송휘현 기자(2017. 7. 16일자)

제목 | "도와주세요" 허위신고한 지적장애인 경찰관체험 무슨 일?

1. (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개소하여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의료, 법률 지원에 주력하며, 장애여성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은 2016년부터 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시민들 중심으로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점검하고자 언론, 사법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식 확산 및 대안적 사회문화 형성, 장애/젠더 관점이 기반된 인권사회로의 진보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중부매일, 송휘현 기자님의 “도와주세요” 허위신고한 지적장애인 경찰관 체험 무슨 일? (승인 2017.07.16 16:53) 라는 기사를 인권보도준칙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이후 기사작성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5. 이 기사는 ‘장애인 관련 미담’기사의 일종입니다. 경찰청 등 장애인 관련 업무 유관기관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미담 기사를 자주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그러한 경찰청의 기사제공내용을 전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해당 장애인의 얼굴이 크게 부각되어 개인의 추억이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일화와 관련 앞으로 확대 재생산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한 말로 소개되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다면"이라는 표현은 성인인 장애당사자에게 무례한 말이 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보도됨으로서 장애인이 순종적이어야 하거나, 장애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

는 주변 보호자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 존재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저희 새로고침에서 그간 장애 관련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이 메일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답변을 회신 형태의 문서로 2017. 8. 15.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권보도준칙은 주변 기자님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6. 앞으로 장애인 관련 기사의 사회 구조적 원인과 대책 등 고민과 대안이 담긴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권보도준칙에 근거하여 기사작성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인으로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관련 기사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모니터링 주요 내용

1. 장애인의 특성을 극단적으로 묘사한 점

- ①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얼마나 취약했는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어린 아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는 교육과 일상생활을 위한 기술의 습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사회생활 능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정형화된 몇몇 특성이 과장되게 일반화되는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장애인들이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특성을 이용한 가해자들의 의도와 이를 행동으로 옮겨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작동되는 사회구조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기사작성 부탁드립니다.
- ② 사건의 가해자가 장애인이 경우, 모든 맥락은 삭제되고 장애라는 것만 남아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병리적(일탈적)인 증상으로 치환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공포감, 혐오감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문제의 쟁점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원인인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기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지 않은지 사건의 원인을 피, 가해자의 장애로만 규정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장애 비하적인 잘못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원인에 대한 근본적 분석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 사건의 구조적 원인인 권력의 문제와 폭력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교육(성평등, 인권),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제도에 대한 분석(안내 포함)과 사회적 대안이 제대로 언급되는 기사 작성 부탁드립니다.

- ② 장애인 미담기사의 경우, 장애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야할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비장애인 중심,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게 하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고용불안정, 사회적 관계 배제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6.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및 편견을 강화한 점

- 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장애유형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제시된 장애유형에 따른 법적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지체 → 지적장애
- ②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장애를 병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를 앓고 있는 → 장애를 가진
- ③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정상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 바탕이 된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예) 일반인, 정상인→비장애인
- ④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는 표현보다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제한성이나 취약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 사리판단을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 장애로 인해 제한성을 갖게 되는

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게 하는 표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결핍된 사람,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예) 지적장애인 보호제도 → 지원체계

7. 사건을 특정명(~노예 사건)으로 지칭하는 점

..사건, ..사건 등 계속해서 특정 사건으로 불리는 것은 피해자에게 벗어날 수 없는 주홍글씨처럼 낙인 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사건명으로 명명된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고 끊임없이 다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명을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토마노 노예 사건 → 토마토 농장주 학대 사건

8. 가해자들에 대해 비인격화하여 표현하는 점

사건의 가해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이웃이고 평범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짐승같은’이라는 표현은 폭력이 일상의 권력관계 안에서 누구나 피,가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같은’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즉, 기사를 읽는 대중으로 하여금 폭력의 일상성을 부정하고 자신과 분리하여 타자화하기 쉽도록 합니다.

4) 독려 메일

출처 | 동아일보/ 임보미 기자(2018. 4. 20일자)

제목 | 패럴림픽 보도, '장애극복'만 부각

1. (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개소하여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의료, 법률 지원에 주력하며, 장애여성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은 2016년부터 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시민들 중심으로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점검하고자 언론, 사법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식 확산 및 대안적 사회문화 형성, 장애/젠더 관점이 기반된 인권사회로의 진보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동아일보 임보미 기자님의 ["패럴림픽 보도, '장애극복'만 부각"] (2018. 4. 20 일자)이라는 기사를 인권보도준칙에 근거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이후 이달의 우수기사로 선정되어 메일을 보냅니다.
4. 장애인 관련 기사는 동정과 시혜 프레임이 대부분인데, 문제의식이 분명한 제목과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패럴림픽 보도 방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인터뷰를 인용하여 기사화 한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배제,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고, 차별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감수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정과 시혜적 관점이 아닌 장애인권에 대해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장애담론 공부는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참고가 되시라고 저희 새로고침에서 그동안 장애인 관련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주요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인권보도준칙은 주변 기자님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6. 앞으로 장애인 관련 기사의 사회 구조적 원인과 대책 등 고민과 대안이 담긴 좋은 기사 계속 부탁드립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5) 1인 시위

- 동아일보사, 뉴스1 코리아 언론사 앞에서 진행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삽화는 NO!**



**피해자는 용기 있는
증언자입니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그침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여
장애를 딛고**

장애는 **치료와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입니다

“장애가 있는,”

으로 표현해주세요 기자님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그침



4. 기사자료

1) 언론기사

장애인 관련 기사,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장애인의 '무능력함' 강조나 선정적 왜곡 보도, 더 이상 그만"

뉴스일자: 2017년04월18일 17시40분

"장애를 앓고 있는", "지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에 관한 기사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이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아래 새로고침)은 이러한 표현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로고침은 2016년 8월부터 최근 5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고침은 "분석 결과, 피해자 유발론과 같은 왜곡된 통념,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하에 작성되는 선정적 내용, 장애에 대한 비하 및 편견 강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엄벌주의적인 처벌 강화만을 대응방안으로 내놓는 보도 태도 등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새로고침은 △장애자, 장애우 등의 표현 대신 '장애인' △'정상인' 이나 '일반인' 대신 '비장애인' △정확한 장애유형명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장애를 앓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사리판단을 못 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통제 대상,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표현("지적장애인 보호제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사람보다 장애에 초점을 맞춘 표현("시각장애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장애를 극복한") △장애 특성으로 인한 고유문화를 불인정하는 표현("농아인이 일반인의 말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과자 줄게", "2만 원 줄게" 등 가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노출시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해 장애인을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점도 지적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지적장애여성 가구에 CCTV 설치"나 "성폭력 예방은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등의 표현을 씌으로써 장애인 성폭력 예방이 장애인에 대한 통제와 보호, 동정으로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고침은 "이는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피해의 원인을 장애에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새로고침은 그밖에도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는 보도지침을 소개했다. 특히, 가해자를 '짐승'이나 '악마'로 표현하거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보도 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시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여성 성폭력의 일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가해자의 범죄를 '몸살 짓'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희석시킨다며 주의를 요했다.

새로고침은 "언론사가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과 내용의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비판적 감시, 왜곡 없는 정확한 정보제공,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 원인과 국내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분석한 대안 제시 등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beminor.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2) 칼럼

경향신문

[NGO 발언대] 장애인 성폭력 선정적 보도 멈춰야

이진희 |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입력 : 2017.07.30 20:56:00 | 수정 : 2017.07.30 20:57:41

‘또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나?’ 우려와 분노로 장애인 성폭력 보도기사를 클릭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드라마, 영화와 같은 픽션과 다르게 언론 기사는 사실을 보도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한다. 그러면 보도를 통한 정보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작년 말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최근 5년간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으로 1)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생산하는 선정적인 보도내용과 이미지 사용 2)장애유형과 특성을 잘못 쓰거나 왜곡하는 정보 3)성폭력범 94%가 정신질환, 30% 사이코패스와 같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 4)극단적으로 장애인 피해자를 묘사하여, 취약성만 강조하는 것 5)‘개가 꼬셨다’와 같이 가해자 언어를 인용하여 사건이 설명되는 한계 6)‘인면수심, 짐승 같은’ 등의 표현으로 가해자를 비인격화시켜, 장애인 성폭력의 일상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 대안으로 주변의 사랑과 관심, CCTV 설치 확대를 제시한 점도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을 지우고, 장애인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론 보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삶과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78%는 지적장애여성이다. 실제로 다수의 지적장애인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일상생활과 소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무능력함으로 그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장애남성과 다르게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수동적으로 그리거나 성적대상, 잠재적 성폭력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선택과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인 장애인의 인권과 성적권리의 제한성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 일상과 성적권리 실천의 제한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임을 잊어선 안된다. 장애인 피해자들은 때로 협상하고, 싸우고, 즐거움을 찾고, 도전하며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일궈나간다. 그 과정을 지지할 사회적 관계와 자원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더 큰 과제다.

미국의 장애여성 헤릴린 루소는 그의 책 <나를 대단하다고 하지 마라>에서 “누구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다. 더러 왜곡되더라도 당신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당사자인 내가 이게 진짜 나라고 보여주는 모습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 (중략) 내가 입을 열었는데도 당신이 여전히 똑같은 결론을 내리거나 더 부정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전한다.

장애재현에서 문화적으로 굳어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안, 확신을 담고 있을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장애인 성폭력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준을 알 수 없는 장애인다움을 고정화하고 피해자다움을 증명하는 묘사로 취약성을 강조하는 것에 갇히게 되면, 장애인의 삶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다. 장애인 성폭력 보도가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날카롭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 교육/토론

1) 교육

법으로 담아낸 장애인 인권

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작

1. 제정 과정

-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 2) 조직구성
- 3) 법안마련
- 4) 입법 발의 과정
- 5) 국회통과 및 시행과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의 의의

- 1)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
- 2) 장애계의 연대, 비장애계와의 연대
- 3) 인권에 대한 인식 강화

몸, 장애, 성적 권리에 대한 논의와 쟁점

I. 고민열기

1. 장애인극단 춤추는 허리, 공연을 마치고 난 후
2. 장애에 대한 통념과 차별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II. 몸 이야기

1. 다른 몸, 다른 감각, 다른 경험
2. 다른 몸에 대한 차별의 역사
 - 1) 홀리아 파스트라나
 - 2) 프리쇼
3. 다른 몸의 미디어 재현_미디어와 젠더
 - 1) 뉴스에 대한 오해
 - 2) 뉴스와 젠더
4. 다른 몸이 마주해야 하는 사회적 장벽
5. 몸과 비정상성

III. 장애와 성적권리

1.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 1)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뭐가, 왜 어려운가?
- 2) 그럼 발달장애인은 나와 대화할 때 뭐가 어려울까?
- 3) 일상에서 소통과 관계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위치

2. 성적권리 확보를 위한 관점의 변화

- 1) 소통의 취약성→소통의 일방성
- 2) 소통의 취약성→관계의 역동성

3.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섹슈얼리티

미투운동 2차 피해의 흐름과 쟁점언론의 재현 방식

I. 사회변화와 언론

1. 언론은 사회변화의 유일한 경로가 아니다.
2. 언론은 사회변화의 다양한 경로 중 일부분이다.

II. 빅데이터를 통해 본 관심, 인지, 참여

III. 사회운동의 단계

1. 변화될 목록 Challenge
2. 변화의 결과 Social Fiction
3. 변화할 전략 Strategy Map

IV. 언론과 나의 관계

V. 기사 분석의 틀

1. 분석, 혁신 <-> 백래쉬 고착
3. 피해자 사례증언 <-> 피해자 사례전시

탈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I. 시작하며

1. '탈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 무엇으로부터 '탈'할 것인가?

II. 원하지 않는 입소, 수용시설 왜 설립되었는가

1.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2.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3. 소록도, 형제복지원, 대구희망원, 인화학교
4. 발달장애인이 말하는 시설
5. 「수용소」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
6. 사회복지 수용시설 기원(영국 구빈원)
7. 「광기의 역사」 푸코
8. 한국의 수용시설 정책
9. 정상성과 수용시설

III. 장애인 탈시설운동과 정책 현황

1. 장애인 탈시설 운동 본격화

- 1)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2) 제 2차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3)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2018년 시행계획

2. 커뮤니티케어
3. 장애 분야의 예산
4.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5. 장애인 탈시설운동의 주요 쟁점

IV. 탈시설, 장애인만의 의제인가? : II과 젠더 포럼 「교차성의 관점으로 시설화를 비판하기, 탈시설 운동을 전망하기」

1. 1차 간담회 - 각 영역과 현장에서 드러나는 시설수용의 현황과 문제점 공유
2. 2차 간담회 - 어떠한 권리로 시설화에 맞설 것인가 / 운동으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II과 젠더포럼 : 「교차성의 관점으로 시설화를 비판하기, 탈시설 운동을 전망하기」

2) 토론

출처 | 성적자기결정권을 넘어서 - 정희진

1) 1장 : 젠더와 공간

- 여성‘개발’원의 의미를 처음 알게 되었음. 시민감시단 사업 지원명도 여성‘발전’ 기금이었음. 자료와 같은 문제의식이 공론화되면서 성평등기금으로 변화.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평등도 성평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 존재
- 남자들이 거식증 걸리는 것을 본 적 없음
- 제노사이드 현상. 상대국 여성을 성폭력해서 인종자체를 말살시키는 방식
- 남자는 발. 여자는 씨. 여성주의 접하기 전에는 문제의식 없었음. 문제적으로 인식해도 ‘난자도 독립된 씨’라는 것을 대안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음. 세뇌가 무서움. 정자가 난자를 정복. 정자는 적극적. 난자는 소극적 이미지로 영유아 성교육 교재에 나옴. 난자도 공간으로 점유되는 대상
- ‘거식과 폭식은 남성문화가 규정한 여성 몸의 경계화된 공간을 돌파하려는 욕망’이라는 문장의 의미? 맞춰야 하는 강박이 생기다보면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폭식이 생김. 따르지 않으려는 욕망. 몸을 소멸시킴으로서 이긴다는 개념. 고차원적 의미
- 거식, 광장공포 등을 강간같은 위협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낯설었음. 집 안과 밖 모두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음. 일상의 불안과 공포. 몸을 긴장, 축소 등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려고 함. 여성은 공간을 확보하기 힘들. 여성의 임금이 낮아 주거공간도 열악하고 위협.

2) 2장 : 공간과 시간, 몸과 마음, 여성과 남성

- 1장은 여성의 몸, 공간에 대해 언급. 2장은 그 내용을 이분법적으로 다룸
- 이분법적 분류 「마음(남성)/몸(여성)」 중 동의되지 않는 부분 있었음 예) 형식

/질료, 깊이/표면, 초월/내재 등

- 안/밖에서 안은 주체(남성), 밖은 타자(여성)
- 남성은 문명화 주체, 여성은 대상화
- 시간, 본질, 기원 추구 남성 중심적 사고. '우리나라의 6,70년대 같다' 남성 중심적 사고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됨. 여성주의는 차이, 흔적 중심으로 사유한다는 지점이 인상적
- 문명을 시간의 개념으로 인식. 이런 사고에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음.

3) 3장 : 그릇 대 내용물의 공간 개념과 여성의 몸

4장 : 공간으로서의 여성의 몸과 성폭력

- 공간과 사물을 분리하는 개념(남성 중심적 사고)으로 흘러왔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 문제적. 공간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대상화, 추상화. 예) 아줌마-아기주머니가 어원
- 공간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공간. 공간개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
- 여성이 근대와 진보를 표상하는 이미지로 구성됨. 예)남성-양복(보편성), 여성-한복
- 흑인, 장애여성 흠결 있는 이미지. 강간(순결한 영역을 침범)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
- 전쟁 상황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대상화되는지 극명하게 서술
- 일본 위안부 문제도 민족주의와 연결되었을 때 여성인권의 문제 축소. 남성과 남성간의 권력관계 안에서 상대남성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방식

4) 5장 : 몸, 객관성,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

- 성적자기결정권, 피해자 중심주의 다른 맥락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새로웠음. 마틴 주커 판사의 판결문(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했는가)에 대해 고무적이다

라는 여론 형성.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보게 됨. 성폭력 사건을 개인-개인의 동의여부로만 구성할 수 없음.

- 낙태죄 폐지 구호 ‘내 몸은 나의 것’. 선택권의 문제로만 주장할 수 없는 다른 맥락들. 행사할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 사고체계가 복잡해져야 하는데 한국사회는 너무 단편적.

5) 6장 : 성적 자기결정권의 공간 논리를 넘어서

-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것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형성된 결정. 선택의 과정으로 몰린 건데 ‘네가 선택한 것 아니냐?’로 잘못 사용될 수 있음. 선택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봐야 하는데 개인의 선택으로만 축소
- 작년 모니터링 했던 하은이 사건의 경우, 돈 받은 행위 하나로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로 단편적 해석
- 종교적 신념으로 낙태를 하지 않기 위해 본인 상황을 구성하는 것은 정말 원하는 선택인가?
- 까칠남녀 데이터 분석가의 주된 논리도 개인의 선택권. 내 몸은 내 것이다. 피임방법의 경우, 여성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피임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는 논리. 선택권이 존중받는 다는 느낌보다 남성중심성의 폭력으로 느껴짐
- 판사들도 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하게 인정. 가해자는 장애여성 길들이기를 통해 위계, 권력관계 형성하고 성폭력 상황을 구성. 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협소하게 해석. 성폭력으로 구성되기 힘든 맥락
- 10회의 성관계 중 1회의 성관계가 성폭력이어서 신고했던 사건. 피해자 책임론과 필요할 때는 성관계이고, 싫을 때는 성폭력이라고 주장한다는 식의 피해자 의도성만 주요하게 부각. 꽃뱀 논리. 의도성이 아닌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
- 피해자를 보는 시선조차 남성적 시각으로 구성. 여성 안에서도 남성적 시각 공유. 성적자기결정권 정교하게 적용하지 않음. 삽입직전 거부할 수도 있음. 처음에 동의했기 때문에 전체 상황 모두를 동의한 걸로 규정. 상황과 조건은 예민하게 변동. 한순간 성폭력으로 변질 될 수도 있음
- 여성이 대안적으로 제시했던 운동조차도 남성 중심적 방식에 근거해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 안타까웠음. 교차성, 복합적 맥락으로 사고하려는 것이 있어서 다행

-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에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파생되는 무력화, 긴장성 부동화. 자포자기 상황에 대한 맥락 설명. 재판부는 맥락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함
- 수사기관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 사고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음
- 피해자 중심주의 작동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입증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한계 등 알게 되었음

출처 | 장애여성운동, 15년동안의 사고 - 장애여성공감

제 1장 몸과 비정상성

- 몸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주제. 몸과 섹슈얼리티가 만나는 지점 집중
- 1990년대 이전까지 몸에 대한 이야기 나온 적 없고 금기나 통제 중심. 몸이 사회, 제도와 연결되는 주제라기보다 개인적인 영역. 일상에서 주요주제 아니었음.
- 여성운동에서도 여성의 몸이 성적으로 대상화된 지점에 대한 담론은 있었지만 장애여성의 몸에 대한 담론은 부재
- 2000년대 이후 건강한 몸에 대한 주제로 확산. 외모적인 부분이 개인이 가진 능력, 자원 개념으로 인식
- 장애, 질병을 주제로 몸에 대한 담론 외국에서 사회적으로 다뤘던 경우 있었음. 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 한국에서는 몸에 대해 극복해야 할 문제로만 다뤄짐.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지 못하였음.

1. 내용과 쟁점

1) 나의 몸에 대한 인식, 몸에 대한 주체성

- 몸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 실제로 나의 몸 구석 구석 들여다보기. 내 몸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들고, 마음에 드는지 등. 내 몸에 대한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나눴던 경험 없음. 공동으로 나누면서 용기, 자유를 느낌
- 장애를 가진 몸에 대해 한정해서 이야기 했지만 비장애인이 느끼는 몸의 경험도 연결. 스스로도 몸을 혐오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자존감을 낮게 만들.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스스로 몸을 보고 싶지 않은
- 나의 몸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고 새롭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몸에 대한 주체성을 고민하는 것으로 이어짐. 장애를 가진 몸의 경우, 전문가의 손에 의해 몸이 등급으로 매겨지는데 스스로 인식하여 나의 몸으로 가져오는 시간 중요. 몸에 대한 주체성을 키워가는 과정의 의미

2) 몸과 섹슈얼리티

- 월경에 대한 이야기. 여성의 공통 이야기. 월경, 출산 등 여성의 몸에 대해 기능적으로 접근. 비장애 여성에게는 기능 강조하는 반면 장애여성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가치, 무성적 존재로 인식. 월경에 대한 두려움 나누기 진행. 장애여성은 월경이 섹슈얼리티를 경험하는 주제이지만 가족, 보조인과 공유하면서 수치스럽고 끔찍한 경험으로 남음
- 몸과 섹슈얼리티가 불편하게 만나면서 섹슈얼리티 인식 방해, 장애가 있는 몸은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몸이라는 사회적 인식
- 자위, 연애, 섹스, 성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기. 나의 몸에 맞는 자위, 도구 고민. 장애인의 성은 금기시하거나 과도하게 발달되어있다는 편견

3) 비정상적인 몸

- 정상적인 몸에 대한 기준 협소. 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비장애여성 조차도 정상기준으로 힘들어하고 있음. 트랜스젠더, 노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 모두 정상성에 대해 도전받는 문제
- 정상성과 자본주의 사회의 외모 권력 등 지양해야 하지만 지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개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쉬운 문제 아님. 주변에서 신경 쓰는 분위기 매우 강력. 혼자 신경 안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키, 브라, 겨드랑이 털 등 여성에게 강요하는 꾸밈노동 너무 많음.

4) 몸의 차이

- 건강한 몸과 강한 체력 요구하는 사회. 여성주의에서도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성이 주요한 상이다 보니 독립적, 진취적, 자기주장하는 여성상이 또 하나의 기준으로 존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 개인 몸의 차이라는 것이 있음
- 원하는 만큼 일을 해낼 에너지가 없는 점. 나의 몸 상태에 대해 공적 자리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이 과도하게 노동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약한 존재

로 비취지기 때문에 하지 못함

- 몸의 차이 어느 정도인지 그로인해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얘기해야 함. 장애-비장애 이분화되어 있는 경계 비판하면서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하는 것이 의미있음. 몸의 경험들은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음. 개인의 사적영역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함
- 몸이 가진 한계 인정하면서 건강하지 않더라도 사회로부터 자신의 원하는 활동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것. 몸과 맺는 관계는 매우 복잡

5) 보여지는 몸

- 목욕봉사, 의학계의 연구 대상 등 장애인의 몸은 시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많음. 외부에 전시 될 때 장애에 대한 공포를 노림. 여성의 몸도 불거리로 보여지는 대상

2. 고민과 과제

1) 몸에 대한 통제

- 장애운동에서의 근본적 지향점은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의 문제. 정상성, 이상적인 몸 상정해 놓고 벗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벗어났는지 측정하고. 지원의 기준이 되고, 비정상성, 무능력함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

2) 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 질병, 장애를 이전에는 구분했는데 이런 구분이 얼마나 유효한가. 장애인의 경험, 환경도 고려해야 하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라고 특수화시키는 것도 경계
- 비슷한 몸의 경험을 겪는 사람들과 연대. 다른 몸의 경험, 환경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

3. 소감나눔

- 장애인으로 차별경험은 없지만 다른 몸이어서 겪는 경험 있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애-비장애 구분지을 필요가 있을까. 모든 몸이 다르고 정상성이 해체되

면 장애-비장애 나누기 힘들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장애이고 어디서부터 비장애인인가. 차별적인 환경 이야기 할 때 장애는 유효한 말

- 장애와 비장애 구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표현 불편. 모든 사람이 하나일 필요없고 개인의 존재가 존중받으면 될 문제. 공동체성으로 강요되어 묶는 맥락도 있음. 차별의 구조, 경험 삭제. 남녀가 지금은 평등해라는 맥락과 연결. 장애, 성소수자, 여성 등 차별받는 조건, 위치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함

- 한국사회는 정상적인 몸, 이상화된 몸이 매우 협소. 필리핀의 경우, 생물학적 남성인데 여성처럼 보이고. 트랜스 젠더, 장애인, 생물학적 여성들이 부치 스타일로 돌아다녀도 신경쓰지 않는 문화. 자연스럽게 체형도 다양. 몸 뿐만 아니라 학벌, 나이, 경제력, 결혼 유무 등 규범이 너무 많음

- 동부지방법원 다녀왔을 때, 판사석 휠체어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 공간구성은 모두 비장애인 중심. 장애인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 소름 끼침

- 어떤 사람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내려가는 것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 계단으로 가야 운동된다는 이야기. 최상위 혐오는 삭제

6. 소감글

1) 활동소감

시민감시단 **이주영**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어느새 혼자 열을 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다. 그저 포털의 메인에 뜨는 뉴스나 수동적으로 보던 내가 이제는 검색어창에 <장애인, 지적장애, 성폭력> 등의 검색어를 넣어 다음 포털 구석구석에 있는 뉴스를 찾아서 보고 있다. 일상을 살면서 일어났었는지도 몰랐던 사건들, 또 한 때 떠들썩했지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내 시선 안으로 들어온다.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주부로, 또 비장애인의 집단에서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의식하지 못했던 일들이 장애여성공감의 <시민감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조금씩 나의 마음에 다가왔다. 겉으로 보면 예전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졌다고나 할까?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변화나 소감을 말해보려고 한다.

가장 큰 변화는 뉴스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다. 매일 아침 다음포털 메인의 뉴스는 훑어보고 바로 검색어 창에 <장애인, 지적장애, 성폭력, 성폭행>의 검색어를 써보곤 한다. 사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메인에 잘 뜨지도 않고 또 기사도 많지 않다. 살펴보지 않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또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도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검색은 필수다. 관심을 가지고 뉴스와 정보를 찾아보아야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시선 안으로 들어온다.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두 번째로는 기사를 읽으면서 뉴스의 그림 자료(삽화나 사진), 광고, 댓글까지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다. 그전에는 그저 텍스트나 읽고 지나가던 뉴스지만 이제는 그림 자료와 그 기사에 딸린 광고까지 매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 시민감시단 활동

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뉴스의 삽화가 문제가 많다는 거다. 심한 경우 성폭력 사건을 마치 선정적인 콘텐츠인 듯 제공하는 미디어도 많다. 성폭력 사건 삽화에 피해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성적 대상으로 그려지고 그 기사의 팝업 광고에는 정력에 좋다는 상품들이 줄줄이 달려온다. 선정적인 기사에 따라가는 선정적인 댓글까지 가세하면 2차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피해자에게는 일어나면 안 될 너무나 힘든 사건이 일부 미디어에게는 그저 야한 이야기꺼리로 취급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분노를 넘어서 슬픔이 느껴지곤 한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본다는 거다. 기사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해서 분노 게이지를 올리다가 나는 어떤가를 살펴보게 된다. 사실 그 기사를 쓴 기자 역시 큰 악의를 가지고 나쁘게 쓰려는 것은 아닐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애’와 ‘성폭력’에 대해 관심이 없고 모르다 보니 편견과 오해로 범벅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잘 모른다는 것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고(심지어 편견에 가득 찬 채) 기사를 쓰고, 주어진 기사를 수동적으로 읽고(심지어 편견에 가득 찬 해석을 하고) 장난삼아 댓글을 다는 행위가 장애인 성폭력 사건보다 더 큰 2차 피해를 만드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 사실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일은 상관없는 남 일처럼 느낄 수 있다. 나 역시 장애여성공감을 통해 장애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마치 세상에 없는 일인 듯 느끼기도 했었다. 하지만 장애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나누어 선을 긋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결국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돈이 많거나 적고, 정규적이거나 비정규적이거나, 직업이 있고 없고, 남자나 여자나, 키가 크고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등등 이분법적 사고로 보면 세상은 나눌 게 너무 많다. 나 역시 비장애인이지만 어느 잣대에서는 하찮다 오해받는 소수에 속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

누구나 편견과 오해로 쉽게 나를 판단하면 싫고 힘들다. 내가 편견으로 판단 받는 게 아프다면 나 역시 누군가를 편견과 오해로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장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은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같다는 것, 그것이 시민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다.

시민감시단 김다정

매번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하고 집에 가는 길이면, 활동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새로고침'은 '불편한 기사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새로고침' 해보자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이 활동은 나를 새로고침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활동 속에서 나는 내가 느끼고 있던 불편함, 내가 가지고 있던 식견, 내게 부족했던 용기를 새로고침 해볼 수 있었다.

나는 몇 년 전 페미니즘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담론, 그리고 인권 감수성에 대해 새로이 눈을 뜬 이후 여러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기사 속 왜 여자는 성별이 표시되고, 남자는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꼭 사건을 자극적으로 묘사해야 하는가,' '왜 항상 여자는 이리이러할 것이라고 특성을 부여하는가,' '왜 항상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로 그리는가,' 등등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을 정도로 불편해 하고 있었다. 특히 기사를 통해 사회 이슈를 접할 때마다 그리고 그 기사 댓글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읽을 때마다 많이 불편하고 괴로웠다. 이러한 불편함들은 어딘가 표현할 곳도 없고,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아도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활동은 느낌으로만 존재하던 불편함을 실제 행동으로 새로고침하는 기회가 되었다.

기분으로만 존재하던 불편함을 행동으로 승화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도 내가 새로워지는 부분이었다.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매달 모니터링 모임 때마다 들을 수 있었고, 실제 활동가분들의 생각과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중간중간 교육의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정제된 지식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덕목으로 인권감수성이 필수가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공공분야는 물론 기업들에게도 요구될 것이고, 그 구성원들도 갖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인권감수성을 보다 넓고 깊게 키울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 활동을 하

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점검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사회에 어떤 역할로 기여할 수 있을지, 사회속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번 활동에서 새로 정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내 역할은 무엇일지, 그리고 또 추후 취업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한 가지 부분에서라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특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여러 특성이 겹쳐질수록 약자성이 더 드러나고, 적을수록 덜 드러난다 뿐이지 모든 부분에서 강자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속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도 배우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란 사회에서 약자로 규정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저 조금 다를 뿐, 다른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또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인권 감수성이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인식 전반에 뿌리내리려면 사건을 전하는 통로인 기사의 역할이 아주 크다. 그러므로 이번 모니터링의 활동이 좀 더 널리 알려지고, 이 활동을 통해 불편한 기사가 줄어들기를 바란다.

시민감시단 김소희

시민감시단으로서 활동한 지 반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의 부족한 장애 감수성을 깨달아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감시단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 사실 토론이라기보다 제가 일방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이었습니다 - 다른 감시단님들의 고견을 들으니 제가 가지고 있던 관점이 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이고 자극적인 언사가 난무하는 언론 현실에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언론학도로서 기사에서의 단어 선정, 문장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익히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고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언론이 장애에 대해 이리도 차별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었는지 몰랐고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되니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언론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지 주의 깊게 돌아보지 않았던 과거의 저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장애 감수성을 배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민감시단 활동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장애 및 장애인이 사회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위치하고 있었는지 깊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감시단으로서 활동하면서 장애를 둘러싼 권력구조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한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작은 불편함의 힘을 느꼈습니다. 부적절한 기사에 대응 메일을 보내는 대응팀에서 활동하면서 - 비록 제가 보낸 대응 메일에 답장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 대응 메일에 대한 기자님들의 답장을 보면서, 감시단님들의 생활 속 감시 활동에 대한 사회의 리액션들을 보면서, 1인 시위에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시민들, 기자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하고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들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을 했던 것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사회는 조금씩 바뀌어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알량한 정의감 따위로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거듭할수록 저는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더욱 작은 자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서의 활동은 저의 인격적 도야를 이끌어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감시단 박세원

처음 장애여성공감에서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을 때, 나는 장애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은 상태였다. 그 누구도 이를 수 없는 정상성을 만들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비정상에 낙인을 찍는 세상이 너무 지긋지긋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는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존재 자체로 비정상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더하고 싶었다.

모니터링을 시작할 땐 두려움이 앞섰다. 처음 해보는 모니터링을 잘할 수는 있을지, 혹시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그러나 사람들과 모니터링한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 보다는 즐거움이 앞섰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배제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기사들은 이러한 혐오에 맞서기 보다는 이를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모니터링 할 기사를 찾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모니터링할 기사들은 슬프게도 넘치고 넘쳤다. 게다가 기자님들로부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답장을 받거나 일상생활에서 감시단들이 모니터링한 내용들이 시정될 때는 감시단으로서 하는 일들이 조금이나마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달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바뀌지 않고 계속되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시선에 낙담하기도 했다. ‘이런 세상이 언제쯤 바뀔까?’ 라는 생각들이 때면 힘이 빠지기도 했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장애를 극복’ 했다는 표현이나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동정하는 시선들이 한 번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언젠가는 장애를 비정상적으로 낙인찍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했기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두 번의 교육은 장애인권에 대한 스스로의 감수성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함께 장애인권에 대한 글을 읽고 이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들도 모두 소중했다.

장애여성공감에서 시민감시단으로서 했던 활동들은 내 안의 타자화를 경계하며 비정상과 정상의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무너뜨리는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담은 기사가 거의 없어서 모니터링을 할 만한 기사를 찾는데 어려

움을 겪는 시민감시단의 미래를 상상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가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

2) 교육 소감

시민감시단 김연아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장애여성공감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한지 횡수로 2년째인 지금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할 권리가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기사에는 장애인이 자극적인 소재로 쓰여 인격권이 무시되고 있다. 시민감시단 활동을 함에 있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좀 더 알고 활동 할 수 있는 계기로 본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장애인의 삶 보기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탈시설화 등의 주제와 장애인 인권을 다루는 기사 내용을 볼 때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의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탈시설에 대한 자료가 상영될 때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선택적인 거주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보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을 느꼈다. 탈시설 기본계획이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기도원이나 정신병원의 수용 인원을 뺀 수치로 시설이용자가 3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수용시설 공간에서의 자유가 주어져야 함을 사회가 공감하지 못하고 장애인 수용시설을 빼놓고는 장애인 인권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은 인권의 사각시대이며 최전선의 공간이다.

강사는 교육의 서두에 차별에 대해 물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반적인 것을 다르게 대해주는 것, 다르지 않는데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또한 수용되지 못하는 것, 다른데 그 다름을 어떻게 대하는 가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강사는 차별을 사전적 의미로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과 차이점을 이유로 배제시키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차별을 사용하는 것,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로 정의하였다. 차별이라고 얘기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장애인, 임금, 성, 지역, 나이, 능력, 학벌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렇듯 차별을 말할 때 다양성이 논의 되는 것은

차별이 특정인에 한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삶의 모든 과정 중에 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권의 가장 큰 원칙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언제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차별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의 상황에 놓이지 않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차별받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차별을 장애인 한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장애만을 집중 조명하지 말아야 하며 인권침해 전반적인 발견을 통해야만 더 깊이 있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차별의 예시로 초등학교 수업 중 기준 점수 미달 학생은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것이 차별인가 아닌가가 논의 되었다. 법리적인 판단으로는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과 학업이 부진한 학생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하면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미성숙하지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단순할 것 같은 주제가 차별이라는 의미 부여가 되니 다양한 의견들이 거론 되었다. 경험에 비추어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는 획일적인 교육 방법이 차별을 키우고 있구나 라는 회의가 들었다. 강사는 예시를 분명한 차별이라고 하였다. 차이를 가지고 다른 대우를 하는 것, 기준 점수 미달일 경우 남고, 이상일 경우 가도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 차이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느냐가 판단기준이 되어야한다고 하였다.

다른 대우는 차별이며 차별을 느낄 수도, 차별이라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판단을 못하는 상황 등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기준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차이는 명확하게 다른 점, 그러나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교육방법, 학습량 이지만 결과가 다른 것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보는 시각을 키워야함이 강조 되었다.

차이는 다른 점, 차별은 다른 점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면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일까. 편견과 선입견은 확인되지 않은 생각,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갖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라고 정의 하였다. 강사는 차별과 선입견의 다양한 예시를 들며 끝으로 청각, 시각, 발달, 뇌병변, 정신장애 등 15개 장애 유형별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고민이 이뤄지는지 그 중 청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에서 금지해야 할 것과 제공해야 할 것을 감시단원들이 직접 의논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았다.

청각장애의 경우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10% 정도이며 대부분은 구화로 소통함으로 정규 교육 중 타이핑 해주는 활보가 필요함과, 영화 감상 시 한국 영화에는 자막이 없음을 지적하고 정치참여, 문화생활 전반에 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활동보조, 시스템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길거리 괴롭힘, 관계 맺기의 어려움, 1:1 맞춤 교육의 부족, 생활 연령이 존중되지 않음이 논의 되었다. 판단과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현실과 발달 장애인이 성적인 존재로 인정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였다.

탈시설화에 대하여 더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강사는 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몸소 겪는 위기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혁신 되어야 하는 문제점 들을 얘기하였다. 시민감시단원으로써 제대로 고민하고 삶속에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장애, 비장애가 기준이 아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권리 균등한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감시단 심현지

우리의 뇌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뇌신경 세포의 수는 100억개, 1000억개 뉴런, 100조의 시냅스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뇌는 전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적은 정보만을 이용하죠.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첫인상이 한번 각인되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기사의 첫인상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바로 헤드라인과 썸네일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받아들일 때 처음 읽은 기사의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이 나눈 대화 보니...> 뭐하니”, “거기 있니...>라는 제목과 사건의 ‘두 등장인물’의 사진을 나란히 둔 사진, 웹툰의 광고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안희정 지사 성폭행 사건 기사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한 독자는 ‘하나의 은밀한 스토리’ 같은 사건의 첫 인상을 뛰어넘어 ‘성폭행 사건’으로 인식하기 쉬울까요. 애석하게도 성폭력 통념은 너무 견고하고, 이 통념을 깨지 못한 독자는 기사의 첫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함께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회원이 말합니다. “안희정 사건 피해자는 왜 지금 나와서 난리야?” 라고요. 가족이 말합니다. “요즘 미투는 다 정치공작이지” 친구가 말합니다. “누드사진 찍고 돈 받았는데 왜 성추행이야? 다 알고 갔으면서”. 피해자를 의심하는 것은 성통념에 갇힌 언론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의 시민감시단으로서 ‘최소한의 노동’으로 잘 설명하는 방법은 항상 탐구 대상입니다. 최소한의 노동으로 설명하려면 ‘기사를 잘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을 막 시작한 후 기자들을 설득할 만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눈이 뱅글뱅글 돌던 때, 한국성폭력 상담소 오매님의 강의는 가뭄에 내린 비 같았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미투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직접 검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강의는 기사를 ‘분석, 혁신, 피해자 사례 전시, 피

해자 사례 증언'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내가 찾은 기사가 4가지 중 어디에 배치되는지, 배치 후 이상적인 기사가 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의심하는 '피해자 사례 전시'에 대한 금지 조항, 또 '피해자 사례 증언'과 관련된 '피해자 생존자 권리 헌장'을 통해 감시활동에 대한 근거가 탄탄해 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민감시단은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합니다.

Ⅲ 발제

언론보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쟁점 분석 및 제언

발표 :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언론보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쟁점 분석 및 제언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기사 흐름을 통해 본 한국사회

2018. 7. 11일, 다음 포털에 <특수학교 교사 수년간 제자들 성폭행 의혹...경찰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처음 올라왔다. 그 이후 15여 일 간 <수년간 괴물교사에게 당했다" 태백 장애학생 성폭행 진상규명 요구>, <태백 특수학교 교장 사망, 의문의 사망 유서는 발견되지 않아...> 등 관련 기사가 대략 200여건 올라왔다. 여론은 들끓었다. 7.16일 <강원도 내 특수학교 성폭력 여부 전수조사>, 7.18일 <교육부,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등 강원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전국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7.26일 <장애여학생 성폭행 특수학교 교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끝으로 더 이상의 기사는 올라오지 않았다.

위 사건은 언론이 형성한 여론을 바탕으로 전국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라는 정부의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어낸 적절한 대응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사실 보도에 있지 않다. 진실을 보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헤침으로써 대안적인 여론 형성과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 언론은 200여건의 기사를 쏟아내고, 교육부는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사건에 대해 어떠한 본질을 파악하고 대안적인 여론을 형성했을까? 기사는 대체로 제목만 바뀌거나, 자극적인 피해정황 및 인터뷰 몇 줄 추가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복사되었을 뿐이다. 심지어 교육부는 전국단위의 전수조사(장애여성공감이 외부위원으로 참여)를 한 명당 10분 정도의 면담시간과 성폭력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매뉴얼 질문 몇 개만을 가지고 8월말~9월 초에 걸쳐 진행하였다. 사건은 빠른 가해자 처벌과 형식적인 전수조사로 끝이 났다.

2018.8.20일 <같은 마을 사는 지적장애여성 상습 성폭행한 7명의 노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처음 올라오면서 이슈는 다시 넘어갔다. 이 사건 역시 8.22일까지 <지적장애 성폭행 노인, 집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 <지적장애 성폭행 노인, 5년간 극악무도한 만행 ‘충격’> 등 관련 기사가 50여건 올라왔다. 8.22일 <지적장애 성폭행 노인 7명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로 끝이 나는가 싶었는데 8.24일 <폭주하는 한국노인들..고령범죄 5년새 45% 증가>, <폭주노인>이라는 제목의 후속기사가 올라왔다. 가해자는 한 마을의 남성들이었지만 언론은 ‘노인’이라는 다른 위치성을 부각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벗어났다. 이 사건은 ‘노인’ 범죄에 대한 새로운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위와 같은 기사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아니 어떻게 특수교사가 지적장애인을, 노인들이 집단으로 지적장애인을”과 같이 가해자를 괴물화하는 집단적 공분만을 일으켰다. 그리고 위 사건들은 가해자가 검찰송치, 구속(실제 제대로된 법적 처벌이 되지 않은 상태)만 되면 더는 관심없는 그 무엇이였다. 학교, 마을이라는 공동체, 일상의 공간-친밀한 관계안에서 폭력은 왜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왜 낮은 위치의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까지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것을 가능(용이)하게 했던 사회 구조, 공동체(학교, 마을) 문화는 무엇인지 등 어떠한 본질 파악도 질문도 던지지 않았다.

2. 모니터링을 통한 쟁점 분석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이하 시민감시단)은 2016년에는 2012년부터 5년간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였고, 2017년부터는 장애인 학대-미담-기타 기사로 주제를 확장하여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더불어 길거리 홍보물, 유아교재, 지역 행사장 등 사회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나 통념들에 대한 일상생활 모니터링도 진행하였다.

언론보도와 일상생활 모니터링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에서 2014년 제작한 [성폭력사건보도수첩]과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에서 2011년 제작한 [인권보도준칙]을 기준으로 장애와 젠더 관점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분석한 쟁점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언론보도

가. 장애인 성폭력/학대 관련 기사

쟁점 1. 장애인을 무능력, 취약한 존재로 극대화하여 표현

○ 기사내용

장애인 성폭력 관련 기사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7.3.3일자	SBS	B씨는 <u>사리 분별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u> 신고할 생각을 못 했고
2	2017.3.23일자	노컷뉴스	<u>몸 못 가누는</u> 장애인, A씨가 <u>평소 문단속을 잘하지 못한</u> <u>다는 점</u>
3	2017.4.7일자	매일신문	피해자가 <u>지적장애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점</u> 을 이용해
4	2017.4.19일자	파이낸셜 뉴스	발달장애인들은 <u>판단력 부족에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져</u>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 <u>의사소통이 문제, 대처능력이 떨어져</u>
5	2017.6.13일자	뉴시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u>인지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u> 범죄 피해 또는 인권침해에 취약한 편
6	2017.10.29일자	메디컬 투데이	<u>그대로 당하고</u> 있었다, <u>소극적 대응</u> 이 대부분이었다
7	2018.4.18일자	헤럴드 경제	외모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u>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u>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8	2018.5.5일자	경향신문	“ <u>지적장애가 있으면 성폭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u>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9	2018.6.22일자	KBS	제 나이보다 <u>지적 능력이 떨어지는</u> 발달장애 3급입니다. 발달 장애 여성은 <u>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u>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힘듭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문제적 표현 : ‘고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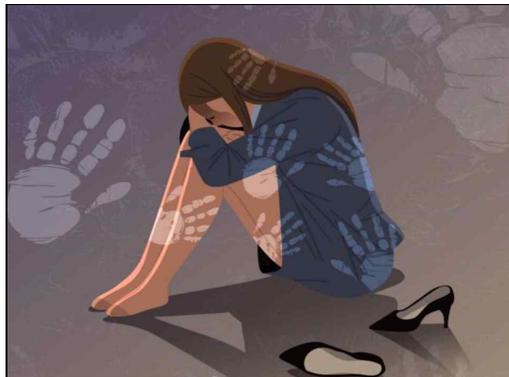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6.12.2일자	문화일보	기사제목 : 재가 지적장애여성 5717명 성범죄 노출
			세계 장애인의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범죄에 취약한 국내 <u>고위험 재가(在家) 지적장애인</u> 이 5700명에 달하는 것
2	2017.5.12일자	포커스 뉴스	기사제목 :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 협약식 개최 <u>고위험군인</u>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3	2017.5.25일자	NPS통신	기사제목 : **경찰서, 고위험군 가정방문 점검 지속적으로 <u>고위험군 가정</u> 을 방문하여 사전에 범죄활동을 차단하고 범죄신고 교육을 강화해 나갈
4	2017.10.23일자	전주일보	기사제목 : **경찰서, 재가여성장애인 CCTV 지속설치 추진
			**署, 在家여성장애인 CCTV 지속설치 추진, 엄격한 대상자 심사 를 통해, <u>공정하게 선정</u> 해 소외가 되는 지적장애여성이 없도록

장애인 학대 관련 기사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7.4.12일자	웰페어 뉴스	재관부는 “ <u>원고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일상에서의 간단한 작업, 사회생활, 의사소통 등의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 등을</u> 감안할 때

2	2017.4.20일자	TV조선	특히 <u>의사 표현이 서툰</u> 발달 장애인들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3	2017.4.23일자	YTN	상대적으로 <u>판단능력이 떨어지는</u>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4	2017.5.4일자	헤럴드 경제	[<u>두번 우는 장애아동</u>] 시설 맡겨진 장애아동들 되레 범죄에 노출
5	2017.5.4일자	헤럴드 경제	신 씨는 <u>통장 관리가 어려운</u> 장애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점을 범죄에 악용했다.
6	2017.7.20일자	한겨레	피고인 송씨는 <u>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u>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7	2018.4.25일자	국민일보	학대 과문 그때뿐... 인화학교 사태 7년, <u>여전히 우는 장애인들</u>

삽화





○ 비판적 분석

위의 내용을 보면 ‘판단력과 인지력이 부족한,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대처 능력이 매우 미숙한, 평소 잘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전히 우는’과 같은 표현은 성폭력-학대 기사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사용된다. 객관적으로 장애 특성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여 기자들이 작성 방식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위의 설명이 과연 장애에 대한 객관적 설명일까? 설명,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장애특성이라 하더라도(전혀 그렇지 않지만) 성폭력이나 학대 사건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일까?

위와 같은 서술은 대중으로 하여금 범죄피해가 인지력이 부족한, 대처능력이 미숙한 장애특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는 편견을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장애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고정되어 각인(학습)되기 쉽다. 교육, 노동, 사회적 관계, 권리 인식,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 권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통제, 배제의 문화가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의사소통, 대처방법, 판단력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관점은 사회 구조의 불평등함이 아닌 개인의 무능력함으로 책임을 돌리는 위험한 사고를 강화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위의 설명 방식은 범죄 원인을 피해자가 밤 늦게 돌아다녔다거나, 제대로 저항하지 않아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등 피해자의 저항유무, 책임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성폭력 통념과도 연결된다. 즉, 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은 장애와 젠더 불평등이 ‘장애다움’과 ‘피해자다움’의 형태로 교묘하게 얽혀서 작동된다. ‘장애다움, 피해자다움’을 강화하기에 위의 삽화들은 매우 임팩트 있다. 실제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사용한다. 그래도 요즘은 삽화-이미지 사용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법원-경찰 사진이나 가해자 중심으로 삽화가 교체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삽화 관련해서는 쓰지 말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p.s ‘고위험군’

언론은 공공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로 정책홍보 형식의 기사를 작성하기도 한다. 그 중 지역 경찰청이 지적장애여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정책홍보 기사

를 보고 매우 분노하였다. 지적장애여성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CCTV를 설치하고, 가정방문을 간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여성을 언제든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낙인, 차별, 통제의 기제로 작동된다. 심지어 언론기사는 고위험군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겠다는 경찰서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선정기준은 분명 얼마나 무능력하고 취약한지를 선별하는 방식일 것이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여성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은 선정과정, CCTV, 가정방문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보호’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인권침해적이다.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해 언급한 기사에는 어떤 질문도 문제의식도 없었으며 보도자료 그대로 여과없이 홍보하였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한다면 고위험군이라는 용어가 장애여성을 극도로 취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편견을 강화하고 있지 않은지, 시행 과정에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은 실효성은 있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쟁점 2. ○○이 사건, 도가니, 노예 등 자극적 네이밍 사용

○ 기사내용

장애인 성폭력 관련 기사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7.3.7일자	세계일보	소녀가 떡볶이를 얻어 먹고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u>‘하은이 사건(떡볶이 화대사건)’</u>
2	2017.4.4.일자	매일경제	<u>‘서울판 도가니’</u> 장애인 폭행·성추행한 사회복지사 풀려났다
3	2017.6.6일자	노컷뉴스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u>‘도가니 피해자의 눈물’</u>
4	2017.8.4일자	중앙일보	12세 소녀와 이동복지교사의 동거 ... 현대판 <u>민며느리</u> 논란

5	2018.7.13일자	조선일보	강원판 '도가니' 되나...특수학교 교사, 제자 성폭력 의혹
---	-------------	------	-----------------------------------

장애인 학대 관련 기사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7.5.24일자	웹페어 뉴스	염전 노예 피해자, '농촌일당의 60%만 배상' 판결
2	2017.6.5일자	노컷뉴스	'토마토 노예' 50대 마을이장 향소심서 집유로 감형
3	2017.8.2일자	인사이트	지적장애인 부부를 30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까지 한 못된 이웃
4	2018.5.4일자	국민일보	[현대판 노예 이대론 안된다] 장애인 추적관리 절실... '노예'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5	2018.5.20일자	대전일보	지적장애인 '식당 노예'처럼 일시킨 악덕 주인
6	2018.5.23일자	충청투데이	지적 도심서도 '현대판 노예' 근절되지 않는 이유 뭔가
7	2018.7.15일자	국민일보	"우리는 일부분" 단속 피하려 <u>염전노예</u> 와 거짓 혼인

○ 비판적 분석

한국사회 여론을 뒤흔들었던 심각한 사건 하나가 터지면 언론은 그 사건에 이름을 붙인다. 장애인 시설에서 장기간 학대와 성폭력이 발생했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던 영화 '도가니'의 이름이 사용되었다. 서론에 언급한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은 강원판 '도가니'로 불리웠다. 지적장애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준 떡볶이를 화대라 칭하며 '떡볶이 화대' 사건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장애인 학대 사건의 경우 대표적이면서 유일한 네이밍이 '노예'이다. 2014년 신안 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염전 노예'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사건 기사는 모두 '노예'라는 네이밍을 사용한다. 인권침해 발생 장소가 식당이면 '식당노예', 토마토 농장이면 '토마토 노예', 축사이면 '축사 노예'

이렇게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네이밍은 주로 기사 제목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보다가 <지적장애인 '식당 노예'처럼 일시킨 악덕 주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이전 염전노예 사건의 심각성을 떠올리면서 “노예? 또 그런일이?”라는 분노와 함께 클릭을 하게 된다. 대중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라고 하겠지만 클릭 효과를 위해 기자들은 사건에 대해 자극적 네이밍 방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인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공분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자극적 네이밍 소비와 클릭에서 멈추고 선정적인 피해 정황 묘사와 삽화장면이 기사 내용의 2/3를 차지하고 아무런 대책, 대안없이 기사가 끝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한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기사가 끝났다.

기자들은 대중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 네이밍 방식보다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제목 선정에 대해 심도깊게 고민해야 한다. 선정적인 방식으로 네이밍 되어진 피해자들은 초반 여론의 관심과는 달리 사건의 제대로된 해결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과거 폭력의 피해자로만이 아닌 현재-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자극적 네이밍 방식이 그들의 삶을 낙인화하고 있지 않은지, 고군분투하는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지, 또 다른 2차 피해가 되지 않는지 반드시 질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제목을 선정해야 한다.

쟁점 3.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 및 신상공개의 문제

○ 기사내용

장애인 성폭력 관련 기사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6.11.22.일자	뉴스 1	신체감정 결과 발기강직도가 80% 이상으로 확인됐다. 발기강직도가 70% 이상이면 정상발기로 평가된다. A씨를 손수 씻긴 뒤 한 차례 성폭행 했다

2	2017.3.7일자	세계일보	우연히 저장된 그 안에는 <u>“딸 언제 줄 거야”, “나도 한 번 달라고 해”</u> 등 파렴치한 민낯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	2017.4.3일자	뉴스스	B씨의 <u>어깨를 잡아 바다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그녀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u>
4	2017.4.26일자	경향신문	동생 김씨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u>“자는 모습을 보니 따먹고 싶다” “아무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만족시켜 주마”</u> 등의 음란성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5	2017.4.29일자	뉴스 1	A씨의 <u>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u> 했고, A씨를 껴안고 손을 <u>이불 속으로 넣어 만지는</u> 등
6	2018.7.13일자	머니 투데이	개울가로 B양을 데리고 가 <u>본인의 은밀한 부위를 가리키며 ‘물고기다, 이걸 잡아라’</u> 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7	2018.9.3일자	서울경제	A씨는 <u>“몸이 약하지 않은지 알아보자”</u> 며 옷 속으로 손을 <u>집어넣어 신체를 만지는</u>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기사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6.9.20일자	연합뉴스	장애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u>‘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u> 라는 글자를 써놓은 몽둥이를 만들어 <u>상습 구타</u> 했다.
2	2017.1.17일자	연합뉴스	어린이들을 <u>가죽벨트, 주삿바늘로 때리거나 찌르고, 밥을 먹다가 구토하자 토사물을 먹이는</u>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
3	2017.4.4일자	서울경제	상습적으로 <u>뺨을 때리고 손을 쥐었다</u> , 원생의 <u>뒷목을 세계 짓눌렀고</u> , 이유 없이 <u>머리를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찼다</u> , 여성 원생을 <u>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추행</u> 한 것으로 조사됐다.
4	2017.6.4일자	전북일보	<u>전기파리채를 이용해 전기충격을 주거나 때리고, 발로 차는</u> 등, 수시로 <u>목을 조르는</u> 등, <u>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강제로 질질 끌고 다니는</u> 등, 교사가 <u>슬리퍼로 입술 부위를 수 차례 때렸다</u>
5	2017.8.10일자	뉴스1	<u>싱크대 수도물에 머리를 집어 넣었다</u> <u>뺨다하는</u> 등 신체적 학대

6	2018.4.25일자	국민일보	“ <u>장애인증을 복사해서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u> ”고 욕박질렀다. <u>말레트(종치는 도구)로 장애인 연주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리걸음을 걷게 하거나 오토바이 자세를 시켰다.</u>
---	-------------	------	---

신상공개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6.11.22.일자	뉴스 1	A씨는 <u>지능지수가 48, 사회성숙도지수가 23, 사회연령이 6세2개월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u> 으로
2	2017.3.23일자	노컷뉴스	서울 구로구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A씨, <u>뇌병변 장애3급, 50세</u>
3	2017.4.14일자	경기일보	이들 가족은 <u>66㎡ 남짓한 집에서 매달 160~170만원</u> 으로 생활했다. A씨가 <u>친척 가게에서 일하고 받은 120만 원</u> 과 지적장애 아들 2명이 <u>정부에서 지급받는 장애인 수당 40만~50만 원</u> 을 합친 액수
4	2017.5.27일자	연합뉴스	<u>청주, 지적장애 3급, 옆집에 사는 A(사건 당시 11세), 2015년 6월부터 9월</u>
5	2017.8.14일자	조선일보	서울 은평구의 한 사찰, <u>23세 여성, 조현병과 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A씨,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돼 정신과 치료</u> 를 받았고
6	2018.2.24일자	이코노 뉴스	A씨는 <u>2016년 10월 3일 정오</u> 께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7	2018.3.30일자	뉴스1	“ <u>지난 1986년 해인원부터 올해 초까지 32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한 C(50대·여)씨</u> ”

○ 비판적 분석

성폭력-학대와 같은 강력범죄 기사는 피해 상황에 대한 묘사-설명 및 피-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언급한다. 발기 강직도 80%,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전기 파리채, 주사바늘, 토사물 등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기사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피해 상황과 더불어 날짜, 시간, 지역, 장애

등급, 치료 및 시설거주 이력, 소득수준 등 피해자 신상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언급한다. 너무 자세해서 그 지역에 사는 동네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지능지수가 48, 사회성숙도지수가 23, 사회연령이 6세2개월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이라는 심리평가결과보고서에 실리는 내용까지 공개되었다. 심리평가 결과, 치료이력, 소득 수준 등 높은 수위의 개인정보 공개는 비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기사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장애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 짚은 쉽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극적인 피해상황 및 신상정보 공개 방식은 ‘범행 경위, 공개된 사실내용이며, 대중의 알권리와 공분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현재도 계속 작성되고 있다. 실제 기자에게 항의했을 때 공개된 범행 경위와 정보이기 때문에 잘못 작성한 것이 없고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실제 자극적인 피해상황 및 신상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이라면 대중의 관음증적인 심리를 이용하기보다 잘못된 인식과 관점을 대안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라 해도 언론이 당사자 동의없이 대중 뒤에 숨어 이런 내용을 생산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러한 피해상황 및 신상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공개는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2차피해가 될 수 있으며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와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에도 명백하게 위배된다. 공개된 자료라 하더라도 공개의 적절성, 인권침해 요소 등 언론인이라면 면밀히 살펴 보도해야 한다.

쟁점 4. 누구의 언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나의 문제

○ 기사내용

가해자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7.3.5일자	새전북신문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 한 적 없다. 여직원과 연인사이다" 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2	2017.3.8일자	TV조선	해당 업주 "사실하고 다르죠. 억울하고요" 경찰은 "그냥 따라가서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3	2017.5.27일자	투데이신문	지적장애 10대 여아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먼저 유혹했다"
4	2018.3.2일자	히프포스트	무혐의 사유를 기사 전면에 배치. 1.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2. 지적장애인이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아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3. 지적장애인의 IQ 지수를 확인했더니 96으로 나와, '의사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5	2018.8.21일자	중앙일보	"하도 애가 덤벼드니까..."
6	2018.9.20일자	뉴스1	A씨 측은 "피해자가 평소 옷을 벗고 다니는 등 범죄행위를 유발했고 순간적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7	2017.2.14일자	국민일보	"일반인보다 덜떨어진 장애인 XX다" 라며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다.
8	2017.5.4일자	헤럴드 경제	"밥 먹을 가치가 없다" 며 점심을 안 주는 등
9	2017.6.16일자	한국일보	손씨는 경찰에 폭행사실은 시인했지만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 방에서 쉬게 했다. 방치한 게 아니다. 죽을 줄 몰랐다" 고 주장했다
10	2017.7.20일자	한겨레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시로 폭행
11	2017.8.10일자	뉴스1	"집중 안한다" 자폐아동 물고문·폭행 前특수교사 징역

피해자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6.11.1일자	뉴시스	정군은 보육원 소속 상담사에게 <u>“아빠가 내 몸의 소중한 곳을 만져 나도 그 느낌이 궁금해 아빠를 따라했다”</u> 고 말했다.
2	2017.3.7일자	세계일보	<u>너무 무서웠어요</u>
3	2018.7.12일자	중앙일보	<u>그 선생님 부르면 괴로웠다...17세 장애소녀 ‘악몽의 5년’</u>
4	2018.7.13일자	조선일보	<u>“선생님이 한밤 중에도, 수업 도중에도 불러냈어요.”</u> <u>“끝나면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했어요”</u>
5	2017.4.20일자	TV조선	<u>“걱정했었어요 처음에 아플 거 같기도 하고 겁이 났어요”</u>
6	2017.4.23.일자	YTN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얼굴 같은데도 막 때리고 침 뱉고 이래서...
7	2017.8.3일자	JTBC	<u>뭘 받는 대로 받는 거지. 소 여물도 줘야돼</u>
8	2017.11.3일자	조선일보	<u>B씨는 “그 돈으로 오토바이 기름을 넣고 과자를 사 먹는 것이 전부였다”</u> 고 말했다.

주변인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7.6.24일자	인사이트	<u>A양은 정이 많은 아이니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조심하며 신경쓰라고 이야기했지만 채씨는 오히려 이점을 이용했다</u>
2	2017.10.23일자	전주일보	<u>이번 지원을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게 돼</u>
3	2018.3.2일자	허프포스트	그는 “딸의 지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딸이 <u>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u> 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4	2018.7.12일자	중앙일보	“10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략) 마침 특수학교 기숙사가 있다고 하니 <u>우리 가족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죠</u> . 그런데 이럴 줄은...”
5	2018.8.21일자	중앙일보	<u>“동네 사람들이 B씨를 거뭍준 것이다. 애가 녀살이 좋아서 먹으면 가지를 앓았다”</u> 고 말했다.
6	2017.4.4일자	서울경제	재판부는 “이씨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았고 <u>오랫동안</u>

			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돌보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7	2017.6.4일자	뉴스1	피고인이 <u>사고무친(四顧無親)인 피해자의 가족 내지 보호자, 울타리 역할을 수행해 피해자의 생존에 긴요한 역할</u> 을 한 것으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8	2017.6.5일자	노컷뉴스	재판부는 "적정한 임금은 주지 않았지만 <u>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가족처럼 생활한데다</u> 학대나 가혹행위도 없었다"며
9	2018.3.28일자	함께 걸음	"피고인들이 <u>자신의 비용을 들여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점</u> ,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 비판적 분석

시민감시단 모니터링에서 중요하게 분석했던 내용 중 하나는 기사가 누구의 언어로 어떻게 구성되느냐였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언어의 빈도수는 가해자, 주변인, 피해자순이다. 그 중 ‘억울하다, 연인사이다, 먼저 유혹했다, 하도 애가 덤벼드니까, 죽을 줄 몰랐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등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기 위한 가해자의 언어가 일방적으로 다수 인용되고 그것이 사건의 실체인양 호도된다. 심지어 가해자의 언어가 기사 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압도적이다.

위의 기사 내용 중 2018. 3. 2일자 허프포스트 기사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가해자 언어를 무혐의 사유 1번으로 기술하였고, 합의라는 가해자 언어를 기정사실화 하고 지적장애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기사화하였다. 이러한 일방적 판단을 기사에 번호까지 붙여가며 매우 비중있게 다뤘고 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언어는 기사 내용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기사에 대해 시민감시단은 가해자 언어 중심으로 작성된 기사 중 가장 문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성폭력-학대사건에 대해 기사화 할 때 피해자의 언어는 대부분 삭제된다. 의사 표현과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기본 전제되어 있어 인터뷰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 종사자, 경찰 등 주로 주변인의 인터뷰를 신는다. ‘그냥 따라가서 쓰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A양은 정이 많은 아이니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조심해라, 동네사람들이 거뒀 준 것이다’와 같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정이 많아 조심해야 하는 아이 등 순응적이고 친화력은 좋으나 조심해야 하는 사람, 거뒀줘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 장애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주변인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신는다. 특히, 가족 인터뷰는 ‘10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도 키우고 일도 하느라 힘든 상황에서 도와줄거라 생각했는데..’와 같이 주로 처지의 어려움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피력하는 내용, CCTV 설치에 대해 ‘이번 지원을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게 돼’라는 내용과 같이 지원에 대해 내용불문 항상 고마워해야 하는 존재로 비춰지는 인터뷰 내용을 자주 신는다.

당사자들의 언어가 실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너무 무서웠어요, 그 선생님 부르면 괴로웠다, 뭐 받는데로 받는 거지, 과자 사먹은 것이 전부예요’ 등의 내용을 기사 맨 앞이나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매우 자극적으로 구성한다.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보다 매우 취약한 존재로서 부각되는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신는다. 가해자의 언어를 기사 주요 부분에 배치하고 주변인이나 당사자의 언어는 후반에 배치하거나 자극적으로 구성하는 문제, 아예 삭제하는 문제는 성폭력-학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매우 위험한 구성 방식이다. 장애인을 너무나도 나약하고 위협에 취약한 존재, 시혜적인 관점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로 대상화하고 이러한 왜곡된 편견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외 학대사건 기사의 특이점은 판결문을 자주 인용한다는 점이다. 주로 ‘오랫동안 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돌봐온 점을 참작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점’ 등의 판결문을 인용함으로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부각하는 방식보다 폭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돌볼 사람 없는 장애인을 돌봐온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요하게 부각하고 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이런 방식으로 학대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은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무능한 존재로 낙인찍고, 따라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폭력행위는 돌봄의 대가로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학대 가해자들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를 하는 가운데 제공된 일부 의식주를 돌봄이라고 인식하는 것부터 잘못된 통념이다. 실제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을 돌봐온 점이 가해자의 감형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정당성이 교묘하게 얽혀 있는 판결문은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제대로된 처벌을 어렵게 한다. 기자들이 장애인 성폭력-학대 사건에서 판결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개된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언급된 내용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편견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인용해야 한다.

나. 장애인 미담 관련 기사

쟁점 1. 장애를 극복/부정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

○ 기사내용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7.2.22일자	헤드라인 제주	<u>불굴의 의지</u> 보여준 '올해의 <u>장한 장애인</u> ' 찾습니다
2	2017.3.7일자	국민일보	휠체어와 의족에 <u>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낙망할</u>
3	2017.3.7일자	국민일보	1급 장애 <u>극복하고</u> 대학 강단에 선 박경순씨
4	2017.4.20일자	KBS뉴스	도전으로 <u>신체의 한계를 극복</u> 하고 지금은 <u>희망의 전도사</u> 가 된 <u>불굴의 장애인</u>
5	2017.6.7일자	영남일보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주상희씨는 ' <u>똑바로 보고 싶은데 내 눈이 옆으로... 상처받지만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요</u> '
6	2017.7.4일자	자유아시아	<u>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u>
7	2018.3.13일자	연합뉴스	' <u>위대한 엄마</u> ' 이도연의 아름다운 완주 " <u>포기란 없다</u> ", <u>몸이 망가지더라도 절대~</u>
8	2018.3.13일자	중앙일보	그에겐 <u>팔 대신 날개</u> 가 있다
9	2018.3.19일자	채널A	<u>장애 없는 장애인</u> 올림픽
10	2018.3.19일자	서울경제	패럴림픽이 보여준 <u>인간승리</u> 드라마
11	2018.4.20일자	동아일보	<u>장애를 이겨낸</u> 패럴림픽의 영웅
12	2018.4.26일자	OBS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u>장애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u>
13	2018.4.26일자	OBS	<u>장애를 딛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u> 사람들이
14	2018.4.27일자	민주신문	<u>난관을 극복</u> 하고 <u>청각장애인 최초로...</u>
15	2018.5.21일자	무등일보	<u>사랑으로 장애 극복</u> ...제2인생 찾았어요
16	2018.8.6일자	스포츠 서울	<u>장애는 극복만 하면 사라져요</u>

○ 비판적 분석

굴하지 않는 의지로, 몸이 망가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장애를 극복하여, 이겨내어 등 장애인미담 기사는 이러한 용어들로 넘쳐난다. 심지어 기사화 되는 직업군도 소위 비장애인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군이어서 한다. 장애를 극복하여 교수, 교사, 유명한 카페 매장의 점장이 되어야지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은 주목받지 못한다. 미담 기사 하나에도 한국사회의 정상규범 기준이 여지없이 작동된다.

‘한쪽 팔로 헤엄쳐 한강을 건너고, 백두산 완등에 이어 다음 해엔 해발 2천여 미터의 몽골 체체궁산 등반’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기본적인 장애인 이동권 조차 제대로 갖춰진 것 하나 없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일까? 누구나 본인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이 장애인이었을 때 이 사회는 장애인과 장애 극복서사만을 부각할 뿐이다. ‘장애는 극복하면 사라져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장애 없는’ 등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장애는 없어야 한다. 기사에서 위와 같은 표현들을 주요하게 부각하고 반복 사용하는 방식은 장애당사자도, 이 사회도 장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압박적인 분위기를 강화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장애 정체성을 부정하는 힘든 과정을 홀로 외로이 견디며 장애가 없음을 이 사회에 증명하기 위해 위험한 도전을 한다.

심지어 2018.3.13.일자 <'위대한 엄마' 이도연의 아름다운 완주 "포기란 없다">에서는 크로스컨트리 여자 12km 좌식경기 선수로서의 평가보다 장애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세아이를 낳아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엄마의 역할을 수행해낸 점 등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와 같이 젠더, 가족에 대한 정상규범은 언제든지 구석구석 필수요소로 작동된다.

미담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연구 준비, 평등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민과 관심, 장애인 고용 등을 연구해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장애당사자가 인터뷰 당시 했던 의미 있는 사회적 발언은 충분히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그런 부

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아온 과정 안에서 그렇게 고민하게 할 정도의 차별은 무엇이었는지 도전이나 극복 서사보다 심층 인터뷰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제발 장애 극복 프레임에서 벗어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삶의 (차별)경험을 공론화해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애인의 장애를 더 이상 극복하거나 부정해야 할 무엇이 아닌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특출한 능력이 없어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권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쟁점 2. 비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의인화하는 방식

○ 기사내용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5.5.29일자	부산일보	불난 집 들어가 장애인 구한 <u>‘군인 정신’</u>
2	2016.2.3일자	동아닷컴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의 생명을 구한, <u>투철한 사명감과 용감함을 지닌 장병</u>
3	2017.7.19일자	함께걸음	“장애학생도 해외연수를” 건의에 <u>미국으로 날아간 총장님</u>
4	2018.3.19일자	중도일보	김희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 ‘뜻깊은 참여’ <u>“개념 연예인이네”</u>
5	2018.5.21일자	경남도민일보	장애아동 돌봐준 <u>고교생 3명 ‘선행상’</u>
6	2017.5.7일자	서울경제	<u>장한 어버이상, 장애인 자녀를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키워내고 생활에서도 모범이 된 심**씨</u>
7	2017.6.3일자	중앙일보	아파트 12층 매달린 딸 15분 붙잡은 어머니는 <u>“24시간 자식 위한 삶”</u>
8	2018.5.21일자	무등일보	‘장애가 있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장애가 있는 아내를 23년간 보살피고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하는 등 <u>‘헌신의 삶을 살아온 이</u>

○ 비판적 분석

불난 집에 들어가 장애인을 들쳐 업고 구해낸 군인, 선로에 떨어진 장애인을 구해낸 휴가 나온 장병, 장애학생 해외 연수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간 총장님, 패럴림픽 참여한 개념 연예인, 길 잃은 장애아동 돌봐준 착한 고등학생 등 장애인을 구한 비장애인 미담 기사는 끝이 없다. 선로에 떨어진 장애인을 구해낸 장병은 공로를 인정받아 졸업 후 국내 모 대기업의 취업약속을 받았고 올해 사회공헌부에 채용되었다는 후속기사를 접했다.

기사에는 혼자 불난 집에서, 선로에 떨어지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장애인, 해외연수를 권리로서 요구했던 장애학생의 목소리 등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은 빠져 있다. 왜 불난 집에서 갇힌 채 누군가의 도움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왜 선로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지, 왜 비장애인에게 당연한 해외연수 기회가 장애인에게는 등등하게 주어지지 않는지 등 너무나도 많은 질문이 비어있다.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이 필요하거나 선로에 안전도어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 등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등 장애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당연한 권리들은 비장애인 미담을 위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삭제된다. 이처럼 장애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의 사회시스템은 모니터링을 통해 수없이 확인하게 된다. 심지어 “경찰은 화재 원인이 장애인 김씨가 제대로 끄지 않은 담뱃불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신는다. 장애인은 왜 불을 제대로 끌 수 없었을까?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어떠했는가? 화재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파악 없이 군인을 의인화하고 기사 말미에 장애 당사자의 부주의함만을 추정하며 비장애인의 공로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기사작성은 반드시 변화해야 할 지점이다.

의인화하는 방식은 장애인 가족에게도 이어진다. ‘24시간 자식 위한 삶, 장애인 자녀를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키워낸 장한 아버지, 헌신의 삶을 살아온 이’ 등 장애인을 잘 키워내고 돌보는 가족들의 삶은 이렇게 이야기된다. 2017. 6.3일자 중앙일보 <아파트 12층 매달린 딸 15분 붙잡은 엄마는 "24시간 자식 위한 삶">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엄마를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끝낼 내용이 아니었다. 밖을 나가려는 지적장애여성을 엄마가 제지하자 아파트 베란다로 뛰어내린 사건이었고 엄마가 딸을 붙잡고 15

분 넘게 버틴 내용의 기사였다. 같은 내용의 다른 기사의 경우, 그 상황을 ‘자살 시도’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실제 자살 시도였는지 당사자의 언어는 역시 없다. 엄마는 본인의 인생없이 매일 옆에서 딸을 24시간 못나가게 막아야 하고, 당사자는 밖을 나가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현실에 대해 엄마의 헌신적인 삶을 운운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미담기사가 아니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인에 대한 배제, 통제, 차별 중심의 사회 시스템이 지적장애여성과 그 가족의 삶을 어떻게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기자들은 사건의 팩트만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사회 소수자들의 차별과 배제로 점철된 삶의 맥락을 관통해야 하고 사회에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이 언론인이 가진 사회적 책무이다.

쟁점 3. 장애인의 삶을 감동의 도구, 특수화하는 시각

○ 기사내용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7.6.7일자	영남일보	<u>지휘자도 울었다...장애를 극복한 ‘영혼의 소리’</u>
2	2017.7.16일자	중부매일	허위신고한 지적장애인을 <u>따뜻하게 돌본 미담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다면 경찰서로 초대하겠다</u>
3	2017.7.20일자	한겨레	우리 선수들도 본 행사를 통해 <u>장애학생들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u> 을 통해 <u>힐링의 시간</u> 을 가졌다.
4	2018.1.2일자	머니투데이	지적장애인들의 <u>‘특별한 능력’</u> 지적장애인들은 <u>‘순수한 감성’</u> 을 평생 유지할 수 있죠
5	2018.3.13일자	경향신문	<u>패럴림픽 증계는 국민의 ‘감동권’ 문제다</u>
6	2018.4.11일자	헤럴드 경제	나눔, 여행, 예술, 공연 ‘하모니’ <u>장애인 희망여행 벽찬 감동</u>
7	2018.4.20일자	조이뉴스24	‘해투3’ 김동현, <u>청각장애 극복 스토리...목직한 감동</u>

○ 비판적 분석

장애인의 삶이 실의에 빠져 허우적대는 누군가에게, 특히 비장애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내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현재의 삶에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영혼을 울리는 감동과 사랑의 대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올해 패럴림픽이 평창에서 진행되면서 패럴림픽 중계가 국민의 감동권, 권리의 문제로까지 언급한 기사가 나오는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하는 과정이 비장애인을 위한 감동의 권리, 감동의 도구로 전환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심지어 장애인도 위와 같은 개인의지로 충분히 극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는데 비장애인들은 도대체 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느냐며 한발 더 나아가라고 독려하는 기고 글도 있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이 그림을 잘 그리면 ‘특수한 능력’이 되며 그 이유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져서 가능하다고 한다. 인간의 다양한 특성과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비장애인들이 임의로 지적장애인=순수함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설정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혜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빈곤지역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어머 애들이 생각보다 밝네요.” 빈곤=우울함이라는 프레임, 지적장애=순수함이라는 프레임 매우 닮아있다. 지적장애인은 순수해야 하고 빈곤한 애들은 좀 우울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 위의 감동 프레임은 빈곤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대체 누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러한 프레임에 가두는지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언론은 미담 기사를 쓰면서 자의적인 프레임을 강화하는 방식, 대중으로 하여금 사회가 불행하다고 규정한 이들의 삶을 통해 삶의 태도를 반성해보고 감동을 찾도록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빈곤한 이들의 삶이 왜 도구화, 특수화되고 있는지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과 내용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 4. 권리의 주체가 아닌 특별한 혜택이나 시혜의 대상

○ 기사내용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6.2.3일자	동아닷컴	LG, 장애인 구한 해병대원에게 <u>장학금 및 채용기회 제공</u>
2	2017.3.7일자	국민일보	저의 은사님들, 지인들의 <u>도움과 배려가 있었기에</u>
3	2017.4.20일자	경남신문	“ <u>평생 봉사</u> 하고 살고 싶어”
4	2017.7.20일자	한겨레	경기도장애인체육회, <u>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와 함께하는 행복돋움 농구교실</u> 개최
5	2017.8.19일자	워싱턴 중앙일보	사지마비 장애인 장재민씨, <u>한국 의료기술에 새 삶 희망</u>
6	2018.4.11일자	헤럴드 경제	<u>하나투어</u> 는 지난 2005년부터 ~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u>여행을 지원하는</u>
7	2018.4.20일자	ZDNet Korea	장애인 위한 ‘ <u>착한 IT</u> ’ 혁신
8	2018.6.1일자	아이굿 뉴스	평소 공연관람이 어려웠던 장애인에게는 <u>문화향유의 기회를</u>
9	2018.7.16일자	아시아 투데이	<u>코레일 서울본부</u>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10	2018.8.1일자	부산일보	<u>장애인에게 바다를 체험할 기회를 준다, 쉽게 접하기 힘든 바다 나들이를 얼마나 원하는지</u>

○ 비판적 분석

미담기사도 폭력사건 기사처럼 정책이나 기업 홍보 보도자료에 기반해 작성된 기사들이 많다. 여행을 가기 어려운, 문화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바다 체험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홍보한다. 이러한 홍보식 미담기사는 대중들에게 장애인들의 일상의 경험은 기업이나 정부의 특별한 혜택으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 또한 여행, 공연관람, 운동, 바다 보기 등 비장애인

에게는 가능한 일상의 삶이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혜택으로 가능한 것일까? 왜 그들은 일상의 경험이 어렵지?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기 어렵게 한다.

심지어 위의 내용 중 장애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저의 은사님들, 지인들의 도움과 배려가 있었기에”와 같이 본인들의 권리를 권리로 인식하기보다 지인들의 도움과 배려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평소 봉사하고 살고 싶어” 노동을 하는 장애인은 본인의 노동을 봉사라고 표현한다. 돌봄, 케어, 사랑, 관심, 기회, 혜택, 배려 장애인의 삶을 규정하는 시혜적 용어들이 사회 구석구석 견고하게 작동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와 대중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인식에도 불구하고 노동, 교육, 이동, 문화향유의 문제가 관심과 혜택이 아닌 ‘권리’로서 세상에 외치고 권리보장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다. 언론은 장애인의 위치를 시혜 대상으로 규정하는 기사가 아닌 권리 확보를 위한 목소리와 현장을 대중에게 알려냄으로서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할 수 있는 기사 작성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 기타

쟁점 1. 장애인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표현

○ 기사내용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7.3.24일자	MBC	[단독] <u>욕했다고...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조현병’ 아들</u>
2	2017.4.14일자	경기일보	<u>지적장애 아들 2명 쇠사슬 묶어 감금한 장애인 부모</u> 경찰 입건
3	2017.4.20일자	세계일보	[<u>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u>] 지적장에서 분리...정확한 통계 바탕 지원해야
4	2017.5.26일자	노컷뉴스	<u>시민에 흉기 휘두른 조현병 男</u> 입원 거부...보완책 시급
5	2017.5.26일자	국민일보	<u>‘묻지마 폭행’ 조현병 앓은 50대 장수 고시생</u> 재판에
6	2017.6.11일자	서울일보	장애인과 함께 <u>장애 예방한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u>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고

7	2017.6.19일자	중부일보	장애가정 등친 장애가정 어머니 , 징역 6년 선고
8	2018.4.3일자	헤럴드 경제	조현병의 위험성 , 방배초등학교 인질극까지...
9	2018.5.11일자	메디컬 리포트	모성 박탈을 경험한 아이 , 정신질환 위험성 높아
10	2018.7.11일자	민주신문	아들 정신병원 입원시키려던 어머니 피살... 고위험군 조현병 강력 범죄 급증

쟁점 2. 잘못된 통계 분석과 활용의 위험성

○ 기사내용

번호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1	2017.3.24일자	MBC	정신장애 범죄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5년 6천 5백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는 40%에 이릅니다
2	2017.4.5일자	동아닷컴	[팩트 체크]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 일반인 10배? ... 일반인 절반도 안 돼
3	2017.5.26일자	노컷뉴스	도내에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는 166건에 달해 3년 전보다 무려 50% 가량 급증
4	2017.5.30일자	충북일보	도내 정신질환 범죄 5년간 177건...사회문제 대두
5	2018.5.9일자	공공뉴스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국내 정신질환자의 수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명으로 13.0%로 증가
6	2018.7.11일자	민주신문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 범죄율보다 3배정도 높다

○ 비판적 분석

시민감시단은 장애인 관련 성폭력, 학대, 미담 이외 기사도 모니터링하였다. 주로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 관련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살해, 묻지마 폭행, 흉기 휘두른 등 정

신장애인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제목과 내용들로 기사들이 구성되어 있다. 2018.5.11.일자 메디컬 리포트 <모성 박탈을 경험한 아이, 정신질환 위험성 높아>라는 제목의 기사는 엄마가 없으면 각종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매우 위험한 결론을 짓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정상가족 규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인간이 성장하는 사회적 과정을 온전히 엄마,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장애와 젠더 불평등이 종합적으로 서술된 기사이다. 심지어 정신질환의 위험성, 범죄가능성의 감소 등 어떤 특정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나 보호자의 긍정적인 양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은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상가족 규범 안에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장애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공격성, 충동성이 높아진다는 기사 구성 방식은 매우 다양한 측면의 편견과 통념을 강화한다.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견고한 논리 강화에 일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논리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근거로 통계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통계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인 듯 보이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통계자료는 반드시 전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용해야 한다. ‘일반인 범죄보다 3배 높다, 5대 범죄는 166건에 달해 3년 전보다 무려 50% 가량 급증, 정신질환 범죄 5년간 177건... 사회문제 대두’ 등 정신장애인 범죄건수가 해마다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실제 2015년 대검찰청 강력범죄 건수를 보면 강력범죄자가 3만 5139명이고, 그 중 정신장애 범죄자가 781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의 2%이다. 이런 자료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활용하지 않고 ‘일반인 범죄보다 3배 높다’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작성한다. 즉,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사실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포심 조장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장애가 정 등친 장애가정 어머니’와 같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장애가 있는 집안은 그 정체성이 여지없이 공개되고 자극적으로 구성된다. 심지어 성폭력 사건에서 다루었던 ‘고위험군’라는 용어가 정신장애인을 규정하는 언어로 다시 활용하기도 한다. 언론은 사회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지 않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사는 그렇게 소비되고 있다. 대중들은 객관적 자료인 듯 통계자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봐야 한다.

2) 일상생활

일상생활 모니터링은 언론보도처럼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길을 가다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가입되어 있는 맘카페 게시글을 보다가, 관련 직종 홍보글을 보다가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문제적 표현을 발견하면 대응팀 방에 공유한다. 시민감시단의 활동 역량과 감수성이 강화되면서 불편한 시선이 기사에만 머물지 않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모니터링 횟수가 조금씩 증가하게 되어 2018년 올해는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내었다.

<p># 인천사회복지사협회 : ‘장애우’ 표현</p> 	<p># 장애인 주차장 안내문구 : ‘불편한’, ‘양보’</p> 
<p># 화성경찰서 성폭력예방 홍보물</p> 	<p># 간호사 구인 홍보</p> 

<p># 지하철 성폭력 범죄예방 홍보물</p> 	<p># 지역 맘카페 게시글</p> <p>*** 파출소장이 직접 수사하여 보니, 피의자는 ****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부모와 통화 확인한 바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 중이며 향후 요양병원에 입원 조치 할 예정입니다.</p>
---	---

○ 비판적 분석

위의 모니터링 내용을 보면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인식은 언론 기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장애인을 장애'우'라 표현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분'들을 위해 비장애인이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지만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20만 명이 가입된 인터넷 맘카페에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고, 피의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심지어 미투 운동이 사회를 뒤흔들었던 2018년에도 여전히 경찰서와 지하철의 성폭력 예방 홍보물은 '밤늦게 음악 들으며 귀가하지 않기, 지하주차장 및 외진 곳 주차하지 않기, 신체 접촉 시 강하게 거부 의사 표현하기' 등과 같이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내용이나 범죄를 '호기심'이라는 가벼운 행위로 축소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라는 간호사 구인광고 문구는 가장 문제적이었는데 한국사회가 여성의 돌봄 노동, 시설 장애인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호사라는 노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 되는데 꼭 어머니로서의 성역할을 요구한다. 여성의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 성역할로 전환된다. 이는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없는 장애인 생활 시설 아동이기 때문에 기존의 백의의 천사 이미지에 어머니라는 이미지까지

덧씌워지기 쉬웠다. 노동으로서의 존중이 아닌 규범화된 성역할 강요와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난 시설 장애아동에 대한 낙인까지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라는 한 문장이 내포한 편견과 통념은 너무나도 많다.

3. 결론 및 제언

1)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극단적 프레임 지양

장애를 ‘앓고 있는’. 시민감시단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검색한 무수히 많은 기사 중 2~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국사회가 장애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다. 이로 인해 대중들은 장애를 병리적으로 해석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한다. 이는 장애인의 정체성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받아 왔던 역사와 사회 구조로 인해 고착된 결과이다.

장애인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등장하는가? 위의 쟁점 분석을 통해 정리해보자면 장애인은 보호해야 할 범죄 피해자이거나 강력범죄 가해자 또는 미담의 대상인 순수한 영혼으로만 표현된다. 즉, 장애인은 한국사회가 규정한 장애에 대한 혐오, 정상규범, 시혜 기준에 맞춰질 때만 사회에 공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의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만나지 못하고 주로 언론을 통해 그들의 삶을 만난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복지관이나 시설에 가야 만날 수 있지만 누구도 일부러 그 곳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 프레임은 에이즈 확산하는 동성애자, 미래의 희망이자 무서운 비행 청소년,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나태해진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일자리 위협하는 이주민, 무책임한 미혼모, 아빠 없는 결손가정 등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성과 권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빈곤층과 이주민, 동성애자 그리고 비정상이라고 규정된 수많은 소수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이주여성의 경우 돈 때문에 결혼했냐는 혐오와 한국문화에

동화되어야 하는 대상, 우리의 이웃이라는 프레임이 동시에 작동된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극단적 프레임은 장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극단의 프레임은 낙인, 차별, 배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소수자의 현재의 삶,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언론은 극단적 프레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기반하여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고 대중들은 주변에 알려야 한다. 보도 경쟁과 집단적 공분이 아닌 성찰적 사유가 너무나도 절실한 한국사회이다.

2)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필요

모니터링 기사 중에 장애인 임금착취, 부당노동행위 등 대책 마련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기존의 장애인 국가등록제를 강화해 ‘추적관리’를 해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가 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외 적용 등 장애인을 노동자의 위치에 두지 않고 배제하는 한국사회 노동 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음지에서 계속 반복되도록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제보다 노동자로 인정하고 현재 마련되어있는 노동권리보장 제도를 모든 구성원을 고려하여 촘촘하게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피해 사실 보도를 넘어 범죄를 유발하고 확산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국가 및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대안과 정책은 실효성은 있는지 등에도 주목하여 비판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니터링 기사 대부분은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관심가지기’라는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회적 대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통제-관리 시스템 강화가 전부이다. 성폭력-학대사건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개된 범행 경위라는 명분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피해상황 및 처벌 내용 언급만이 기사의 2/3를 차지하거나 아예 그 부분만 언급하고 기사가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왜 이렇게만 기사를 작성하고 끝이 날까? 속보 중심의 취재 경쟁과 관행, 언론사 이윤 등의 문제로 인해 기사를 빨리 작성해야 하고 클릭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내용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하게

된다. 언론사의 문제적인 시스템 내에서는 범죄 피해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비판과 분석에 기반한 기사작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도 분명 있다. 올해 시민감시단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사 검색하는 과정에서 우수기사들도 유의미하게 발견하였다. <미투도 외치지 못하는 인권약자들 수두룩>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사랑의 리퀘스트식 장애인 ‘동정과 시혜’ 프레임은 그만> 미디어 오늘 정민경 기자, <불굴의 의지로 장애 극복, 이런 말들이 강요하는 것> 오마이뉴스 이준수 기자, 제목만 봐도 기자들이 어떤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위의 기사들은 미투에서도 배제된 이주여성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언급, 시혜적인 대중의 인식과 대중의 인식을 소비하는 언론의 프레임, 악순환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 장애 당사자의 심층 인터뷰 등 사회구조적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여 세상에 알렸다.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성과 문제의식이 바탕이 된다면 그들이 속한 언론사의 구조도 바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대중의 인식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인식과 언론의 프레임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고리가 자극적인 기사 생산만을 위한 악순환이 되지 않기 위해 전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3) 장애에 대한 관점 전환 필요 -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인식

언론보도에서 인터뷰는 가족, 종사자 등 주변인 또는 담당 경찰관, 법원 판결문만 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쟁점 분석에도 언급했지만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 관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이미지로만 구성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언어는 배제되고 동등한 의사소통, 경험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사가 위와 같지만 시민감시단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들이 취약한 위치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기사도 있었다. <장애인시설 떠나는 장애인들...“아침은 시리얼 먹고 싶었어요”> 국민일보 허경구, 심우삼 기자의 기사 내용에는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25년 시

설생활을 끝내고 야학공부, 시낭송, 연애, 취향에 맞게 먹고 생활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장애인의 다양한 일상을 제대로 담아내었다. <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 그들이 갇혀 있으니> 한국일보 이진희 기자의 기사내용에는 유튜브로 활동하는 장애여성 인터뷰 기사였는데 장애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왜 네가 하고 있어 나를 부르지 내가 넣어줄게” 등 일상에서 필요한 장애감수성에 대해 쉽게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 내용 구성이 인상 깊었다. <연애·결혼·임신... 남들은 축복, 장애 여성엔 고난> 스카이데일리 배수람 기자의 기사 내용에는 연애,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장애여성이 겪는 재생산권 관련한 어려움을 당사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풀어내었다.

인권보도준칙 전문에 보면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은 인권보도 준칙에 근거하여 언론은 대중들이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사 구성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은 왜 장애인은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차별받고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적장애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폭력과 통제는 무엇인지,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권리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등 장애인, 소수자들이 요구하는 목소리,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사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사회에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에 대해 미담화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알려냄으로서 시민의식을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장애인들을 더 이상 피-가해자, 미담의 대상으로 가두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4) 인권옹호로서의 비판적 시민감시활동 필요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보도준칙 이름조차 ‘인권보도준칙’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사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을 위배해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

위원회 진정,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방법이 있으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당사자들이 본인 사건이 기사화되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통해 언론을 규제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언론의 상업적 운영구조와 맞물려 기사가 대량생산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이야기하지만 정권과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화 된 언론의 모습을 지난 역사를 통해 지켜왔다. 무소불위의 권력, 언론에 대한 제대로된 제도적 규제와 장치는 쉽게 마련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언론은 대중의 심리를 소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론을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이용한다. 이 지점에서 대중인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사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닌 문제되는 지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어야’한다.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했다. 한국사회에서 권력화 된 언론을 규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관점에서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활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시민감시단은 지난 3년간 장애 관련 기사와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 전반으로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시민의식 및 사회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항의메일링, 카드뉴스 배포, 언론사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감시단은 자극적인 삽화 교체, 기사작성에 반영하겠다는 기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 지역 맘카페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글 삭제, 성폭력 범죄를 호기심이나 피해자가 조심할 문제로 표현한 홍보물 교체, 장애에 대한 잘못된 표현 카드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엄청난 반응 등 변화들을 천천히 만들어 내고 있다.

시민감시활동은 사회와 대중의 변화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시민감시단도 활동을 통해 성인지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점검하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동시에 경험한다. 시민감시활동의 핵심 포인트이다. 시민감시단들은 대체로 활동하기 전 주변으로부터 ‘과도하게 예민한 사람’ 등의 시선과 평가를 받

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활동을 통해 평소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점들이 과도한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문제의식임을 알게 되었고 매우 중요한 활동 동력이 되었다. 이전에는 제대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지만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듯, 시민감시단은 함께 모여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상호지지-연대-변화’의 경험을 하고 있다.

지난 3년의 활동을 통해 시민감시단은 성평등 및 장애/인권 감수성을 점검, 함양하여 ‘행동하는 시민’으로 변화, 성장하였다. 혼자 일 때 주변 사람들, 사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과 장애여성공감을 든든한 “뺨”으로 삼아 사회에 거침없이 던져보는 용기도 얻는다. 인권의 관점으로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본인 삶의 변화와 함께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시민모임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많아져야 한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비판적 시민의 목소리가 많아져야 언론-대중도 인권에 기반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인식이 변화하고 제도 및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참고자료

1.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 언론 및 수사-법적절차의 비판적 분석에 관한 토론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2. <환자는 왜 범죄자가 되었는가? : 조현병과 에이즈기사로 본 언론보도의 인권침해> 건강세상네트웍
3. <미디어속 여성차별과 폭력>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4. <패럴림픽 보도, 장애극복만 부각> 동아일보 2018.4..20일자

IV 토론

토론 1. 언론은 '장애인 뉴스'를 왜 이렇게 다를까.

강혜민 (비마이너 기자)

토론 2. 인권옹호를 지향하는 시민감시활동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토론 3. 젠더관점으로 미디어 비평하기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토론 1] 언론은 '장애인 뉴스'를 왜 이렇게 다를까?

강혜민 (비마이너 기자)

사람들은 '공짜로' 기사 보는데 언론사 수입은 어떻게?1)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바일을 통해 기사를 '무료'로 본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비마이너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600여 명의 정기 후원회원이 있으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콘텐츠를 제공하진 않는다. 이들 또한 비마이너에 돈 내는 것을 후원(後援, 사전적 풀이로는 '뒤에서 도와준다'라는 뜻이다)이라고 생각하지 자신이 보는 비마이너 기사에 대한 '구독료'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구독료 낸다 생각하고 한 달에 만 원씩 정기 후원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다. 어떠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 마치 사라진 듯하다.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론사는 어디서 수입을 얻을까? 바로 광고다.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매체 운영비의 상당수를 광고에서 충당하는 구조로 돌아간다. 광고를 따오려면 기본적으로 조회 수가 높아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배너를 단 다음 일정 정도의 클릭 수가 채워지면 돈이 입금되는 방식의 광고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최대한 사람들이 해당 기사로 많이 유입되게 해야 한다. 즉, 조회 수는 돈으로 직결된다.

반면,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기자가 성장할 시간과 그 역량을 바탕으로 탄탄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충분한 시간 말이다. 그러나 훌륭한 콘텐츠가 바로 수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질 좋은 콘텐츠가 상당 시간 누적되었을 때 그것이 매체 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할 순 있겠지만 말이다.

1)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5년 창간 20주년을 맞이해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주제의 20회 연속 기획 시리즈를 보도했다. 이 토론문의 주제를 고민하고 마침내 쓰기까지 미디어오늘의 기획 연재에 많은 빛을 졌다. 기획연재는 이곳(<http://special.mediatoday.co.kr/journalism/>)에서 볼 수 있다. 이 훌륭한 기사들 역시 '무료'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대다수 언론이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종속되어 있다. 최근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가 등장하긴 했으나 여전히 포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네이버는 메인 화면에 그 스스로 뉴스를 편집해서 보여주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띄어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어뷰징(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사를 제목이나 내용만 조금 바꿔 반복으로 전송하는 행위)을 자극하는 대표적 요소다. 일부 언론사는 조회 수 장사를 위해 어뷰징하는 기자들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해, 포털사이트에 오르내리는 실시간 검색어를 소재로 하루에 기사만 30~40개씩 써내게 한다. 실시간 검색어가 상단에 있을 때 발행되어야 효과적이니 이들 기사는 (당연히) 기본적인 사실 확인과 추가 취재 없이, 데스크도 거치지 않은 채 발행된다. 바이라인(기자 이름)조차 없이 주로 ‘온라인뉴스팀’이라는 이름으로 나간다.²⁾

2017년 12월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만 7151종이다. 2008년에 1282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지난 10년간 인터넷 신문 시장은 그야말로 급성장, 아니 ‘난립’ 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신문 설립 요건은 매우 느슨하다. 게다가 2016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신문법)’ 시행령 개정³⁾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인터넷 신문에 대해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기사로 내는’ 정도의 기준만 남아 있다. 지난

2) 어뷰징 기자들의 인터뷰 혹은 체험기를 통해 어뷰징 기사가 실제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 수 있다. “하루 짜깁기 기사 50건…클릭수 노려 미투 2차 가해”(박준용 기자, 2018년 4월 3일, 한겨레), 어뷰징 낚시기사 써봤더니 15분만에 10만원(김하영 저널리스트, 2015년 7월 5일, 미디어오늘), 어뷰징 기자들과 대화 “클러스터링? 검색기사 막기 힘들 것”(금준경 기자, 2015년 1월 17일, 미디어오늘) 등을 참고할 것.

3) 기존엔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인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당시 정부는 ‘이른바 사이버 언론 행위를 막겠다’며 언론의 어뷰징과 선정성 기사, 그리고 협박성 기사를 이용해 광고를 따내는 등 언론 환경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비마이너를 포함한 5인 미만의 언론·시민단체들은 그러한 행위는 5인 이상 언론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사실상 대다수 인터넷 신문을 강제 폐간하려는 시도로 보고 그해 12월 헌법 소원을 했다. 그 결과 201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 사태에서 보듯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무너진 언론 환경 소생을 위한 적합한 대처도 아닐뿐더러, 소규모 대안언론을 언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래 드루킹 사건으로 네이버 댓글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몇 차례 개선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중엔 포털에 대한 언론 의존도를 낮추고자 뉴스를 편집해서 보여주는 메인화면과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고, 구글과 같은 검색 화면만을 띄우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전문가들은 언론 스스로 시장 경제에서 벗어나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복원해야 한다고도 하고, 언론만의 변화로는 부족하며 독자들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도 제언한다.

이 글에서 이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영역 밖의 일이다. 단, 이러한 물음을 던져보고 싶다. 현 구조를 타파하고 건강한 언론 환경이 만들어지면,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극대화하고 장애를 극복 혹은 부정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등의 '문제적 보도' 들이 사라질까?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주류 언론의 기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앞서 제기한 문제가 장애인 성폭력·학대 등에 대한 사건을 자극적으로 어뷰징하는 인터넷 보도 전반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이제는 매체 전파력이 강한 주류 언론에 한해 고민해보자.

주류 언론사 기자가 되는 과정을 쫓아가 보면 이렇다. 수년간 치열한 언론고시(언론사 합격이 고시 합격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여 언론고시라고 표현한다) 공부를 통해 기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다. 그 과정에서 언론고시생들은 전방위적인 시사·상식·역사 등을 공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논술·작문을 연습한다.

언론고시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⁴⁾ 2003년 1월에 개설된 이곳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언론고시에서 주요하게 취급되는 상식과 핵심정보를 나누고, 각자 쓴 논술·작문을 올려 댓글을 통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이곳에서 ‘장애’를 검색해봤다. 총 241건의 게시물이 검색된다. 언론사 채용 공고를 알리는 게시물에서 ‘시스템 장애’를 표현할 때 주로 쓰였다. ‘장애여성’의 경우엔 총 31건의 게시물이 검색됐는데, ‘장애여성’이 붙여 쓰인 경우는 없었으며 하나의 글에서 ‘장애’와 ‘여성’이 함께 쓰인 글만이 검색되었다.

이들이 주요하게 공부하는 시사·상식이란 무엇일까. 예상되듯 주요 일간지 1면에 나오는 이슈들이다. 근래로 치자면 남북관계, 혹은 블록체인 같은 이슈 말이다. 당연하게도 예비 언론인을 꿈꾸는 이들이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하는 것은 주류 미디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들이며, 주류 미디어의 문법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언론사에 입사한 뒤 수습기자 때 맞이하는 첫 관문은 사쓰마와리를 도는 것이다. “사쓰마와리는 각 경찰서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돌며 취재하는 행위를 뜻하는 일본말로 사회부 사건팀(경찰팀) 기사를 지칭하는 용어다. 종로, 강남, 영등포, 관악, 혜화, 마포 라인 등을 담당하는 1진들은 각 경찰서를 거점 삼아 해당 지역을 바닥까지 샅샅이 훑으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취재한다.”⁵⁾

수습기자들은 각 라인에 소속되어 오전 6~7시 첫 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날인 새벽 1~2시까지 한두 시간 단위로 선배에게 자신이 취재한 사안을 보고한다.⁶⁾ 그러나 수습기자에게 정보를 주는 취재원은 없으니, 이들은 이 경찰서에서 저

4) 언론인을 꿈꾸는 카페-아랑 (<http://cafe.daum.net/forjournalists>)

5) 언론사 병영문화, ‘사쓰마와리’가 저널리즘 망친다 (조수경·정철운 기자, 2015년 2월 5일, 미디어오늘)

6) 과거엔 수습기자 한 사람이 이 일정을 다 소화해냈으나, 지난 7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후엔 두 타임으로 나뉘어 돌아간다고 한다. 비인간적이라고 오랜 시간 질타받아온 수습기자의 노동 환경에 드디어 변화가 생긴 것이다. 지난 9월, 미디어오늘이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의 수습기자의 하루에 대해 취재했다. ① 중부라인 경찰서 도는 ‘날다람쥐’ 수습, 희형의 12시간 (박서연 기자, 2018년 9월 3일, 미디어오늘) ② 주52시간 도입, 연합 수습기자 하루 얼마나 달라졌나 (박서연 기자, 2018년 9월 8일, 미디어오늘)

경찰서로, 경찰서에 없으면 파출소라도 찾아가 경찰들에게 애걸복걸하며 온몸으로 부딪혀 어떻게든 보고할만한 자잘한 사건 거리라도 찾기 위해 '노오력' 한다. 시간이 없으니 이동은 주로 택시로 하며, 커피 마실 시간은커녕 식사할 시간도 없다.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다. 여기엔 기자 세계의 상명하복식의 강한 규율 문화가 작동한다.

수습기자가 끝나고 정식 기자사회에 들어가서는 출입처 중심으로 짜인 폐쇄적인 기자단을 접하게 된다. 주요 정부 기관 중심으로 기자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각 언론사는 이에 속해야만 손쉽게 보도자료를 받아보고 정부 취재원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관과 유착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기자단 가입 조건을 기자단이 정하여 신규 언론사 진입을 가로막고, 엠바고를 어길 시 해당 언론사에 출입정지와 같은 징계를 내리는 것도 기자단이다. 기자단 그 자체가 권력인 것이다.

이러한 언론사에 도전하는 이들 대다수가 엘리트 출신(이른바 '서연고')으로,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사리 기자가 되어 사쓰마와리 돌고, 출입처 중심으로 기사를 쓴다.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 주류 언론의 기자 시스템이다. 주류 언론 그 자체가 이미 사회의 주류성을 획득한 집단으로 권력화되어 있으며, 그들은 그 스스로 주류를 형성해낼 힘까지 쥐고 있다. 기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추동한 것은 애초에 '주류가 되고 싶다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닐까. 그러므로 서울 여의도 중심의 보도를 기본값으로 삼는 주류 언론에 장애와 같은 비주류 이슈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며, 전방위적인 '시사·상식'을 공부하는 언론고시생들의 공부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는다.

언어 표현의 '피씨함' 을 넘어, 텍스트 바깥을 읽어내야 한다

그런 이들에게 어느 날 문득 '취재 대상'으로 마주할 중증장애인의 삶, 홈리스의 삶, 쪽방 노인의 삶이 어떻게 다가올까. 어느 이슈가 그렇듯, 장애 이슈도 공부 필요하다.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의 삶을 입체적으로 담기 위해선 그

삶의 행간을 읽어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독해력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삶은 장애, 빈곤, 노동, 교육, 젠더, 건강, 제도, 문화 등이 뒤엉켜 있는 고차함수다. 공부하고 고민하고 사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 기자들에게 장애와 빈곤, 그에 대한 복지제도를 이토록 깊게 공부하고 고민할 시간이, 계기가 있던가.

고민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을 때, 언론은 사회 편견에 기댄 보도를 하게 된다. 편견(prejudice)은 이미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는 통념으로, 내가 무의식 중에 습득한 그 언어들로 눈앞의 현상을 사유 없이 판단하여 오독해낸다.

언론은 부모들이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는 뉴스는 ‘잘’ 다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부모가 무릎 꿇거나,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눈물 흘리며 삭발하는 현장은 큰 뉴스가 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정서에 반(反)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반하기는커녕,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약자’ 이기에 이 사회가 ‘품어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기존 사회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가. 그렇기에 사회적 통념에 접촉된 면만을 충실히 다룰 뿐, ‘그 이상’은 다루지 않는다. 이를테면, 장애인 교육권 차원에서 특수학교 설립 요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은 던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 주체로 나서 싸울 때의 언론의 태도 역시 비판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 활동가 70여 명이 오체투지를 했을 당시 언론 보도를 보자. 뉴시스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라는 제목의 사진기사들을 내보냈다. 그날의 현장은 서로 다른 신체를 가진 수십 명의 사람이, 이제껏 차별받아왔던 신체 그 자체로 이 세계에 싸움을 걸었던 ‘스펙타클한 투쟁의 현장’ 이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설명해낼 ‘언어를 갖지 못한’ 기성 언론들은 참담하게도 기존에 갖고 있던 사회적 통념(장애인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다)에 사건을 옥여넣어 버렸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투쟁하는 주체로서의 장애인이란 존재를 지워버리고, 장애인들이 그토록 타파하려고 했던 편견을 언론이 강화하는데 복무해버렸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도되는 장애 관련 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하나는 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주로 봉사활동, 바자회를 통한 '사랑 나눔'을 알리는 내용이다) 받아쓰기, 두 번째는 사회부 기자가 쓰는 사건·사고 기사다. 두 번째 기사의 경우, 경찰 브리핑을 받아 쓰거나 스스로 취재하여 쓰게 되는데 여기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통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기자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데스크가 수정할 수 있지만 최종 기사에 그러한 표현이 걸리지 않고 보도되는 것은 데스크조차 해당 표현이 왜 잘못됐는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불편한 신체를 가진 존재'로 담아내고, 장애를 '부정' 하는 언어들,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것이 단지 '언어 표현'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언론은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 Correctness)' 표현을 조심히 골라서만 쓰면 되는가. 언어 표현의 부적절성은 그 자체로 문제이긴 하나, 언어 표현의 '피씨함만을' 문제 삼을 때 그 너머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억압 구조를 봉쇄하기도 한다. 언론 모니터링이 기자들에게 표현의 검열(이 표현을 써도 될까, 안 될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합리적 문제제기로 힘을 갖기 위해선 텍스트를 직조해내는 텍스트의 바깥(맥락)도 함께 읽어내는, 좀더 섬세하고 전방위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토론 2] 인권옹호활동으로서의 시민감시활동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새로고침>의 언론보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쟁점 분석과 제언을 보면서 안희정 1심 판결이 떠올랐습니다. 안희정 측은 변론을 하면서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 이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할 수 있었는데 행사하지 않았으니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말이지요. 당시 이 말은 많은 사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은 결국 이런 인식을 고스란히 옮겨 담았습니다.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 이 아닌데 폭력의 피해자일 리 없다, “성생활과 관련된 인격이 성숙되지 아니한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 하겠으나 피해자는 그렇지 않다는 등의 관점입니다. 판결문에는—제 기억으로는— ‘장애인’ 은 명시되지 않았고, ‘아동, 청소년’ 이 미숙함의 상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분명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어린이나 장애인보다 성숙한 존재로 인정받았으니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려 마땅한 목소리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그렇듯 장애여성에게는 성적 주체성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경유하지 않고 피해자의 위치를 내어줍니다. ‘어차피 아니라고 말할 능력이 없으니 아니라고 말한 셈 쳐준다’ 는 관점입니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떠올려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관점은 장애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관점일 뿐입니다. 장애여성의 ‘말하기’ 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특성에 따라 어떤 장애여성의 말하기는 평균적 수준의 듣기 이상의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말하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인가, 듣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인가, 이것이 판결문에 숨어 있는 쟁

점이기도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 이 높은 여성이 ‘예’ 또는 ‘아니오’ 라고 말할 기회를 누릴 권리가 아닙니다.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어떻든 한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되지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여성에게 “너 왜 아니오라고 못했냐” 따지라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 남성에게 “너 왜 알아먹지 못했냐” 고 따지라고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안희정 사건 판결에서도 피해자는 결국 사법부에 의해 성적 주체성을 평가당하는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하기는 사회적으로 소통될 필요를 부인당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인간의 성적 부분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고유하고 통합적인 한 인격에 대한 폭력입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도지사의 비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성적인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전체 자체가 폭력이고 차별입니다. 장애인에게서 ‘장애’ 가 분리될 수 있다는 시각 그리고 ‘장애’ 를 통해서만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장애’ 와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장애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맥락과 무관하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발제문에서도 짚듯이 ‘누구의 언어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로 연결됩니다. 더욱 많은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의 목소리와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들려 마땅한 언어와 목소리’ 라는 사회적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억압된 언어와 목소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언어와 목소리를 갖기

“피해자가 가혹한 사건에 깊이 말려들수록 감동적이라는 역설적인 구조” (이소마에 준이치, <죽은 자들의 응성임>)는 언론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서술하거나 이름을 붙일 때 더욱 자극적인 것을 찾는 상업적 언론구조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사회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 얼마나 서툰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일수록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같은 문제도 사회적 소수자는 다르게 겪게 됩니다. ‘피해자’는 어떤 경우든 인권침해와 차별에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분석하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가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 그런 조건의 분석을 정체성에 대한 평가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고리가 되어버립니다. 정체성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와 평가는 넘쳐납니다. 이미지나 평가가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사회는/언론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언어로 불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표준의 언어로 소통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전제됩니다. 사는 동안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해한다고 자신하기는 쉽지 않은데, ‘나는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라며 머뭇거리거나 ‘나는 이제 장애인을 이해할 것 같아’라며 뿌듯해하는 모습은 흔히 보게 됩니다. 사회의 ‘듣는 귀’도 두 가지 방식으로만 작동합니다. ‘장애인이어서 저렇게 말한다’ 또는 ‘장애인인데도 저렇게 말한다’. ‘장애’를 통해서만 소통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정작 ‘나’의 언어는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보도들에서는 가해자의 언어가 언제나 더욱 많이 들립니다. 누군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권력을 누리기 때문인 탓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남성은 사회적으로 또한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성’에 대해서 ‘남성’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발제문에서 분석하듯 피해자의 언어는 대부분 삭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짚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언어가 가해자의 언어를 닮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차별 사건은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차별 논리를 내면화한 자신에 의해 먼저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문제는 피해자의 언어를 삭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언어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판결문을 그대로 옮긴다거나 사건을 바라보는 주류의 관점이 어떤지 드러내는 것 자체를 폐기하

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언론의 역할 중에는 ‘있는 그대로 전달’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소수자의 언어를 빼앗는 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언어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소수자의 언어가 함께 드러나고 적어도 지면에서는 가해자의 언어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안적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관련 보도를 할 때 반드시 당사자나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싣는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제안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언론의 역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점차 ‘언론’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기존에 언론이 하던 기능이 여러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언론이 보이는 문제는 언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어서 배제함으로써 국가/남성은 안심합니다. “나는 저런 남자와는 다르다”. 여성의 안심도, 장애여성의 안심도 아니지요. 장애/여성에게는 오히려 ‘보호’ 라는 이름의 족쇄가 채워집니다. 이 역시 국가/남성이 안심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론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라고 해서 언론의 책임이 덜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발제문에서, 모니터링하며 발견한 문제적 표현들을 예시하며 분석하다 보니, 표현 자체가 문제로 읽힐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에서 표현만 문제 삼으면 정작 혐오는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언론의 표현을 문제 삼을 때 사회/국가는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책임은 ‘바른 표현’에 있기보다 사회가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소식과 분석과 입장을 전하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노예’ 라는 비유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노예처럼 부린 못된 이웃/악덕 주인’이라는 식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만 사건에 등장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장애인을 ‘노예’ 처럼 부릴 수 있게 만드는 구조는 사라져버리고, 장애인은 못된 이웃이나 악덕 주인을 피하는 것 외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언론은 어떤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구성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애는 극복하면 사라져요.” 장애를 ‘극복’ 해야 할 문제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장애의 극복을 장애인의 과제로 떠넘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은 장애인에게만 장애가 될까요? 턱이 있는 건물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겪는 ‘장애’입니다. 만약 모든 거리와 건물에 턱이 없거나, 모든 사람이 수어를 할 수 있다거나 하면 우리는 함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장애인에게도 과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겪는 ‘장애’를 ‘극복’ 하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갖추기 어려운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역량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누구도 ‘장애’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또는 더욱 많은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언론은 이런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담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왜 누군가 생명과 안전의 위험에 처했는가 질문하지 않는 사회는, 의인들을 기억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의로움을 비-정상의 것으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용기를 내지 않더라도 의롭고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목적이 아닐까요? 어떤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구성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억압된 목소리와 언어를 해방시켜 더욱 널리 들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와 듣기를 촉진하는 인권옹호활동

언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모니터링을 통해 마주하게 된 여러 표현들은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모니터링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응을 하는 점도 정말 소중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고침>의 활동은 장애/여성/폭력에 대한 언론보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인권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에 숨어 있는 차별이 장애/여성/폭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

회적 소수자들의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더 많은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이런 활동은, 저마다 다른 언어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기와 듣기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활동인 듯합니다.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언어와 목소리를 품으며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보고 듣고 싶어집니다. 차별과 혐오가 견고한 사회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차별과 혐오가 녹아든 표현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만으로 여기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대항표현의 필요성은 매우 긴급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 3] 젠더관점으로 미디어 비평하기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V 도움 자료

1. 장애여성공간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는 보도치침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의견표명(인권보도준칙 포함)>
3. 장애표현 분석

1.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는 보도지침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기존의 성폭력 사건의 보도지침과 더불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기억하면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여성을 무성적인 존재로 표현하지 않는다. 성적인 존재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나치게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표현하지 않는다. 장애로 인해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무능력함으로 그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
-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비인격화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장애여성의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짐승이나 악마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가해자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 장애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 피해를 축소하지 않는다. 가해자들이 한 행동을 “몹쓸 짓”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 장애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제하러 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안전한 사회이지 장애여성만 보호라는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 범죄자가 장애인이 경우 장애만을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범죄행위의 원인을 오로지 개인의 장애에서만 찾다보면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된다.
- 장애여성 피해자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 피해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장애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때 정확하고 인권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장애 유형에 따른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장애를 병적인 것(장애를 앓는), 비정상적이고 것(정상인보다 지능인 낮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일반인에 비해~) 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차별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보도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시각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선정적인 이미지로 장애여성의 피해를 더욱 과장되게 표현 하는 것은 도리어 장애여성 성폭력의 일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결정 < 『언론매체의 장애 비하표현』 에 대한 의견표명(인권보도준칙 포함)>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및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게, 장애인 보도 준칙을 포함한 [붙임 2]의 「인권보도준칙」의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방송 및 신문기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방송과 신문에서 장애인 비하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가질 것.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이나 표현 문제는 장애인단체의 언론모니터링을 촉발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대 일간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어구가 사용된 바 있으며⁷⁾,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언론모

7) 『2013년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심미선 외, 2013) : 201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이상 10개 일간지이며, 지상파방송은 KBS <KBS 뉴

니터에서는 ‘병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장님’, ‘귀머거리’, ‘정신박약’, ‘불구자’ 등의 용어가 2011년 344건, 2012년 296건, 2013년 22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매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신문기사 등 대중매체에서 ‘귀머거리’, ‘병어리’, ‘장님’ 등의 용어나 표현 사용이 장애인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라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2013년 174건, 2014년 1건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사용이나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언론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언론매체의 장애인 관련 용어 사용과 표현 문제를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

스9>, MBC <뉴스데스크>, SBS <SBS 8 뉴스> 이상 3개 방송, 종편 및 전문보도채널은 채널A <종합뉴스>, TV조선 <뉴스쇼 판>, <주말뉴스 토, 일>, MBN <MBN 뉴스 8>, JTBC <JTBC NEWS 9>, <JTBC 주말뉴스>, 뉴스Y <뉴스Y> 이상 4개 채널을 대상으로 상반기(2013.6.3~6.30)), 하반기(2013.9.2~9.29)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10대 일간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어구 사용 건수가 상반기 모니터링 기간 내(2013. 6. 3. ~ 6. 30.) 8건이 발견되었으며, 하반기 모니터링 기간 내(2013. 9. 2. ~ 9. 29.) 11건이 발견되었다.

8)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매년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10개 일간지,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4개 경제지에 나타난 장애인과 관련된 비교용어 및 비하용어를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왔다.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사용 실태>

연도 비하용어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장애자	60	56	37	153
장님	56	39	38	133
절름발이	86	46	46	178
정신박약	15	7	7	29
불구자	8	8	1	17
병어리	102	127	86	315
귀머거리	17	13	5	35
총계	344	296	220	860

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및 제4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III. 검토

1.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의 예로는 ‘장애자’, ‘정신박약’, ‘불구자’가 대표적이다⁹⁾.

‘장애자(障礙者)’라는 용어는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心神障礙者福祉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본 자료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장애자의 ‘자(者)’는 인격을 비하하는 ‘놈 자(者)’이고, 일본식 표기이므로 ‘인(人)’으로 개칭되어야 한다는 청원에 의해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지적장애인을 지칭하는 ‘정신박약(精神薄弱)’이라는 용어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지적장애를 성장이나 성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부정적 관점이 투영되어있다는 문제지적과 함께 비록 느끼지만 지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한다는 이론적 뒷받침이 제기됨에 따라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정신지체(精神遲滯)’로

9) 이 외에도 장애를 표현하는 지칭 중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담은 용어로는 (1) 어근에 ‘-이’, ‘-리’가 붙어 만들어진 경우로 주로 사람보다 사물을 가리키는 말에 더 잘 붙고, 사람에게 붙더라도 부정적인 뜻을 갖는 일이 대부분인 경우로 곱사등이, 문등이, 언청이, 절름발이, 말더듬이, 외팔이, 외눈박이, 육발이, 육손이, 난쟁이, 앞은뱅이, 귀머거리, 병어리/반병어리 (2) 어근에 ‘-쟁이’나 ‘뱅이’가 붙어 만들어진 경우로 역시 부정적인 뜻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음. 난쟁이, 앞은뱅이, 얼금뱅이 (3) 장애인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용어로 병신 등이 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개칭되었으며, 2007년 ‘정신지체’ 라는 용어가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의 ‘지적장애(知的障礙)’ 로 개칭되었다.

‘불구자(不具者)’ 는 고려시대 ‘불구폐질(不具廢疾)’ 이라는 기록에서 기원하는 용어로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자’ 의 뜻으로 주로 지체장애인을 지칭하여 1980년대 이전까지 폭넓게 사용되어 왔던 용어이나, 1981년대 ‘심신장애아복지법’,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개최된 ‘장애자올림픽대회’,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으로 개칭되었다¹⁰⁾.

이상과 같이 장애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장애자’, ‘불구자’, ‘정신박약’ 이라는 용어에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거나,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2. 장애 관련 속담과 관용구

속담과 관용구는 간결하면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서 언론보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장애와 관련한 관용구로는 주로 ‘병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속담으로는 ‘병어리 냉가슴’, ‘꿀 먹은 병어리’,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래는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병어리’ 라는 용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라든지 ‘답답한 경우’ 를 빗댄 암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며, ‘귀머거리’ 는 ‘외부로부터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이라든지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을 경우’ 에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다.

‘절름발이’ 는 절름거리는 장애 상태를 비유해서 ‘조화롭지 못하거나 부족한 양상’ 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며, ‘병어리 냉가슴’ 은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애타우는 경우’, ‘꿀 먹은 병어리’ 는 ‘무슨 일에 대한 내용이나 가슴에 맺힌 서러움을 말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사람’ 을 의미한다.

‘눈 뜬 장님’ 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

10) 장애인 용어 변천(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2000)

집한다’ 는 뜻으로 사용되며, ‘장님’ 이라는 용어가 ‘눈 뜬’ 이라는 형용사와 결합되어져 ‘사리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을 일컫는 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장님 문고리 잡기)’ 의 원래 뜻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문고리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는 말로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지만 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한다’ 는 뜻으로 사용된다¹¹⁾.

이외에도 장애인 관련 속담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9,604개의 속담 중 2.7%를 차지하는 257개가 있으며¹²⁾,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국어에만 있는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표현이 전래동화나 근대소설에 투영되면서 일상화되고 관행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속담이나 관용구에 주로 사용되는 ‘병어리’ , ‘귀머거리’ 등의 용어 자체는 청각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용어이며, ‘장님’ , ‘소경’ 등의 용어의 의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되어왔으나,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용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있다.¹³⁾

위와 같은 표현들은 비록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의미가 주로 장애인이 처하게 되는 곤궁하고, 답답하며, 난처한 상황을 빗대어 상대방이나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조롱할 때 사용된다.

IV. 판단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명칭은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와 인식의 형성에 큰

11) 장애인 용어 변천(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2000)

12) <표준국어대사전> 에 실려 있는 장애인 관련 속담은 전체 속담 9,604개의 2.7%로서 257개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관련 속담으로는 ‘봉사 안경 쓰나 마나’, ‘눈먼 놈이 앞장 선다’, ‘귀머거리 눈치 빠르다’, ‘반병어리 축문 읽듯’, ‘앞은뱅이 용쓴다’, ‘엷어 맥고 짝어 맨 곰보도 저 잘난 맛에 산다’, ‘미친년의 치맛자락 같다’, ‘병신 고운 데 없다’, ‘병신자식이 효도한다’ 등이 있다 (이정복, 2014).

13) 시각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중 ‘소경’은 고려시대에 종사품 벼슬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봉사’는 조선시대 종팔품 관직 명칭이었음. ‘봉사’라는 명칭은 이후 효녀 심청과 심봉사 이야기를 통해 널리 보급됨. ‘장님’이란 명칭은 조선 중기 이후 시각장애인들이 맹청을 설립하고 단체활동을 하였는데, 손위 시각장애인을 ‘장(長)에 높임말인 님을 써서 ‘장님’이라고 부른 것에서부터 유래하나, 이후 무당의 장님 타령 등으로 인해 경멸하는 호칭으로 전칭되었다(장애인관련용어의 중요성,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00)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멸시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오늘날 국어학계에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는 언어를 ‘차별언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올바른 용어 사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¹⁴⁾

하지만, 언어가 사회·문화적 토대를 반영하여 변천한다는 점 그리고 단어나 용어의 의미는 의사소통의 관계와 문단의 문맥 속에서만이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와 장애 관련 속담이나 관용구의 사용이 무조건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언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표현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이나 장애 관련 속담 및 관용구 사용은 개인에 의해, 사적영역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표현행위가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에 의해, 공적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달리 판단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장애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장애자’, ‘불구자’, ‘정신박약’이라는 용어에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거나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고, 속담이나 관용구에 인용되는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나 행동과 무관하게 비유대상이 됨으로써 정서적 상처나 굴욕감을 가지며,

14) 학계에서는 성·인종·장애와 관련된 차별적 표현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있는데, 이정복 대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차별언어란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는 언어 표현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4년 4월 15일 최민희 국회의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비하용어들을 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법제처는 2014년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14개 법령에서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며, 부령 및 행정규칙 등은 소관부처별로 2014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인격적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지칭하거나 장애관련 속담과 관용어구들은 특정 장애인을 ‘비하’ 하여 사회적 평판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로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 용어와 표현행위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은 평가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적 용어의 반복적 사용은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집단에게 억압과 멸시의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의 향유자로서의 인식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특히 구(舊) 용어가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어서 개칭된 지 25년이 지났으며, 장애 상태를 빚된 속담과 관용구가 가진 의미가 다분히 부정적이고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장애인,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누차 제기되어왔으며, 충분히 다른 용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대체용어 등이 권장되어왔다¹⁵⁾.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있고,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4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됨으로써, 언론과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에서 이러한 표현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15)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언론모니터보고서』(장애인민저실천운동본부, 1997~2013),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국가인권위원회, 2011), 『올바른 장애용어 및 표현을 위한 언론가이드북』(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3)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의 근절” 노력에 거스르는 것이며, 조약 체결 당사국으로서 대중인식 캠페인, 유아기부터의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언론기관에의 권장, 인식 훈련 프로그램의 장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장애 관련 속담을 사용하는 언론사의 표현 관행은,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V.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0.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위수
위원 이선애

[붙임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로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붙임 2]

인권보도준칙 16)

■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의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 과 ‘차이’ 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

16) 언론보도준칙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인권보도 공동 캠페인 광고(2011.4.27~5.25)를 시작으로 언론계, 법조계, 학계,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구성·운영(6.24~8.5), 언론시민단체와의 간담회(7.15~7.26), 인권보도준칙을 위한 세미나(2011.7.29)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2011.9.23. 제정됨. 이후 인권보도준칙 확산을 위해 인권보도수첩배포, 매년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음.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 교육 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주요 분야별 요강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자제한다.
 -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추보는 용어.

-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
-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게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 나. 노사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
- 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한 표현.
-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 ‘공인’ 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공인’ 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명 공개에 주의한다.
- 라.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마. 자살 사건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한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 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 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한다.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제7장 아동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3. 장애표현 분석

1. 장애자, 장애우 그리고 장애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1989년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고,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이다. 장애우의 ‘우’는 친구라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동년배이거나 실제 친구 관계에 사용되는 용어로, 상대의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지칭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2. 정확한 장애유형명 사용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정신지체 3급 정신지적장애, 지능장애	지적장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명을 사용하고 있거나 전혀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제시된 장애유형에 따른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

3.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지적장애를 앓는, 17) 청각장애를 앓는	지적장애인 혹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가 있는—

17) 연합뉴스 - 2016.11.03. 외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장애를 병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혹은 해당 장애 유형으로 표기하면 된다.

4. 정상인과 비정상인 ? 일반인과 특수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정상인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장애’ 지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일반인의 성폭력 사건처럼	비장애인 (정상인, 일반인 삭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정상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 바탕이 된 부적절한 표현이다.

5.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무능력한 ~ 엿혀사는 (지적장애여성) 사리판단을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장애로 인해 제한성을 갖게 되는~ 장애로 인해 사회적 취약성을 갖게 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는 표현보다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제한성이나 취약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6. 장애인을 통제의 대상,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지적장애인 “보호제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지원체계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게 하는 표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결핍된 사람,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야하는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차별적인 표현이다. 또한 국민으로써 당연히 지원받아야 하는 복지서비스를 특별히 제공하는 혜택으로 표현함으로써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인식하게 하는 문제적인 표현임이다.

7. 사람보다 장애에 초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시각장애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삼중고의 장애인 시각장애를 극복한	-

장애를 극복해야할 고난이나 무거운 멍에로 표현하면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한다. 더불어 장애를 가진 인간으로의 가치에 대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장애에만 초점을 맞추는 문제적 표현이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살게 하는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유념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은 삼가야 한다.

8.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고유한 문화의 불인정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정확하거나 잘된 표현
농아인이 일반인의 말을 읽고 쓸 수 있도록 ¹⁸⁾	농아인의 언어인 수어가 있다는 것과 청인의 언어만이 의사소통의 주요수단이 아님을 인지하여야 함

주류의 문화권에 강제적인 편입을 강요하는 매우 권위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기사내용이므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가 공존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속에서 농아

18) 주간동아. 2011.11.28. - 도가니 사건

인이 오로지 주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언어를 버리고 음성언어, 문자언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농아인 언어권 보장의 근거 2015.12.31.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 2016.8 시행)

VI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 소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 인권운동 단체인 장애여성공감은 1998년 2월 14일 창립하여 정상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를 반대하고 장애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연속선에서 2001년 8월 31일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위기개입을 통해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당사자를 포함 사회 전반의 성 인권 의식의 향상과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높이기 위한 성 인권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실시하여 그들이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I 주요 활동

성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

- 위기개입과 상담
-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원
- 의료비 지원 및 연계 등 의료적 지원
- 고소 및 재판 지원 등 법률적 지원
-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연계

장애여성 인권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인식개선 활동

-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 성폭력 관련 법률 재/개정 활동
-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연구

성폭력 예방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장애여성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개별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혁

- 2018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통합전환과정
- 2017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치료회복 캠프 「슬렁슬렁 발 닿는대로」
폭력피해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실태 및 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
- 2016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 언론 및 수사·법적절차의 비판적 분석
에 관한 토론회
- 2015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사업
- 2014 <장애인성폭력 판결 들여다보기> 장애인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 발간 및 발표회 (공동)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공동)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제작 (공동)
장애인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공동)
- 2013 지적장애여성 자조모임 합창단 앨범 '차별 없는 그런 세상' 제작
- 2012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장애와 성폭력, 이것부터 시작해
요> 발간 및 교육 진행
법무부 연구용역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특성과 법률조력인의 지원에 관한
연구'
대법원 연구용역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방안'
(공동)

- 2011 성폭력상담소 10주년 기념행사 ‘그녀들, 다시 노래하다’
지적장애여성 자조모임 합창단 '일곱 빛깔 무지개' 활동 시작
- 2010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판례분석 쟁점토론회
- 2009 장애인생활시설 내 발달장애여성 섹슈얼리니에 관한 토론회
책 <장애여성, 성성을 밝히다> 성인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교재 발간
- 2008 지적장애여성자조모임 사진 전시회 ‘낮달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개최
책 <장애여성활동 10년사> 발간
- 2007 지적장애여성 성교육프로그램 연구 : 임신과 낙태 안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찾기
- 2006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5주년 기념파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십분의 일 혹은 십 분의 구’
- 2005 지적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매뉴얼 제작
지적장애여성 자조모임 활동 시작
- 2003 장애여성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시작 (~ 2016년 6기 수료)

책 <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자료집 : 지체장애여성을 중심으로> 발간
- 2002 장애여성 성인식 실태조사와 토론회
- 2001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개소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 토론회

발행처 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인 배복주

편집 Genie

인쇄 현대프린팅

본 책자는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